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
및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2017. 12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 및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요 약

1. 연구개요

-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자 및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와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를 평가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함

- 제도의 평가는 효과성 평가와 타당성 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효과성 분석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와 의료비 세액공제제도가 납세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각각의 세액공제제도가 수혜자에게 가져다주는 세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교육비 공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교육서비스 수요가 최대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저소득층의 교육수요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어 세액공제가 교육수요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의료비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수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근로자의 의료와 관련된 행태 변화는 주로 건강보험제도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타당성 분석은 정부 역할의 적절성과 수행방법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정부 역할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소득세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는 데 대한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살펴봄
 - 수행방법의 적절성 분석 부분에서는 지원대상의 적절성, 감면방법의 적절성, 제도간 중복 여부 등에 대해 분석함

2.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 현황

가. 교육비 공제제도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성실신고사업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 공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됨
 - 단, 대학원에 지불하는 비용 및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불하는 교육비는 제외됨
 -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한도는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300만원임

-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불한 교육비의 경우, 한도가 없이 교육비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대학원·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불하는 교육비, 직업훈련학원시설 수강료 등과 특정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성실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와 그 외 성실사업자로 구분됨
 -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의미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임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에서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임(2016년)
 - 그 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나. 의료비 공제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성실신고사업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불한 의료비 중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 지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의 3%,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이 됨

- 본인 및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지불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연 7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등이 포함되며,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다. 표준공제제도

-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표준공제제도가 있음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는 13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함
 -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아닌 성실사업자로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12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함
 - 그 외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7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함
 -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이 범주에 속하므로 7만원의 공제를 적용하며, 동시에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도 신청할 수 있음

3. 주요 외국의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

- 본 연구에서 검토한 주요 국가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홍콩
- 교육비 공제의 경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모든 국가에서 본인 교육비에 대한 공제제도가 있음
 - 부양가족 교육비도 공제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이며,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본인 교육비만 공제함

- 캐나다의 경우 본인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부모나 조부모에게 이전하여 공제할 수 있음
 - 본인 교육비만 공제하는 국가는 대체로 업무관련 교육비로 공제대상교육비를 한정함
- 업무관련 교육비 공제의 경우, 호주와 일본에서는 공제액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싱가포르에서는 연간 5,500싱가포르달러로 상한이 규정됨
- 본인과 부양가족의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상한이 규정되어 있음
 - 미국, 캐나다(부모, 조부모에게 이전되는 부분), 아일랜드, 프랑스, 홍콩
 - 미국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함
-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일본, 싱가포르에서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홍콩, 프랑스에서는 의료비 공제제도가 없음
 - 캐나다에서는 소득수준이 낮고 의료비 지출은 많은 경우에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환급형 의료비 보조제도가 있음
 - 호주에서는 일반적인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장애 및 노인의 보조기구와 간병비 등이 공제대상임
 - 우리나라는 의료비 공제의 상한이 있는데, 일본(상한 200만엔), 싱가포르(소득의 1%)에서 유사한 상한이 있으며, 그 외 국가들(미국, 캐나다, 아일랜드)에서는 상한 규정이 없음

4. 교육비·의료비 공제 실적

-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교육비와 의료비의 공제대상금액에 대하여 과거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계층별로 비교하였음

- 분석 결과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최근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2009년 67만원에서 2015년 44만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또한 2012년 109만원에서 2015년 6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의 변화는 전체 납세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 비율의 변화와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의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의 하락에는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2008년 20.46%에서 2015년 14.72%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 또한 2010년 339만원에서 2015년 296만원으로 매년 하락하였음

- 한편 종합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의 변화에는 종합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락한 뒤 2012년 반등하였으나, 이후 다시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같은 기간 종합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율은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 반면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2009~2011년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12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하락한 이후,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함

-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2007년 28만원에서 2013년 44만원으로 증가한 뒤, 2014년 한차례 34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다시 35만원으로 증가함
 -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2012년 71만원에서 2015년 47만원으로 하락하였음

-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변화는 주로 납세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자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함
 - 반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율은 앞에서 설명한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변화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을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소득 1~3억원 구간에서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다른 소득구간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소득구간 근로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282만원임
 - 해당 소득구간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220만원임

- 소득구간별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또한 해당 소득구간의 납세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과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소득구간별 공제 신청자의 비율은 평균 공제신청금액과 유사하게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1~3억원 구간이, 그리고 종합소득자의 경우 소득 8천만~1억원 구간이 정점인 역-U자형의 모습을 나타냄
 - 반면 공제 신청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소득과 함께 확대되는 것으로 관찰됨

-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소득 8천만~1억원 구간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142만원임
 - 해당 구간의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126만원임

- 교육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또한 공제 신청자의 비중과 신청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소득 6~8천만원 구간의 공제 신청 인원의 비중이 다른 소득구간과 비교해 가장 높음

- 한편 공제 신청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소득과 함께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5. 교육비·의료비 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

-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과세신고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적을 분석하였음
-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유리한 제도를 통해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을 통한 신청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중 599명이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였는데, 이 중 70.95%가 「소득세법」을 적용함
 -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중 455명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였는데, 이 중 72.2%가 「소득세법」을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과 공제 신청자의 비율이 근로소득자 등의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성실사업자 중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등 평균 소득수준이 다른 소득집단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대체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과 공제 신청 비율이 더 높음
- 의료비 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공제를 신청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제 신청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성실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의 비중은 약 4.92%로 근로소득자(17.28%)나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19.8%)보다 의료비 공제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본원의 미시모의실험모형을 이용하여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소득계층별 세부담 감소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하여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각각 7만원과 5만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평균적인 실효세율 감소폭은 0.222%포인트와 0.169%포인트임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폭이 가장 큰 소득구간은 8천만~1억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하여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약 37만원 감소하였음
 - 해당 소득구간에서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은 약 23만원 감소하였음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로 인하여 실효세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구간은 소득 6~8천만원 구간임
 - 교육비 공제로 인하여 해당 구간의 실효세율은 약 0.438%포인트 감소하였음
 - 의료비 공제는 해당 구간의 실효세율을 약 0.309%포인트 감소시켰음

-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로 인한 세부담 감소폭은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6~8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단독가구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를 통해 낮아지는 세부담은 각각 9~14만원과 5~7만원 수준임
 - 동일한 소득구간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 3명과 함께 소득세를 신고하면 교육비와 의료비로 인한 세부담 감소폭은 각각 41~63만원과 11~26만원으로 확대됨

6.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타당성 분석

가. 정부 개입 근거와 타당성

-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관점으로 파악하여 볼 수 있음
 - 첫째,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임
 - 둘째, 필요경비적 성격의 공제로 봐야 한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음

- 셋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치의 성격도 있음
 - 넷째,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저소득층 가계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비 공제의 경우 대체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됨
- 세액공제가 없더라도 교육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많아서 가치재로서 지원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부양가족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수단으로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절하지 않음
 -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개산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은 지원의 효과가 약하며, 주로 중간소득계층 이상에서 혜택을 받고,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교육비 중에서도 본인 교육비의 경우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공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 의료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의 경우 세액공제가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급여항목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있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세액공제 필요성이 약함
 - 예기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함
 - 급여항목의 경우 환자 1인당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나 가족 내에서 여러 명에 대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음
 - 비급여항목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표 1〉 교육비·의료비 공제의 정부 개입 근거와 타당성

정부 개입의 근거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1) 가치제	- 세액공제가 없어도 수요가 충분히 많아 개입 불필요	-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급여항목)의 경우 수요 진작을 위한 지원 불필요 -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요 증대 효과 기대
(2) 필요경비	- 납세자 본인 교육비의 경우 필요경비 - 부양가족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3) 과세형평성	- 특정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보다는 개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특정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보다는 개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4) 가계소득지원	- 저소득층은 정부지원이 있어 세액공제 필요하지 않음 - 중·고소득층의 경우 학교 급별로 차이 · 유아, 고등학교, 대학은 중간소득계층 이상에서 어느 정도 부담 발생	- 예기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지원 필요 · 급여항목이라도 2인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 비급여 서비스 비용 등

자료: 저자 작성

나. 지원대상의 적절성

1) 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게만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의 타당성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였는데, 2007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성실사업자에게도 공제를 허용하게 되었음
- 1977년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소득 은폐가 사업자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 이후 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진전되고, 사업자 중에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됨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에게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게 되었음

-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문제는 개산공제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자 전체와 사업자 전체의 세부담 격차 문제이므로 특정 항목의 지출에 연계된 특별공제 방식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직도 사업자들 사이에는 소득의 은폐가 만연해 있으며, 소득의 상당부분이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득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지출은 정확하게 집계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2) 성실사업자 범위의 타당성

- 성실사업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규모가 큰 사업자는 정부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허용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과 관련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성실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과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성실사업자 요건은 성실 신고를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임
 - 가장신고를 할 것, 신용카드 가맹점을 가입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를 도입할 것,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요건은 신고의 성실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임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년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는데, 성실하게 신고하여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음
 - 해당 과세기간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을 요구하는데, 신설 사업자에게 불리한 요건임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등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대체로 과거 3년간의 성실성을 요구함

□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신고한 수입금액의 변화나 과거의 행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신고에 대한 성실성 의심 여부를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과거의 행태나 신고한 수입규모를 근거로 형성한 ‘성실성 의심’이 그대로 현재의 성실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017년 12월에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의3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나 아직도 단순하게 성실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상의 근거만 가지고 성실성을 부인한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2016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자로 구분하여 각각 신고인원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신고한 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였음

-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신고자 중 14.63%가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였으며, 18.44%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였음
-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 중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55%와 18.67%로 근로자보다 약간 크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는 각각 32,701명과 7,551명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0.76%와 0.18%를 차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성실신고자에서 제외되는 추계과세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중 기장신고자에서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의 비중을 계산하면 각각 1.28%와 0.30%임
- 이는 각각 근로자의 경우에 비해 8.7%와 1.6%에 해당하는 수준임
- 이와 같이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중에서 교육비·의료비 공제 신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신고자의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시사함

- 본고에서 사용한 무작위표본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자 중에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비중이 2.45%임

다. 지원방법의 적절성

- 지원방법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로 구분하여 각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공제대상 교육비 및 의료비의 한도액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살펴봄

1) 교육비 공제방법의 적절성

- 정부 개입의 근거와 근거별 공제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의 교육비는 필요경비 관점에서 공제의 타당성이 인정됨(앞의 <표 1> 참조)
- 한편, 부양가족 교육비는 가치재 관점이나, 필요경비 관점, 근로자와 사업자의 과세형평성 관점에서 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다만 학교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바, 세액공제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유아교육,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에서 중간소득 계층 이상의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비 부담이 발생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은 정부의 지원이 교육비의 대부분을 커버하므로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관점에서도 부양가족 교육비의 세액공제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소득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비 공제는 역진적인 성격이 있음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에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한 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1인당 공제규모를 보면 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교육비 공제를 신청한 자의 비중이 30%를 초과함

- 특히 총급여 6천만원~2억원 구간에서는 교육비 공제를 신청한 자가 납세자의 50~60% 정도를 차지하였음
-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공제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래도 36~47%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공제 신청자의 1인당 공제세액 규모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인당 공제규모가 10만원 미만인데, 8천만~1억원 구간에서는 56만 6천원, 5억원 초과구간에서는 94만 5천원임

〈표 2〉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교육비 공제 현황(2016년)

(단위: %, 만원)

	공제신청자/납세자	1인당 공제세액
전체	14.6	44.1
1천만 이하	0.1	1.7
2천만 이하	0.6	6.7
4천만 이하	5.9	18.7
6천만 이하	32.1	33.6
8천만 이하	52.3	48.2
1억 이하	57.2	56.6
2억 이하	61.5	67.4
3억 이하	47.1	79.6
5억 이하	41.9	87.2
5억 초과	36.0	94.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표 4-2-4

- 학교급별 공제한도의 적절성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수업료와 교과서대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학부모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인데, 공제한도는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
- 학부모부담은 방과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중학교) 정도이며,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식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됨
-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는 공제한도가 각각 50만원과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방과후활동비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한도가 60만원임

- 저소득층은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제도를 통해서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을 받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있는 가정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간 교육비 지출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초등학교 92.8%, 중학교 84.5%임
 - 연간 2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1.2%, 중학교 2.1%임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정부가 보육·교육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연간 평균 63만원, 26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함
 - 그런데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하여 비자발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유치원 학령인구의 유치원 취학률이 50.7%이며, 그 중 75.2%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함
 - 이는 학령인구 중 38% 정도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1인당 교육비 분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62.2%이며, 유치원은 이 비율이 44.4%에 그쳤음
 - 200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린이집 15.9%, 유치원 약 30%였음
 - 300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린이집 6.3%, 유치원 24%였음
-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학부모가 수업료와 교과서대금을 납부함
-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급식비 부담이 있으며, 그 외에 방과후 활동비,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부담이 발생함
 - 등록금은 지역마다 다르나 최대 200만원 이내로 책정되고 있음
 -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각 지방교육청별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대체로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지원이 됨
 -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15.3%에 불과하며, 72.3%가 200만원

이상을 지출함

- 3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가 전체의 45.8%를 차지하였음

□ 대학의 경우 국공립은 등록금이 전문대학 평균 241만원, 대학 386만원이고, 사립은 전문대학 590만원, 대학 713만원 수준임(2016년 평균)

- 대체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음
 - 2016년 국공립 전문대 76.8%, 대학 65.5%, 사립 전문대 55.1%, 대학 47.7%
- 대학 재학생에서 국가장학금 I 유형의 혜택을 받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46%, 2015년 42%임
-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 10분위 가운데 2분위 이하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장학금이 지원됨
 - 4분위까지는 대체로 등록금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지원됨
 - 소득분위 9분위와 10분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지원을 받지 못함

□ 학교급별 교육비 공제한도의 적절성은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든 학생에게 공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면 공제한도를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정부지원으로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로 3분의 2 정도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임
 -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1인당 공제한도 300만원은 축소의 여지가 있음
 - 유치원의 경우도 공제한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됨

2) 의료비 공제방법의 적절성

□ 정부 개입의 근거와 그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표 1>에 따르면, 의료비 공제는 가치재 관점과 가계소득지원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치재란 정부가 지원하여 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가 가치재라는 점에서 보면,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중·저소득층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보면, 급여항목의 경우에도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바,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급여항목의 경우 연간 1인당 자기부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서 2018년의 경우 1분위는 연간 최대 124만원, 4~5분위는 최대 208만원, 10분위는 523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금액으로 봐서 그다지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의 비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5.42~10.76%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족 내 환자 1인이 급여항목의 의료서비스만 받는 경우의 최대 부담액이고, 급여항목의 의료서비스만 받더라도 가족 내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가 포함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가 중·저소득층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2016년 근로소득세 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소득구간별 의료비 공제 신청자가 해당 소득구간의 근로소득세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형적인 종모양의 분포를 보여 총급여 6천만~1억원 구간에서 근로소득 43~45%로 가장 높음
 - 그다음으로 총급여 4천만~6천만원 구간과 1억~2억원 구간이 35~38%로 높음
 -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구간과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공제자 비율이 10%대 또는 그 이하로, 다른 구간에 비해 상당히 낮음
 - 공제 신청자 1인당 공제규모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공제신청자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총급여 4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총급여 4천만~6천만원 구간의 평균 공제액이 총급여 2천만~4천만원 구간에 비해 20만원 정도 많음
 - 또한 총급여 2억~3억원 구간에서 평균 공제액이 앞 구간에 비해 21만원 더 큼
 -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 매우 낮은 구간에서는 주로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의존하는 데 비해, 소득이 증가하면서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3>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의료비 공제 현황(2016년)

(단위: %, 만원)

	공제신청자/납세자	1인당 공제세액
전체	18.5	31.8
1천만 이하	0.1	1.7
2천만 이하	4.9	4.9
4천만 이하	19.7	13.9
6천만 이하	38.3	33.5
8천만 이하	44.9	47.8
1억 이하	43.1	54.0
2억 이하	35.4	60.6
3억 이하	14.4	81.8
5억 이하	7.1	107.3
5억 초과	2.4	248.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표 4-2-4

-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는 주로 급여항목만을 수요하는 최저소득계층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으나 비급여 항목 수요가 적지 않은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
- 공제규모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아도 상당히 다양함
 - 미국은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하고, 캐나다는 3%, 일본은 5%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대상으로 함
 - 호주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며,
 -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최소지출 요건이 없음
- 의료비 공제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 그 정도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미이므로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임

- 이와 유사한 제도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는데, 본인부담액이 과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임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의 5~10%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세액공제 하한을 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세액공제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보완적인 제도로 볼 수도 있음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분위를 7개 분위로 나눠서 각 분위별로 일정한 상한액을 정하는 데 비해, 세액공제는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각각의 소득구간 내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됨
 - 또한 치료기간이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의 소득 대비 비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나, 치료기간이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 비율이 높음
 - 그러므로 세액공제제도는 부분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공제 상한에 대해서도 누구나 공감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보면, 일본에서 200만엔을 한도로 공제를 제한하며, 싱가포르에서는 연간 급여의 1% 이내로 공제를 제한하는 것 외에 다른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에서는 공제 상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그다지 엄격한 제한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 그 외에도 건강보험의 재정지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증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들이 있음

-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 공제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3) 표준공제의 적절성

- 납세자의 유형별로 표준공제 적용 여부와 공제규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공제가 모두 없는 경우에 표준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표준공제액은 13만원임
 -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성실사업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공제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12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7만원의 표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그 외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7만원의 표준공제만 적용됨

- 성실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자이며, 이들에게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13만원보다 1만원 작은 12만원의 표준공제가 적용됨
 - 이는 표준공제에 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공제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공제가 모두 없는 경우에 표준공제를 적용함
 - 성실신고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성실사업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공제가 모두 없는 경우에 표준공제를 적용함
 - 한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가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만원의 표준공제 규모 차이는 상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게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7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성실신고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성실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취급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 표준공제와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자가 아닌 성실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우대하는 결과가 나타남

- 이와 같이 일관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실신고확인자에 게도 그 외 성실사업자와 동등하게 12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하고 교육비·의료비 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대부분의 성실신고확인자의 표준공제액을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자가 아닌 성실사업자의 표준공제제도는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 비해,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센티브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됨

- 한편 성실신고확인자에게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표준공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에도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 세액공제는 재정지원이나 건강보험 부담금 및 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지출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그러므로 정부의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 부담이 세액공제와 중복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그보다는 정부 및 건강보험의 지원을 세액공제가 보완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편, 동일한 대상 즉, 가계의 교육비 지출 및 의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재정지원이나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제도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1) 교육비 재정지원

- 만 3~5세 아동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록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이 지원됨
 - 국·공립은 국가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므로, 국·공립과 사립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지원금이 6만원이고,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5만원임
 -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과정 지원금이 22만원이고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7만원임
 - 국·공립은 정부의 지원으로 교육비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나 사립의 경우 평균적으로 어린이집은 연 63만원, 유치원은 26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함
- 초·중등교육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교육비를 부담함
 -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방과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정도임
- 한편 고등학교는 학부모 납입금이 있는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함
 - 그 규모는 학교의 특성과 지역에 따라 다른데, 2016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182만원이고, 서울 외의 평준화지역(1급지)의 경우 ‘가’지역에서는 175만원이고 ‘나’지역에서는 115만원임
 -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100만원 수준임

- 초·중등교육의 경우 고등학교 납입금과 그 외 부수적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비가 지원됨
 - 모든 계층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짐

- 대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정부가 장학금을 통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부분적으로 경감하고 있음
 - 소득이 2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금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등록금 중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소득이 많을수록 학부모가 학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과 부담액의 규모가 커지도록 장학금 구조가 설계되어 있음

-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학금이 납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용자를 통해서 부족한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음
 - 소득 8분위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음
 - 2016년에 47만명의 학생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용자를 받았으며, 용자금은 1조 1,983억원임

- 각종 장학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용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아 대학 교육비를 학부모가 거의 모두 부담해야 하는 계층은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도 이 계층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음

2) 건강보험 및 재정의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급여항목은 항목별로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직접부담하며,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항목의 비용이 대상이 됨
- 의료비 세액공제와 가장 밀접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항목 본인부담분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및 정부 재정지원이 될 것임
 -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상한제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7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소득의 5~10%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이 설정됨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 14%, 담배부담금 6%(건강증진기금 총 수입의 65%)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 특정 집단이나 암, 만성질환, 희귀병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 등 특정 질병을 타깃으로 하는 지원은 주로 건강보험 재원으로 제공되며, 국고지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함
 - 건강보험 또는 국고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외에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암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임신·출산 지원, 노년층 지원사업 등이 있음
-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축소하여 치료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함
 -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1~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함
 - 개인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상한액을 관리함
 -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7.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개편방향

가.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본인의 교육비 공제임
 -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어 공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비과세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식으로 공제를 허용함
 - 한편 부양가족 교육비의 경우, 중·저소득층 소득지원의 성격이 강한데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역진적이라는 문제도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는 장기적으로 본인의 교육비 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부양가족 교육비 세액공제제도는 1980년대 초에 도입되어 거의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유지되어온 것이어서 일거에 이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납세자의 저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학교급별로 보면 중간소득계층의 부담이 비교적 큰 부분이 있음

- 그러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 변화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공제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보조를 맞춰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 연간 100만원 이내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도 공제 상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도의 단순화 등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고등학교의 공제제도 개편과 보조를 맞춰 초·중등교육과정의 교육비 공제제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국공립 교육기관의 확대 동향을 보아가며 세액공제 한도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도입으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본인 교육비 공제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갖추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장학금 수혜 실태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용 실태를 보면, 아직도 중간소득계층의 가정에서는 대체로 학부모가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록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일지라도, 정치적으로 중간소득계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대학교육비 공제제도를 본인 공제제도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국가장학금 지원 추이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추이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자녀 교육비 공제규모를 조정하는 점진적인 접근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나.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 의료비 공제제도의 경우, 현 시점에서 현행 제도의 골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가치재의 관점,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부양가족 의료비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를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함
 - 소득 3% 초과분을 공제하는 최소지출 요건에 대한 정당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음
 - 현행 제도하에서 소득의 5~10%로 설정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재분배 및 가계 부담 완화 측면에서 보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본인부담 상한제 및 각종 저소득층 지원,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00만원의 공제상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납세자 본인 의료비와 경로우대자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등은 700만원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정책의 추진과 함께 의료비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성실사업자 범위 및 표준공제제도 개편방향

- 성실사업자의 범위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체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자로 인정하여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몇 가지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실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과 관련 시행령(제118조의 8)에서는 ① 가장신고를 할 것,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 ③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적극적으로(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 사용할 것을 요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서는 이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요구함
 - ④ 수입금액이 직전 3개연도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 ⑤ 과세기간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 ⑥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 처벌사실 등이 없을 것
- 위 요건 중 「소득세법」에 규정된 ①, ②, ③의 요건은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것으로 판단됨
 - 추계신고자의 경우 항목별 공제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매출액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임
 - 사업용계좌 역시 수입과 사업용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함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④, ⑤, ⑥의 요건은 신고의 성실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써 성실성을 부인하는 요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거의 행태를 바탕으로 형성한 ‘성실성 의심’이 그대로 현재의 성실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정부는 2017년 12월에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 그러나 아직도 단순히 성실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상의 근거만 가지고 성실성을 부인한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④, ⑤, ⑥의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표준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그 외 성실사업자, 기타 사업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표준공제를 적용함

-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표준공제 규모가 13만원인 데 비해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12만원으로 다소 적지만, 이는 표준공제에 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공제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가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만원의 표준공제 규모 차이는 상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성실사업자에게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공제를 허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게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7만원으로 표준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를 소규모 성실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12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은 의무사항으로 소규모 사업자와 달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목적으로 표준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표준공제를 12만원으로 확대하면, 근로자 및 다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비해 규모가 큰 성실신고확인사업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게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을 허용하는 제도는 성실신고확인자를 과도하게 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성실신고확인사업자도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 론	37
II.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현황과 특징	43
1. 교육비 공제제도의 현황과 특징	45
가. 교육비 공제제도 현황	45
나. 교육비 공제제도 발전과정	48
2. 의료비 공제제도의 현황과 특징	49
가. 의료비 공제제도 현황	49
나. 의료비 공제제도 발전과정	50
3. 표준공제제도와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52
가. 표준공제제도	52
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3
4.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특징과 정책이슈	54
III. 주요 외국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59
1. 미국	61
가. 교육비 공제제도	61
나. 의료비 공제제도	65
2. 캐나다	66
가. 교육비 공제제도	66
나. 의료비 공제제도	68
3. 호주	71
가. 교육비 공제제도	71
나. 의료비 공제제도	72
4. 아일랜드	73

가. 교육비 공제제도	73
나. 의료비 공제제도	74
5. 프랑스	75
6. 기타 국가	76
7. 요약	77
IV.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적 분석	81
1. 교육비 공제 실적 분석	84
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	84
나. 소득수준별 교육비 공제 규모	89
2. 의료비 공제 실적 분석	93
가.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	93
나. 소득수준별 의료비 공제 규모	96
3. 요약	100
V.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효과성 분석	103
1. 분석 자료	105
2. 교육비 및 의료비의 공제 실적 분석	109
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109
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114
3.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 분석	119
가. 분석방법	120
나. 분석결과	121
4. 요약	129
VI.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타당성 분석	131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133
가. 정부 개입의 근거	133
나. 정부 개입 근거의 타당성 분석	134
다. 정부 개입 근거의 타당성 분석 요약	144

2. 지원대상의 적절성	146
가. 교육비·의료비 공제대상 사업자 현황과 정책이슈	146
나. 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게만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의 타당성	147
다. 성실사업자 범위의 타당성	149
3. 지원방법의 적절성	153
가. 교육비 공제방법의 적절성	153
나. 의료비 공제방법의 적절성	166
다. 표준공제의 적절성	177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179
가. 교육비 재정지원	180
나. 건강보험 및 재정의 의료비 지원	186
다. 요약 및 시사점	200
VII.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개편방향	205
1.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207
가. 장기발전방향	207
나. 점진적 개편방안	208
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210
3. 성실사업자의 범위 개편방향	211
4. 표준공제제도 개편방향	213
<참고문헌>	215

표 목 차

<표 II-1> 교육비 세액공제	46
<표 II-2> 표준세액공제	53
<표 III-1> 공제한도(2016년)	63
<표 III-2> 교육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산정방식	72
<표 III-3> 주요 국가별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 현황	78
<표 IV-1> 종합소득자(금액) 중 근로소득자(금액)의 비중	84
<표 IV-2> 국가장학금 유형과 규모의 변화	88
<표 V-1> 표본의 크기 및 소득분포	106
<표 V-2> 종합소득자의 구성	107
<표 V-3> 성실사업자의 매출액 분포	108
<표 V-4>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현황	110
<표 V-5>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현황	115
<표 V-6>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효과(근로소득자)	123
<표 V-7>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효과(종합소득자)	124
<표 V-8>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효과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수 통제)	127
<표 V-9>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효과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수 통제)	128
<표 VI-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분위별 보수와 본인부담 상한(2018)	142
<표 VI-2>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의 비율(2018)	143
<표 VI-3> 교육비·의료비 공제의 정부 개입 근거와 타당성	145
<표 VI-4> 근로자와 사업자 신고인원과 교육비·의료비 공제신고자(2016년)	152

<표 VI-5>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교육비 공제 현황(2016년)	155
<표 VI-6> 소득분위별 세액공제 규모와 본인부담률 추정	158
<표 IV-7>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비 지출액 분포(2015년)	160
<표 IV-8>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지출액 분포(2015년)	161
<표 IV-9> 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출액 분포(2015년)	162
<표 VI-10>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의 재학생 대비 비율	164
<표 VI-11>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2016년7)	165
<표 VI-12>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의료비 공제 현황(2016년)	168
<표 VI-13> 납세자 유형별 특별공제, 표준공제 적용 여부	177
<표 VI-14> 누리과정 지원액(2017년)	180
<표 VI-15> 2017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184
<표 VI-1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내용	188
<표 VI-17>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190
<표 VI-18> 확정본인부담의료비 발생구간별 재난적 의료비 지원수준	193
<표 VI-1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195
<표 VI-20>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2017년 기준)	197

그림 목 차

[그림 IV-1]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추이	85
[그림 IV-2] 교육비 공제 신청인원 비중 및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 추이	86
[그림 IV-3] 소득수준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근로소득자)	90
[그림 IV-4] 소득수준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종합소득자)	92
[그림 IV-5]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추이	94
[그림 IV-6] 의료비 공제 신청인원 비중 및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 추이	95
[그림 IV-7] 소득수준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근로소득자)	97
[그림 IV-8] 소득수준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종합소득자)	99
[그림 V-1] 소득수준별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대상자 전체 평균)	111
[그림 V-2] 소득수준별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공제 신청자 평균)	113
[그림 V-3] 소득수준별 교육비 공제 신청자 비율	114
[그림 V-4] 소득수준별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대상자 전체 평균)	116
[그림 V-5] 소득수준별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공제 신청자 평균)	118
[그림 V-6] 소득수준별 의료비 공제 신청자 비율	119
[그림 VI-1] 소득구간별 교육비 공제신청자 비율(2016년)	156
[그림 VI-2] 소득구간별 교육비 공제신청자 1인당 공제액(2016년)	156
[그림 VI-3]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의료비 공제신청자 비율(2016년)	169
[그림 VI-4] 소득구간별 의료비 공제신청자 1인당 공제세액(2016년)	169

I. 서론



I. 서론

-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자 및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와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를 평가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함
 - 교육비 세액공제제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공제 대상이 되는 경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의료비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성실사업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 지급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함

- 제도의 평가는 효과성 평가와 타당성 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와 의료비 세액공제제도가 납세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각각의 세액공제제도가 수혜자에게 가져다주는 세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교육비 공제의 경우 납세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서비스 수요가 최대화되어 있는 상태임
 -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학령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취학하고, 대학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70%가 대학에 진학하여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

- 이와 같은 취학, 진학률의 확대에 교육비 공제제도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우리 국민의 교육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교육환경의 개선, 국민의 소득수준 개선 등 다른 여건의 변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작았을 것으로 판단됨
 - 실증분석에서 그 효과를 분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 또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학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교육비의 대부분

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교육비 공제가 교육기회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교육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소득층에서는 정부지원과 관계없이 교육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의료비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수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근로자의 의료와 관련된 행태 변화는 주로 건강보험제도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도 정부는 건강보험 등을 통해 납세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어, 의료비 공제가 의료서비스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효과성 분석에서는 교육비·의료비 특별세액공제가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세부담에 미친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춤

- 이를 위해 본원이 2016년부터 개발하여 확장 중인 미시모의실험모형을 활용함
 - 2016년 본원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료 100만건을 기반으로 미시모의실험모형을 구축하였음
 - 동 모형은 모의실험을 통해 특별세액공제 등 주요 소득세제의 변화가 근로소득자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미시모의실험모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함

- 교육비·의료비 특별세액(소득)공제가 소득유형(근로, 성실사업, 타사업) 및 소득계층별 세부담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2014년에 교육비 및 의료비 특별소득공제를 특별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유형 및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타당성 분석은 정부 역할의 적절성과 수행방법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정부 역할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소득세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는 데 대한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살펴봄

- 수행방법의 적절성 분석 부분에서는 지원대상의 적절성, 감면방법의 적절성,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에 대해 분석함
- 지원대상 설정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성실사업자의 범위는 적절한지 분석함
 - 2007년까지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사업소득자의 과표 탈루에 따른 사업자와 근로자 간 실효세부담 격차를 이 제도들을 통해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임
 - 2007년의 제도 개편으로 사업소득자 중 성실사업자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감면방법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세부 요소별 차등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함
 - 교육비의 경우 학교급별로 공제한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차이가 타당한지, 각각의 공제한도는 타당한지 분석함
 - 의료비의 경우 소득(총급여 또는 사업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는데, 이 하한과 상한 기준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점검함
- 제도 간 중복 여부와 관련해서는 교육비 재정지원제도 및 의료비에 대한 국가 및 건강보험의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세액공제와의 중복성을 검토함
- 제도개선방안 부분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와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함
 -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로 구분하여 각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
 - 두 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발전방향을 논의함
 - 사업소득자의 범위와 표준공제제도가 이 부분에 해당됨

Ⅱ.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현황과 특징



II.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현황과 특징

1. 교육비 공제제도의 현황과 특징

가. 교육비 공제제도 현황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성실신고사업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신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불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됨
 -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원·체육시설(취학 전 아동만 해당)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만 해당하며, 연 50만원 한도)
 - 평생교육기관 및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불하는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된 비영리법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대학원에 지불하는 비용 및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불하는 교육비는 제외됨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한도는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300만원임

-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불한 교육비의 경우,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별도의 한도가 존재하지 않음
- 위에서 언급한 교육비 외에 대학원·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불하는 교육비, 직업훈련학원시설 수강료 등
 - 특정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표 II -1> 교육비 세액공제

구분		요건	공제한도	공제대상
기본 공제 대상자	취학전 아동	나이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00만원	-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초중고		300만원	-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복구입비(연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연30만원 한도) - 평생교육기관 및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대학교		900만원	- 수업료, 입학금 - 평생교육기관 및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 대학원 및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
	장애인	나이제한 없음 ¹⁾ / 소득금액 제한없음	전액	-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된 비영리법인(국외시설 포함)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본인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전액	- 위에서 언급한 교육비 이외에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훈련학원시설 교육비 등 포함 - 특정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주: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18세 미만인 자만 해당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자를 의미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년도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제외) (이하 ‘수입금액 요건’)
 - 해당 과세기간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이하 ‘계속경영 요건’)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등이 없을 것(이하 ‘세법 준수 요건’)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8에서 규정하는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의미함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요건’)
 -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이하 ‘기장신고 요건’)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이하 ‘사업용계좌 요건’)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함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나. 교육비 공제제도 발전과정

- 교육비 공제제도는 1977년 근로자 자신의 교육을 위하여 지불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근로자 본인의 교육을 위하여 지불한 교육비는 근로를 위해 지불하는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음

- 1981년에는 월정급여액이 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과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의 교육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1982년에는 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였음

- 이후 수혜대상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되었으며, 2008년에 현재의 공제한도인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으로 개정됨
 - 1995년에 유치원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였으며, 특별공제 합계액에 대하여 규정하였던 한도(연 240만원)를 없애고 대학생 1인당 연 230만원, 유치원아 1인당 연 70만원으로 개별적인 공제한도를 도입함
 - 1998년에 국외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를 도입함
 - 1999년에 대학생 1인당 연 300만원, 취학전 아동 1인당 연 1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됨
 - 2001년에 장애인을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를 도입함
 - 2003년에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개정함

- 2007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교육비 공제를 성실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제도는 2007년에 한시적인 제도로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일몰이 연장되었으며, 현재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 2009년에는 대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였음
 - 1인당 총교육비 공제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 공제가 허용됨

- 2014년에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지급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2017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규정된 성실사업자가 교육비,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완화함
 - 성실사업자의 요건 중 수입금액이 직전 3개연도 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50% 초과’로 개편함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개편함
 - 기장신고를 위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폐지함
 - 즉,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비 공제제도의 현황과 특징

가. 의료비 공제제도 현황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성실신고사업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불한 의료비 중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 지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의 3%,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이 됨
 - 본인 및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지불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연 7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불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로 지불한 본인일부부담금

- 성실사업자의 범위는 앞서 설명한 교육비 공제제도의 경우와 같음

나. 의료비 공제제도 발전과정

- 교육비 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공제제도도 1977년에 도입되었으며,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불한 의료비를 소득공제(연 24만원 한도)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제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의료보험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의료비의 수요자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됨
 - 1963년에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의료보험 임의가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70년에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근거가 마련되었고, 1977년에 처음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가입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됨¹⁾
 - 이 제도는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소득자에 비해 세원투명성이 높은 근로소득자를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단됨

- 1981년에는 총급여액의 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혜대상과 공제한도가 확대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제도 연혁 참조, <http://www.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B2160>, 2017. 12. 4 접속

- 1990년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개정됨
 - 1992년에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함
 - 1999~2002년에는 공제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연 500만원까지 확대됨
 - 2003년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음
 - 2008년에 현재의 공제한도인 연 7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됨
- 2006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08년부터 다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 적용을 허용함
 -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어 신용카드 결제분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납세자의 민원이 빈번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
- 2007년에는 이전까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었던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한시적으로(2009년 말 일몰 종료) 공제대상에 포함함
- 이 제도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통해서도 과세표준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9년 12월 31일에 일몰 종료하였음
- 2014년에 과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나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또한 난임시술비를 공제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16년에는 해당 의료비의 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하였음
- 의료비 공제제도도 교육비 공제제도와 동일한 이유로 2007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성실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는 2007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일
몰이 연장되었으며, 현재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 2017년에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다소 확대됨²⁾

3. 표준공제제도와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가. 표준공제제도

-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
하는 표준공제제도가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같은 조 제1항~제4항에 규정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규정
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허용됨
-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8에 규정된 성실사업자가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
가 적용됨
- 그 외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 7만원의 표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 7만원의 표준공제만 적용됨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됨
 - 즉,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공제의 중복이 허용됨

2)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비 공제제도의 관련 내용 참조

<표 II -2> 표준세액공제

구분	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조특법 제95조의2 제2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연 13만원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연 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	연 7만원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표준공제 12만원이 적용되는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요건
 - 신용카드 가맹점 요건, 기장신고 요건, 사업용계좌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요건
 - 수입금액 요건, 계속경영 요건, 세법 준수 요건

- 2017년 12월 19일 세법개정을 통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요건이 완화됨
 - 복식부기 신고자에서 간편장부 신고자로 확대하고,
 - 수입금액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하였음
 - 3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도 2년 이상으로 완화함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하여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소득세법」 제70조의2)

-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2012년부터 시행되었음
 - 업종별 수입금액은 앞서 교육비 공제제도를 설명하면서 정리한 바와 같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
- 그리고 연장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됨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성실사업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성실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특징과 정책이슈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특정 지출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다른 많은 지출 중 교육비와 의료비를 특정하여 공제를 하는 이유는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가치재(merit good)로서 정부가 소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으로 판단됨
- 가치재는 사회적 가치가 개인의 선호에 반영되지 않아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개인의 소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재화를 말함
 - 교육, 의료, 운동 등이 가치재에 해당하며, 이 부문에 대해서는 소비 또는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여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사회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조세 지원이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두 제도는 모두 1977년에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조세지원 외에 다른 재정지원이나 보험 등이 없어 조세지원이 수요 진작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
 - 교육의 경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고등학교 등록금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도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교육비의 실질적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음
 - 의료비의 경우에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편이 거듭 되어 의료비 부담 중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짐
 -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수요 진작 정책으로서 조세지원의 의미가 퇴색됨
 - 특히 재정지원, 보험 등이 비용을 지불하는 단계에서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데 비해 조세지원은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단계에서 세부담을 완화해주므로 비용 경감 정책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비용 경감 정책이라기보다는 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사후적으로 주어지는 뜻밖의 소득(windfall gain)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 시점에서는 비용 경감을 통한 수요 진작 정책으로서 효과보다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한 가계의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교육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학령인구의 거의 대부분(90% 이상)이 공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7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여 교육비는 해당 연령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됨
 - 의료비의 경우에도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치재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필수적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가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된다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경우, 재정자금 (fiscal fund)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후생 극대화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달리 고소득층 위주로 지원이 된다면, 수요 진작 등 다른 정책효과 없이 가처분소득의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그 외에 정책 적용 대상의 타당성 문제도 중요한 정책이슈임
 -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성실사업자의 범위는 타당한지,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소득을 은폐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판단하에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 이후, 이와 같은 차별적인 정책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하에,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그런데,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좁게 설정되면 성실사업자에게 불리한 과세제도가 계속되므로,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임
 - 또한 본인을 위해 지불한 비용 외에도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교육비의 경우 본인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노동소득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는 반면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

□ 지원규모의 타당성도 이슈가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교육비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공제한도가 학생 1인당 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연간 17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하는데 공제한도를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도 공제실적 등을 검토하여 공제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항목별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양자 간 차이가 있는바, 그러한 차이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법 제59조의4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의 표준공제가 적용되는 데 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종합소득만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7만원의 표준공제가 적용됨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함

Ⅲ. 주요 외국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Ⅲ. 주요 외국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1. 미국

- 미국의 개인 소득세 공제는 소득공제(Deductions)와 세액공제(Credits)로 구분됨
- 소득공제는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또는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계산하기 위한 조정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조정 총소득 산출을 위한 공제(Deductions for adjusted gross income)
 - 총소득으로부터 차감하여 조정 총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용 경비, 퇴직연금 납부금, 교육비, 학자금 대출이자 등이 있음
 - 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한 필요경비의 성격에 해당함
 -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 조정 총소득으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차감되는 금액으로 의료비, 이자비용, 기부금 등이 있음
 - 주로 특정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거나 가계의 특정 지출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활용됨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차감하는 것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교육비 등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음

가. 교육비 공제제도³⁾

- 미국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대학 교육비 또는 직업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대학 수업료 및 관련 비용 공제와 대학교육비 세액공제(AOTC), 평생교육 세액공제가 있음

3) IRS(미국 국세청) (2016b)

- 세 가지 공제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대학 수업료 및 관련 비용 공제는 대학등록금 등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며, AOTC는 대학교육비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평생교육 세액공제는 대학, 대학원, 직업교육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임

1) 수업료 및 관련 비용 공제(Tuition and Fee Deduction)

- (정의) 납세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 교육기관(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 등을 지불한 경우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제도임
 - 학기의 등록을 한 과세연도 또는 그다음 과세연도의 첫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음
 - 부부가 분리하여 신고하는 기혼자 및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공제한도) 납세자의 조정총소득(MAGI) 금액에 따라 교육비 공제액이 결정되며,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공제 혜택이 없음(<표 III-1> 참조)
 - 2016년 기준으로, 미혼자, 세대주 또는 미망인인 경우에는 조정총소득 \$65,000 이하일 때 연 \$4,000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조정총소득이 \$65,000~\$80,000이면 \$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조정총소득이 \$80,000을 초과하면 대학교육의 수업료 및 관련 비용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4,000와 \$2,000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각각 \$130,000와 \$160,000임

- (공제불가항목) 보험관련비용, 의료비, 교통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스포츠, 게임, 취미 또는 비학점 과정(noncredit course) 관련 비용도 포함되지 않음

- 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또는 평생교육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를 신청한 학생을 위해 지불한 대학교육비는 이 규정에 의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표 III-1> 공제한도(2016년)

(단위: 미국 달러)

구분	조정총소득(MAGI) ¹⁾	공제한도
미혼자, 세대주 또는 미망인	65,000 이하	4,000
	65,000 초과 80,000 이하	2,000
	80,000 초과	0
부부합산신고	130,000 이하	4,000
	130,000 초과 160,000 이하	2,000
	160,000 초과	0

주: 1)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는 조정 후 소득(AGI)에서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등 일정 공제항목을 다시 더해준 금액임
자료: IRS(2016b)

2) 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 (정의) 납세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4년간의 대학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중 첫 2년의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학생 한 명당 최대 \$2,50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액이 남을 경우 최대 \$1,000(세액공제액의 40%)까지 현금으로 환급됨
 - 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등록비(enrollment fees), 그 밖의 수업교재 등 구입비용으로 구성되며, 숙소 및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은 공제대상 항목이 아님
- (공제방법) 학생 1인을 기준으로 첫 해의 수업료 및 관련비용의 \$2,000에 대하여 100% 세액공제를 해주며, 다음 해에는 \$2,000에 대해 25%를 적용하여 총 \$2,5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액은 2016년 기준으로 미혼 납세자 조정총소득(MAGI) \$80,000(기혼자, \$160,000) ~\$90,000(기혼자, \$180,000) 구간에서 점감하며 점감구간이 끝나는 수준의 소득을 초과하면 공제혜택이 없음

- 납세자는 한 학생에 대하여 AOTC와 평생교육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3) 평생교육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 (정의) 납세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 대학원, 직업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 및 관련 비용에 대하여 연도의 제한 없이 매년 최대 \$2,000(\$10,000의 20%)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이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학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학생 1인당 \$2,000의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신고당 \$2,000를 공제받을 수 있음(\$2,000 per tax return)
 - AOTC와 달리 미사용 공제액이 환급되지 않음
 - 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등록비, 그 밖의 수업교재 등 구입비용으로 구성되며, 숙소 및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은 공제대상 항목이 아님
- (공제방법) 납세자 1인을 기준으로 수업료 및 관련비용에 대해 \$2,0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며, 다음연도 3월 이전에 시작하는 학기의 학비를 당기에 납부하였다면 이 또한 당기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음
 - 세액공제액은 2016년 기준으로 미혼 납세자 조정총소득(MAGI) \$55,000(기혼자, \$111,000)~\$65,000(기혼자, \$131,000) 구간에서 점감하며 점감구간이 끝나는 수준의 소득을 초과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납세자는 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와 AOTC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4)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 (정의) 납세자가 지불한 적격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음
 - 적격한 학자금 대출이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고등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를 의미함
 - 학자금 대출은 수업료, 수수료, 숙소, 식비와 관련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을 포함함

- (공제한도)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금액은 그 해에 실제 납부한 이자와 \$2,500 중 작은 금액임
 - 소득공제액은 2016년 기준으로 미혼 납세자 조정총소득(MAGI) \$65,000(기혼자, \$130,000)~\$80,000(기혼자, \$160,000) 구간에서 점감하며 소득금액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고소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나. 의료비 공제제도⁴⁾

- (정의) 납세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요건 미적용)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항목별 공제에 해당함

- (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음
 - 의사, 치과 의사 등에 지불한 비용
 - 의사 처방을 받은 약 구입비
 - 의료 서비스, 치료, 간호 서비스, 구급차 비용 등
 - 치료기간 동안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입원비(약물 및 알코올 중독 치료와 관련한 숙식비 포함)
 -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원거리로 이동할 경우 숙박료(1인 1박당 \$50 한도)
 - 의료보험료 납부액
 -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통비(2016년 기준 마일당 19센트의 표준요율로 공제 가능, 주차비 및 통행료 추가 공제 가능)
 - 의료 보조 기구 관련 비용(인공관절, 의치, 안경, 보청기, 휠체어, 안내견 등)
 - 금연 프로그램 및 치료목적의 체중감량 프로그램 비용
 -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ses, 가정에 치료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장비 등에 대한 지출금액은 의료비로서 공제 가능)

- (공제 불가능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음
 - 정상적이며, 건강한 아이를 돌보는 간호 서비스
 - 미용 목적의 성형
 - 치료 목적이 아닌 체중 감량 비용

4) IRS(미국 국세청) (2016a)

- 헬스클럽 비용
 - 처방받지 않은 약 구입비
 - 불법 수술 또는 치료 관련 비용
 - 장례비용
- (공제방법) 2016년 기준으로 의료비는 조정총소득(MAGI)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됨

2. 캐나다⁵⁾

- 캐나다는 소득세 공제제도로 소득공제보다는 주로 세액공제에 의존하며, 연방소득세법상 세액공제는 크게 비환급성 세액공제와 환급성 세액공제로 구분됨
- 비환급성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공제하는 항목인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경로자 공제와 세제 목적상 공제하는 항목인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이 있음
 - 환급성 세액공제는 세액계산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환급되며, 소득세 원천징수액, 의료비 환급금 및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음

가. 교육비 공제제도

1) 교육비 세액공제(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⁶⁾

- (정의) 본인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수업비, 교육비, 교재비를 합산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함

5) 본절에서 \$는 캐나다달러를 의미하며,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제도를 소개한 절들에서도 금액은 해당 국가의 화폐단위로 표시함

6)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118.5,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2017. 12. 4 접속

- 과거에 다 공제받지 못하여 적립된 금액(미공제 교육비 적립액)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미공제 교육비 적립액은 세금신고 확인서(Notice of Assessment)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대상 교육기관)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음
 - 캐나다 내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 학비 외에 교육비와 교재비 등의 공제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어야 함
 - ESDC(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인증을 받은 직업학교 등의 교육기관
 - 캐나다에 거주하며 통학을 통해 다닌 미국 대학

- (공제방법)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교육비, 교재비가 포함되며, 각각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개인소득세 최저세율(2006년 이후 15%)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함
 - (수업료) 교육기관에 실제 납부한 학비 상당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최소 \$100 이상을 지불하였어야 함
 - 수업료에는 입학금, 시험비 등이 포함되며 교재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수업료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국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업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3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비) 수업료와 교재비 외에 지출한 교육비용에 대하여 실제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교육기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함
 - 교육비 공제금액은 풀타임 학생인 경우 월 \$400를 공제하고 파트타임 학생인 경우 월 \$120를 공제함
 - (교재비) 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교재비에 대하여 교육기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며, 풀타임 학생인 경우 월 \$65를 공제하고 파트타임 학생인 경우 월 \$20를 공제함

2) 자녀교육비 이전공제(Tuition tax credit transferred)⁷⁾

- (정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다 공제하지 못한 교육비 지출액은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이전하여 공제할 수 있음
- (공제방법) 해당 교육비를 지출한 과세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교육비만 이전할 수 있으며, 과거로부터 이월된 교육비 미사용액은 이전할 수 없음
 - 이전이 가능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750(지출액 기준으로 \$5,000)임

3)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Credit for interest on student loan)⁸⁾

- (정의) 정부에서 승인된 대학 이상의 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관련된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공제함
- (공제방법) Canada Student Loans Act, the Canada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Act 등에 따라 승인된 대출금 이자에 개인소득세 최저세율(15%)을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함
 - 일반 은행을 통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향후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나. 의료비 공제제도

1) 의료비 공제(Medical expense credit) - 본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⁹⁾

- (정의) 납세자가 본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 합계가 \$2,268(2017년)와 본인 소득의 3%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개인소득세 최저세율(15%)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7)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118.81,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2017. 12. 4 접속

8)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118.62,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2017. 12. 4 접속

9)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118.2,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2017. 12. 4 접속

- (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치아 미백 등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되지 않음
 - 치과, 병원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 휠체어, 보청기, 안경 등의 구입 관련 비용
 - 거주지로부터 40km 이내에 의료기관이 없어, 거주지를 벗어나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교통비를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음
 - 80km 이상을 벗어난 경우에는 교통비 외에 숙박비 등도 포함하여 공제
 -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련 교통비 등의 경비는 인정되지 않음

- (대상 기간) 과거 12개월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망 연도에는 과거 24개월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음

2) 의료비 공제 - 기타 부양가족

- (정의) 1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손녀,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 기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였을 경우, 각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이 \$2,268(2017년)와 해당 부양가족 소득의 3%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개인소득세 최저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 공제대상 의료비, 대상기간 등은 본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와 동일함

3) 장애 세액공제(Credit for mental or physical impairment)¹⁰⁾

- (정의) 정신 또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대상자)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기능에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의사 또는 의료전문가로부터 장애가 있음을 입증받은 자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10) 이준봉(2013),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segments/tax-credits-deductions-persons-disabilities/disability-tax-credit.html#lgblt>), 2017. 12. 4 접속

- 장애는 일상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가하는 경우여야만 하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포함함
- (공제방법) 세액공제 금액은 2017년 기준 \$1,217(\$8,113의 15%)이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1인당 \$710(\$4,733의 15%)의 세액공제를 추가할 수 있음
 - 공제액을 납세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공제액은 배우자 및 부모에게 이전할 수 있음

4) 환급형 의료비 보조금(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¹¹⁾

- (정의) 의료비 세액공제나 장애 세액공제를 받은 자 중에서 의료비 지출액은 상당히 많고 소득이 적은 자는 환급형 의료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환급 대상자) 의료비 보조 환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해당연도에 의료비 공제 또는 장애 세액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어야 함
 - 개인은 1년 내내 캐나다에 거주하였어야 하며,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함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3,514(2017년 기준) 이상이어야 함
- (공제방법) 최대 환급금액은 의료비 공제액과 장애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의 25%와 \$1,203(2017년 기준) 중 작은 금액임
 - 가구 소득이 \$26,64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에 5%를 곱한 금액을 환급금액에서 차감함
 - 즉, 의료비 공제액과 장애 세액공제 합계액의 25%를 지급하되, 최대한도는 \$1,203이고, 가구 소득이 \$26,644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를 차감하여 환급함
 - 가구 소득이 \$50,704 이상이면 환급을 받을 금액이 없음
 - 이 제도는 근로·사업소득자에 대한 복지지원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조금 성격을 가짐

11)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122.51,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2017. 12. 4 접속

3. 호주

가. 교육비 공제제도

- (정의) 호주의 교육비 공제제도로는 업무관련 교육비 소득공제(self-education expenses)가 있는데, 이 제도는 납세자 본인이 일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임¹²⁾

- (요건)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교육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납세자 본인이 교육을 통하여 현재 업무분야와 관련된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
 - 교육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소득창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

- (대상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과 같음
 - 등록금, 교재 및 학업관련 서적 구입비
 - 문구류, 복사비 등 학습 자재 구입비
 - 학생회비
 - 교육 이수를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견학, 실습 관련 경비
 - 컴퓨터 등 학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수리비, 감가상각비
 - 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등

- (공제방법) 교육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이 다섯 종류로 구분되며, 최종 공제대상 교육비는 일정한 산식을 통하여 산출됨
 - 공제대상 항목과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공식은 <표 III-2>에 정리된 바와 같음

12)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In-detail/Education-and-study/?page=1#Calculating_your_claim), 2017. 12. 5 접속

〈표 III-2〉 교육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산정방식

항목	비용
A	등록금, 교재비, 문구구입비, 학생회비, 대중교통비
B	학습을 위해 사용된 컴퓨터, 책상 등의 감가상각비
C	학습을 위해 사용된 자산의 수리비
D	자동차비(항목 B와 C에서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수리비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E	본인 교육과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공제받지 못한 비용

총 공제대상 교육비 = A - { \$250 - min(\$250, C + D + E) } + B + C + D
 * 만약 C, D 또는 E 에 해당하는 비용이 \$250을 초과한다면 차감되는 금액은 \$0임

자료: ATO,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In-detail/Education-and-study/>, 2017.
 12. 5 접속

나. 의료비 공제제도

- (정의) 호주의 의료비 공제제도로는 장애 및 노인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s for disability aids, attendant care or aged care)가 있는데, 납세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적격한 의료비(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임¹³⁾
 - 장애보조장비와 관련된 비용은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보조해 주기 위한 장비 구입비용으로서 일반적인 가정용이나 상업용 장비는 포함되지 않음
 - 간병(Attendant care) 비용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재택간호, 요양원 등과 관련한 비용을 의미함
 - 노인간호(Aged care) 비용은 공인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지출된 비용을 의미함
- (대상 의료비) 구체적인 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음
 - 시각장애인이나 침대 혹은 휠체어 등에 의지하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에게 지급된 비용

13)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7/Supplementary-tax-return/Tax-offset-questions-T3-T11/T5-Total-net-medical-expenses-for-disability-aids,-attendant-care-or-aged-care-2017/?=redirected>), 2017. 12. 5 접속

- 간병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급된 비용
 - 의사의 처방을 통한 장애보조기구 구입비용
 - 인공관절, 인공안구 및 보청기 구입비용(수리 및 유지관련 비용 포함)
 - 장애인을 돕기 위한 안내견 유지비용
 - 재택간호 및 노인간호와 관련된 비용
- (공제방법) 세액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 등이 사용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조정과세소득(ATT)의 규모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조정과세소득(ATT)이 미혼납세자 기준 \$90,000(기혼자의 경우 \$180,000, 부양가족 1인당 \$1,500 추가) 이하인 경우 \$2,299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의료비 지출액이 \$5,42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함

4. 아일랜드

가. 교육비 공제제도

- (정의) 아일랜드에는 대학교육비 세액공제제도가 있는데, 납세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교육을 위한 학비지출액 중 적격한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임¹⁴⁾
- (대상 교육비) 일반적으로 아일랜드(아일랜드 외의 EU 회원국 포함)의 공립 대학교,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공제대상이 됨
- 대상 교육기관은 교육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대학과정 목록은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 보조금, 장학금을 받아서 지불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14) 아일랜드 국세청(<https://www.revenue.ie/en/personal-tax-credits-reliefs-and-exemptions/education/tuition-fees-paid-for-third-level-education/index.aspx>), 2017. 12. 5 접속

- (공제방법) 공제대상 교육비는 대학 과정당 최대 €7,000까지이며,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함
 - 실제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급한 수업료에서 아래의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함
 - 2017년 기준으로 전일제(Full-time) 과정일 경우 €3,000를 제외하며, 시간제(Part-time) 과정일 경우 €1,500을 제외함
 - 동시에 여러 대학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연도별로 1회만 제외금액을 적용함

나. 의료비 공제제도

- (정의) 아일랜드의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적격한 의료비의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임¹⁵⁾
- (대상 의료비) 적격한 의료비란 질병이나 부상, 장애로 인하여 지출하는 건강관리 비용을 의미하며, 임신 중인 여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음
 - 의사 및 컨설턴트 수수료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치료과정에 지출된 비용
 - 의사의 처방을 통하여 구입한 의약품, 의료장비 관련 비용
 - 의료 서비스, 치료, 간호 서비스, 구급차 비용 등
 - 장애인을 돕기 위한 안내견 유지비용
 - 비일상적인 치과 진료비용(스케일링, 의치 등과 관련된 비용은 불가)
 -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진료를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여행경비 포함)
- (공제방법)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 등이 지출한 의료비를 합산한 총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일반적인 의료비의 경우 지출액의 20%를 공제하고, 요양원과 관련된 비용은 지출액의 최대 40%까지 공제됨

15) 아일랜드 국세청(<https://www.revenue.ie/en/personal-tax-credits-reliefs-and-exemptions/health-and-age/health-expenses/index.aspx>), 2017. 12. 5 접속

5. 프랑스

- 프랑스 조세일반법상 세액의 감면(Réduction d'impôt)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되지 않음
 - 주요 세액 감면으로는 기부금, 교육비 및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 공제제도가 있음
 - 의료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교육비 공제제도는 중등 및 고등교육 학비 세액공제와 구직자의 직업교육비 소득공제, 학자금대출 이자공제가 있음

- 중등 및 고등교육 학비 세액공제(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frais de scolarité des enfants poursuivant des études secondaires ou supérieures)¹⁶⁾
 - (정의) 납세자가 중·고등교육 과정 중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학교급별로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공제방법) 세액공제 금액은 중등교육(중·고등학교 수준) 및 고등교육(대학교) 과정의 자녀별로 혜택이 주어지며, 과정별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중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61
 - 일반 고등학교 또는 기술(직업)고등학교 자녀의 경우 1인당 €153
 -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183
 - 세금 감면 혜택의 내용은 소득세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녀가 등록된 교육기관의 이름 및 자녀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 구직자의 직업교육비 소득공제(Deduction forfaitaire minimale pour frais professionnels prévue pour les demandeurs d'emploi depuis plus d'un an)¹⁷⁾
 - (정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이상된 구직자의 직업교육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함

16) 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199 quater F

17) 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83-3° 3eme alinea

- (공제방법)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졸업 또는 직업교육 등을 위한 지출이며, 연간 €937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Credit d'impot en faveur des etudiants en vue du financement de leurs etudes superieures)¹⁸⁾
 - (정의) 고등교육과정에 등록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관련된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함
 - (공제방법) 25세 이하의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며, 실제 지급한 연간 이자금액의 25%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되, 연간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6. 기타 국가

- 일본의 경우 일정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본인 교육비 중 일부를 소득공제(근로학생공제, 27만엔 한도)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및 기타 친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중 연간 소득금액의 5%와 10만엔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200만엔 한도)을 소득공제할 수 있음¹⁹⁾
 - 근로학생공제의 경우, 본인의 연간 소득이 65만엔 이하이고, 급여 소득 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됨
 - 또한, 특정한 근로관련 비용의 지출이 개산공제인 급여소득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데, 공제가 허용되는 특정 근로관련 비용에 업무관련 교육비(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가 있음(일본 소득세법 제57조의 2)²⁰⁾
- 싱가포르의 경우 근로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매년 최대 \$5,500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연간 급여의 1%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음²¹⁾

18) 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200 terdecies

19)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index.html), 2017. 12. 5 접속; 국중호(2009), pp. 68~70.

20) 일본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 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65만엔에서 최대 200만엔까지 공제 가능

- 홍콩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의 수업료 등 본인 교육비를 연간 최대 HKD 100,000까지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²²⁾)

7. 요약

- 본 장에서 검토한 주요 국가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를 국가별로 정리하면 <표 III-3>과 같음
- 교육비 공제의 경우 본인 교육비 공제와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본 장에서 조사한 모든 국가에서 본인 교육비에 대한 공제제도가 있음
 - 부양가족 교육비도 공제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이며,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본인 교육비만 공제함
 - 캐나다의 경우 본인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부모나 조부모에게 이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부양가족 교육비의 공제도 허용하는 국가들은 본인 교육비에 대해 직업상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공제함
 - 유일하게 프랑스의 경우 본인 교육비는 구직자의 직업교육비에 한해서 공제됨
 - 본인 교육비만 공제하는 국가는 대체로 업무관련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함
 - 호주, 일본, 싱가포르
 - 홍콩은 일반적인 교육비를 공제대상으로 함
- 업무관련 교육비 공제의 경우, 호주와 일본에서는 공제액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싱가포르에서는 연간 5,500싱가포르달러로 상한이 규정됨
 - 본인과 부양가족의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상한이 규정되어 있음

21) 싱가포르 국세청(<https://www.iras.gov.sg/irasHome/>), 2017. 12. 5 접속

22) 홍콩 정부(<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alaries/allowances/deductions/selfeducation.htm>)2017. 12. 5 접속; 조명환(2011), p. 62.

- 미국, 캐나다(부모, 조부모에게 이전되는 부분), 아일랜드, 프랑스, 홍콩
- 미국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표 III-3> 주요 국가별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 현황

구분	교육비		의료비
	본인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 및 관련비용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최대 \$4,000 소득공제 · 소득기준: 미혼자 \$80,000/기혼자 \$160,000 -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납부한 이자 소득공제(\$2,500 한도) · 소득기준: 미혼자 \$80,000/기혼자 \$160,000 - AO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최대 \$2,500 세액공제 · 소득기준: 미혼자 \$90,000/기혼자 \$180,000 - 평생교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당 최대 \$2,000 세액공제 · 소득기준: 미혼자 \$65,000/기혼자 \$13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소득공제 · 조정총소득(AGI)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공제(65세 이상의 경우: 7.5% 초과)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등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비, 교육비(\$400/월) 및 교재비(\$65/월) 합계액의 15% 세액공제 -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납부한 이자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비 이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등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전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소득공제 · \$2,268와 소득의 3%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세액공제 - 의료비 보조 환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이 \$3,514 이상이어야 함 · 의료비 공제액의 25%와 \$1,203 중 적은금액에서 \$26,644를 초과하는 소득의 5%를 차감한 금액 환급 - 장애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기준 \$1,217를 공제하며 장애 아동이 있을 경우 1인당 \$710 추가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관련 교육비용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이외에 학습과 관련한 자산의 수리비·감가상각비도 공제 가능하며 일정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및 노인 의료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장애 및 노인 의료비 세액공제

구분	교육비		의료비
	본인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90,000 (\$180,000) 초과하는 경우 \$5,42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0% 세액공제(이하인 경우 \$2,229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20%)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 · 과징당 최대 €7,000까지 가능하며 20%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공제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 · 지출액의 20% 세액공제 (요양원 비용: 40%)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의 직업교육을 위한 소득공제 · 1년 이상된 구직자가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 소득공제(€937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교육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학교: €61/1인, 고등학교: €153/1인, 대학교: €183/1인 -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 · 25세 이하 학생 대상 · 연간 이자금액의 25% 세액공제(€1,000 한도) 	-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학생공제 · 본인 교육비 소득공제(27만엔 한도) - 직무관련 교육비 공제 · 급여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직무관련 교육비 소득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공제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소득공제 · 소득의 5%와 10만엔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200만엔 한도)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육비 소득공제 · 연간 \$5,500 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공제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소득공제 · 연간 급여의 1% 이내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소득공제 · 연간 HKD 100,000 한도 	-	-

주: 금액은 각국의 자국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임
 자료: 본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일본, 싱가포르에서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홍콩, 프랑스에서는 의료비 공제제도가 없음
- 캐나다에서는 소득수준이 낮고 의료비 지출은 많은 경우에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환급형 의료비 보조제도가 있음
- 호주는 일반적인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장애 및 노인의 보조기구와 간병비 등이 공제대상임
- 우리나라는 의료비 공제의 상한이 있는데, 일본(상한 200만엔), 싱가포르(소득의 1%)에서 유사한 상한이 있으며, 그 외 국가들(미국, 캐나다, 아일랜드)에서는 상한 규정이 없음

IV.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적 분석



IV.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적 분석

- 본 장에서는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소득 귀속연도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기간에 대해 살펴봄

-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는데, 『국세통계연보』의 소득수준별 공제 자료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공제 자료만 존재함
 -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해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가 적용됨
 - 반면,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로 통칭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가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에 대해서는 연도별 전체 규모만 제시됨

- 본 장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교육비 및 의료비의 공제 실적에 대해 분석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과세 신고자료를 통해 살펴봄

- 이에 본 장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종합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를 의미함
 - 즉, 이하에서 평균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를 기준으로 분석함
 - 한편 2015년의 경우 종합소득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약 25%를 차지함
 - 이 비율은 2007년의 16.58%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이후부터 대체로 2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 종합소득자(금액) 중 근로소득자(금액)의 비중

(단위: 명, 백만원, %)

	종합소득(A)		근로소득(B)		근로소득 비중(C=B/A*100)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7	3,074,419	77,124,123	509,767	17,176,627	16.58	22.27
2008	3,584,432	85,082,505	640,745	20,845,024	17.88	24.50
2009	3,570,816	90,225,673	690,886	22,595,771	19.35	25.04
2010	3,785,248	100,266,798	773,758	25,587,205	20.44	25.52
2011	3,956,702	111,446,361	835,173	28,209,328	21.11	25.31
2012	4,352,929	126,023,230	1,085,461	38,995,404	24.94	30.94
2013	4,564,682	134,370,007	1,139,952	40,700,424	24.97	30.29
2014	5,052,552	144,782,717	1,197,341	40,879,491	23.70	28.24
2015	5,482,678	164,098,609	1,370,400	46,704,082	25.00	28.4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 교육비 공제 실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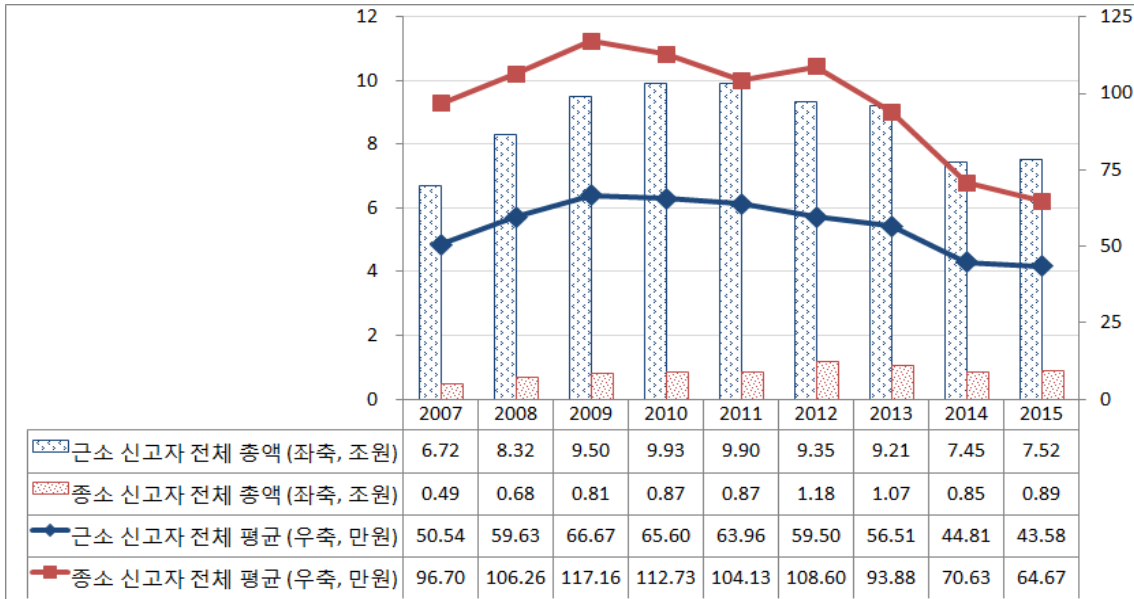
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

- 2007년 이후 근로소득자가 신청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총액은 2011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2007년 총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6조 7천억원이었으며, 이후 2011년 9조 9천억원까지 상승함
 - 2012년과 2013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각각 9조 4천억원, 9조 2천억원으로 감소함
 - 2014년과 2015년의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7조 5천억원으로 2013년 이전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 2014년부터는 교육비 및 의료비 등의 주요 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였음

- 종합소득자의 교육비 총공제대상금액 또한 근로소득자와 유사하게 2012년까지 증가한 이후 201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종합소득자의 2012년 교육비 총공제대상금액은 1조 2천억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가장 높았음

-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2014년 이후 교육비 총공제대상금액은 이전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014년과 2015년 종합소득자의 교육비 총공제대상금액은 각각 8,500억원과 8,90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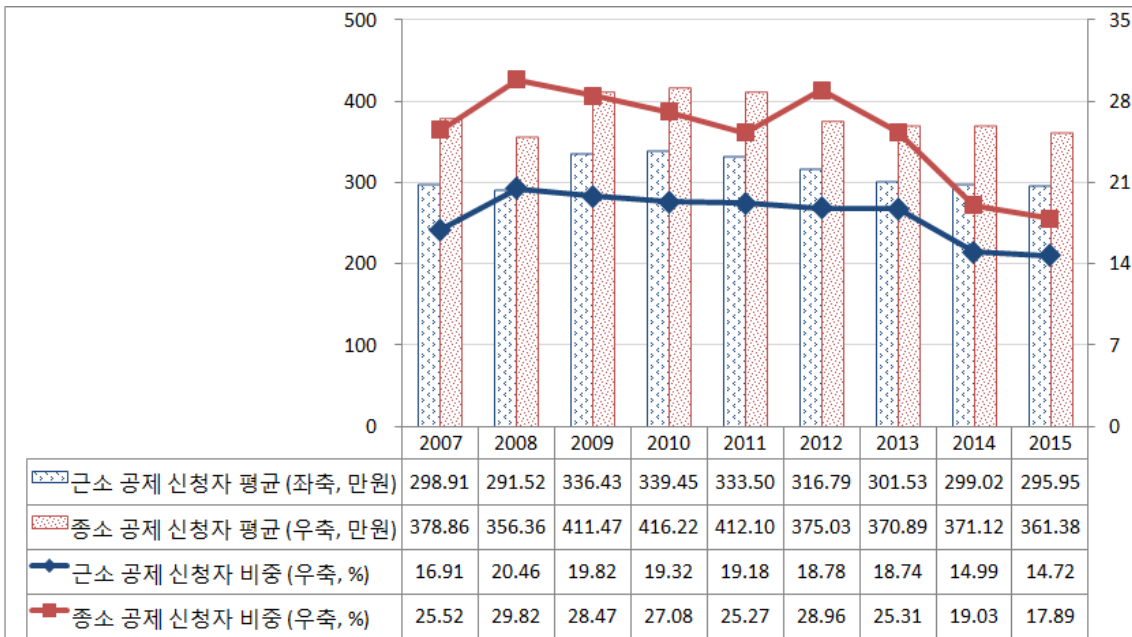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총공제대상금액을 전체 근로소득자로 나눈 평균 공제대상금액 또한 역-U자형의 추이가 나타남
 -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이 정점에 도달한 시기는 약 67만원을 기록한 2009년임
 - 이후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특히 2014년과 2015년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각각 45만원과 44만원으로 이전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또한 2009년에 가장 높았으며,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2009년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1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2012년을 제외한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음

□ 앞에서 살펴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전체에 대한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의 추이는 [그림 IV-2]와 같이 교육비 공제 신청인원의 비중과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근로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2008년 이후 대체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한 모습이 관찰됨
 - 근로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2008년에 20.46%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2013년까지 18.74%로 서서히 감소하였음
 - 2014년 동 비율은 14.99%로 이전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은 14.72%로 2014년보다 더 낮아졌지만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그림 IV-2] 교육비 공제 신청인원 비중 및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한편 근로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2010년 33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공제 신청자의 2011년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334만원으로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12년 317만원, 2013년 302만원으로 2년 연속 15만원 이상씩 하락하였음

- 반면 다른 지표에서 관찰되던 것과는 달리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2014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되지는 않음
 - 2014년과 2015년 공제 신청자의 공제대상금액은 각각 299만원과 296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유사한 수준임

- 종합소득자의 경우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종합소득자의 교육비 공제 신청자 비중은 2012년 28.96%였으나, 2013년과 2014년 각각 25.31%와 19.03%로 하락하였음

- 한편 종합소득자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2012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2011년 412만원에서 2012년 375만원으로 크게 감소함
 - 이후 2013년과 2014년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약 371만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2015년은 361만원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약 10만원 낮아졌으나, 2012년의 감소폭의 3분의 1보다도 작은 수준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근로소득자 전체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과 신청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이 모두 서서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4년 전체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하락한 것은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보다는 근로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인원의 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종합소득자의 경우 2012년 이후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인원의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그림 IV-1]을 살펴보면, 2013년 이전 기간과 비교해 2014년 이후 기간에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공제 신청자의 비율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2014년부터 주요 특별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세법개정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감소시킨 반면, 고소득의 세부담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전반적인 세부담 감소로 인하여 교육비 등의 공제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 뒤에서 살펴볼 의료비의 경우에도 2014년에 공제신청자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국가장학금과 같은 교육비 정부지원의 확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2012년에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총 1조 5천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2조 8천억원 2014년에는 3조 5천억원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음

〈표 IV-2〉 국가장학금 유형과 규모의 변화

(단위: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가장학금 총액	15,000	27,750	34,575	36,000	36,545	36,346
I 유형	7,500	20,750	28,350	29,000	29,000	28,917
II 유형	7,500	7,000	5,000	5,000	5,000	4,800
(자체노력연계)	7,500	6,000	4,000	4,000	4,000	4,000
(인센티브)	-	1,000	-	-	-	-
(지방인재)	-	-	1,000	1,000	1,000	800
다자녀	-	-	1,225	2,000	2,545	2,62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p. 2, 교육과학기술부(2013) p. 2, 교육부(2014) p. 4, 교육부(2015) pp. 1~2, 교육부(2016) p.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2017), p. 4, 안종석·강문정(2017), p. 37 <표 II-9>에서 재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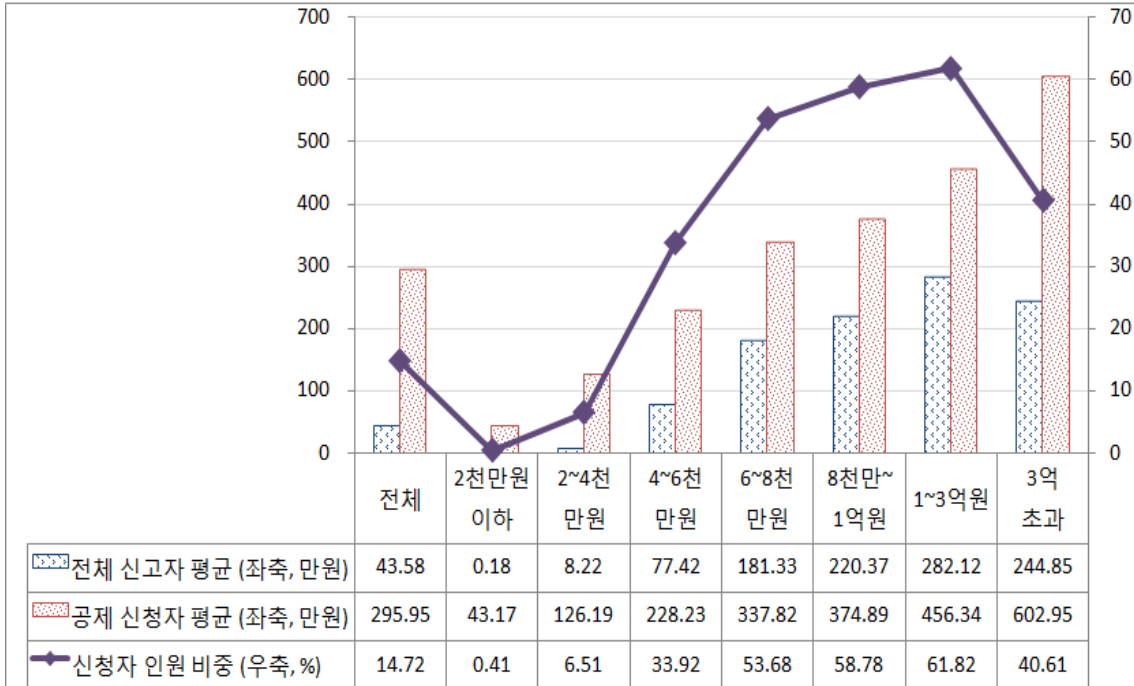
나. 소득수준별 교육비 공제 규모

- 다음에서는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과 공제세액을 소득수준별로 비교함
 - 소득수준별 분석을 위해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그리고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류된 통계를 활용함
 -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인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할 수도 있음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임
 - 다만,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계층별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개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된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세통계연보』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이 분류된 통계를 제공함
 - 종합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차감된 소득임

- 한편, 앞에서 살펴본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의 연도별 추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자 중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함
 - 『국세통계연보』는 소득구간별로 근로소득금액이 존재하는 자의 인원과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세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자를 제외함

- 먼저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규모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과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역-U자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교육비 공제대상금액도 증가함
 - 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2천원에 못 미침
 - 소득 1~3억원 구간의 공제대상금액은 약 282만원으로 전체 소득 구간 중 가장 높은 수준임

[그림 IV-3] 소득수준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근로소득자)



주: 소득구간은 근로소득금액 기준

자료: 국세청의 『2016 국세통계연보』 이용 저자 작성

- 근로소득자 전체에 대한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과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근로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앞에서 살펴본 전체 신고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과 역-U자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에 위치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0.41%만 교육비 공제를 신청함
 - 동 비율은 소득 3억원 이하 구간에서 소득과 함께 증가하며,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 1~3억원 구간에서는 약 61.82%의 근로소득자가 교육비 공제를 신청함
 -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약 40.61%가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여 직전 소득구간보다 신청비율이 낮아지지만, 절대적인 비율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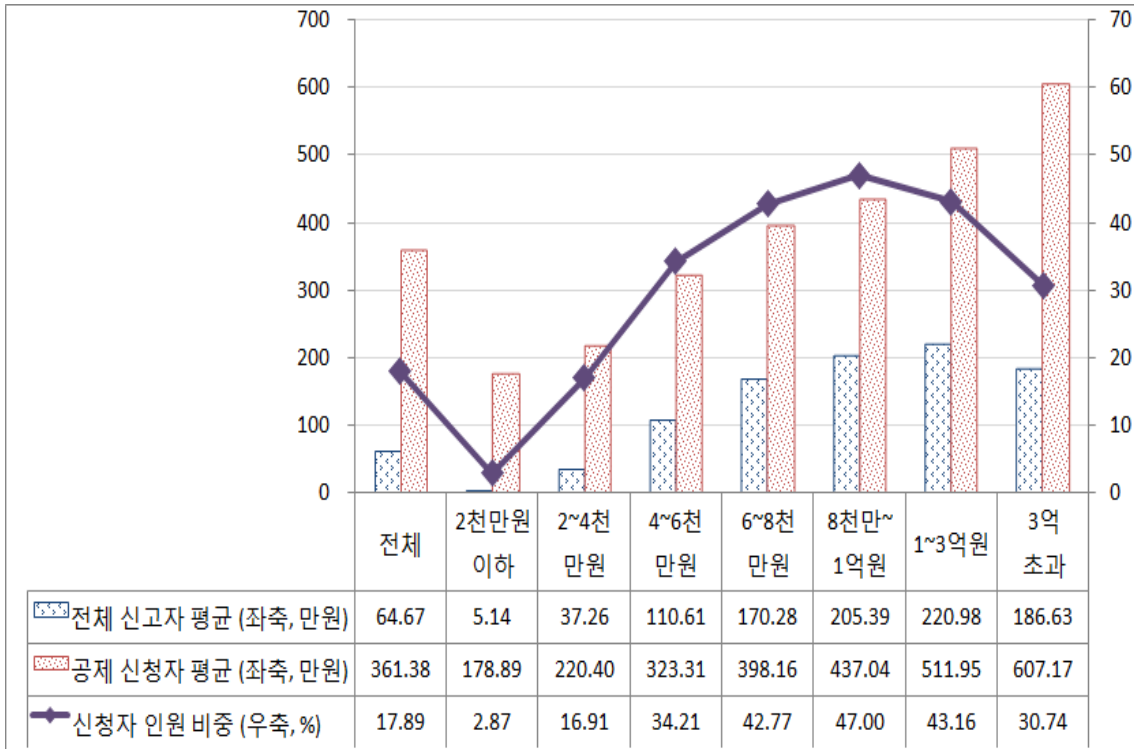
- 한편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소득과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약 43만원임
 -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소득수준과 함께 점차 증가하여 최고 소득구간인 3억원 초과 구간의 공제대상금액은 약 603만원임

- 종합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을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모습이 관찰됨

-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 1인당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소득수준과 역-U형의 관계에 있음
 -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5만원으로 전체 소득구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전체 소득구간 중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구간은 소득 1~3억원 구간으로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약 221만원임
 -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187만원으로 직전 소득구간의 종합소득자보다는 낮으나,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 또한 소득수준과 역-U자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2천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자 중 2.87%만 교육비 공제를 신청함
 -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소득 1억원 이하 구간에서 소득수준과 함께 증가하며, 신청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 1~3억원 구간의 종합소득자 중에서는 약 47%가 교육비 공제를 신청함
 - 소득 1~3억원, 3억원 초과 구간의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각각 43.16%, 30.74%로 소득 1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수준과 함께 공제 신청자의 비중이 감소함

[그림 IV-4] 소득수준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종합소득자)



주: 소득구간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자료: 국세청의 『2016 국세통계연보』 이용 저자 작성

- 반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 대상금액은 소득수준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소득 2천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 중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낮은 179만원임
 - 한편 최고 소득구간인 소득 3억원 초과 구간의 종합소득자 중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6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이 소득수준과 역-U자형의 관계에 있는데, 이는 주로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

2. 의료비 공제 실적 분석

가.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

-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액은 2013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액은 2007년 3조 7천억원에서 2013년 7조 2천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2014년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액은 5조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천억원가량 감소하였음
 - 하지만, 2015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액은 6조 1천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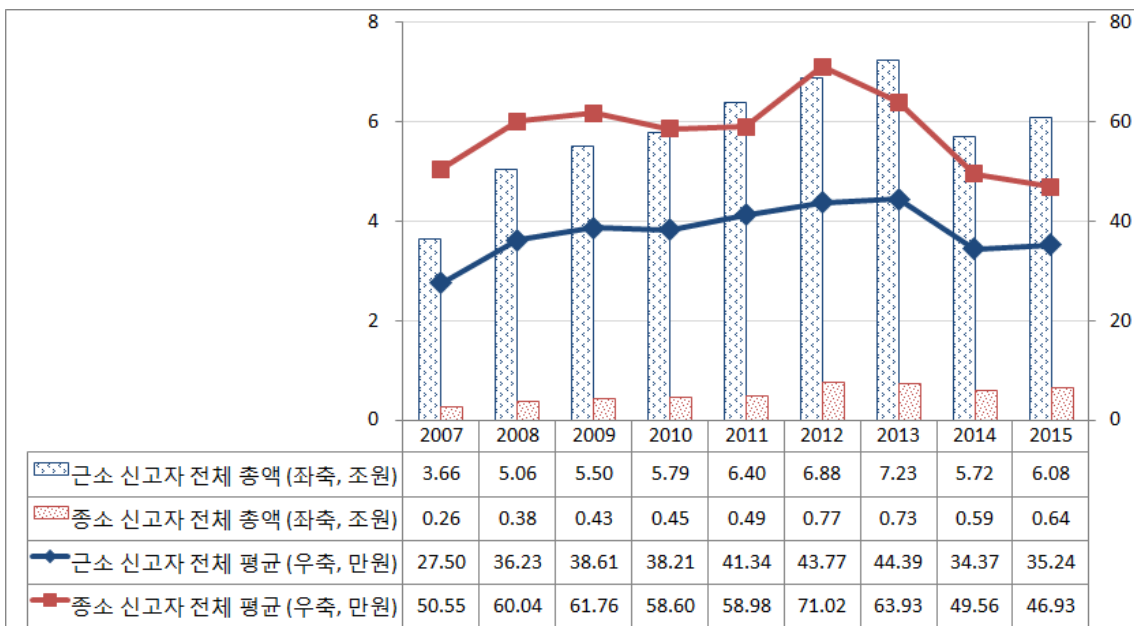
- 근로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또한 2013년까지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2007년 27만원에서 2013년 44만원으로 증가함
 - 한편 2014년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가량 감소하였음
 - 2015년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35만원으로 2014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종합소득자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액 또한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종합소득자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액은 2007년 2,600억원에서 2011년 4,9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2012년과 2013년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액은 각각 7,700억원과 7,300억원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하지만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액은 2014년 다시 5,900억원으로 낮아진뒤, 2015년 6,400억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종합소득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전체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2012년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08~2011년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60만원 주변에서 머물러 있었음
- 그러나 2012년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71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가량 증가하였음
- 하지만 2013년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다시 64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2014년과 2015년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각각 50만원과 47만원으로 축소됨

[그림 IV-5]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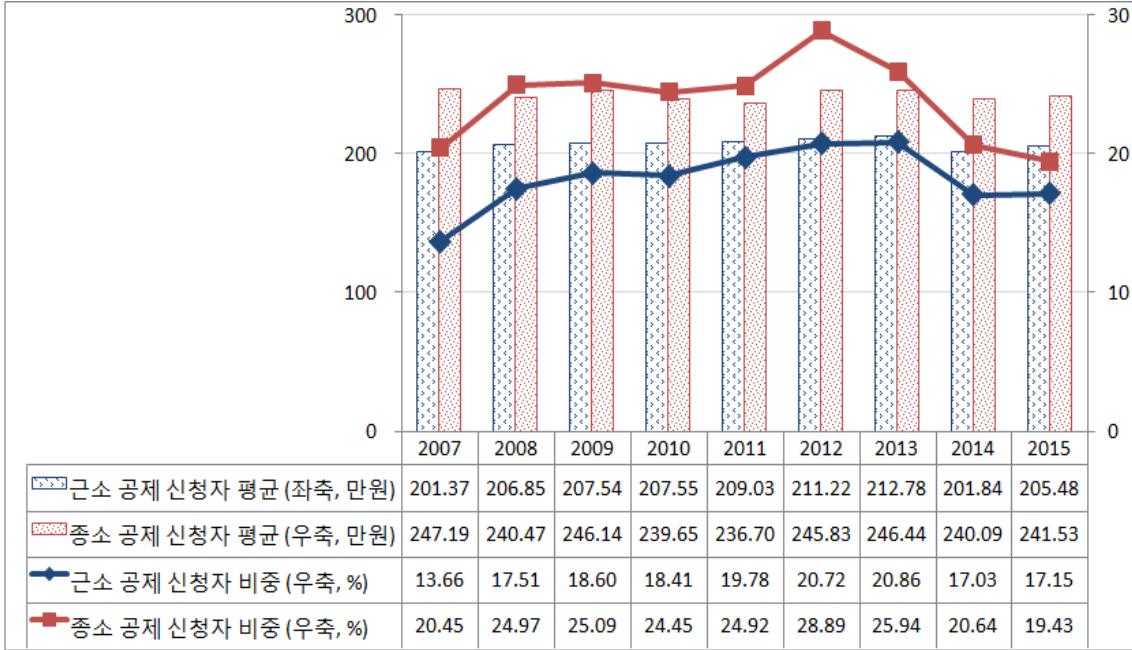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앞에서 분석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또한 공제 신청자의 비율과 공제 신청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그림 IV-6] 참조)
- 근로소득자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2013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증가폭이 큰 편은 아님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201만원에서 213만원으로 확대되었음
 - 같은 기간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28만원에서 44만원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그 증가폭이 작음

- 공제 신청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2014년에 202만원으로 감소한 뒤, 2015년 205만원으로 소폭 증가함

[그림 IV-6] 의료비 공제 신청인원 비중 및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과 달리 근로소득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의 변화 추이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됨
 -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2007년 13.66%에서 2013년 20.86%로 증가하였음
 - 2014년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17.03%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5년 다시 17.15%로 소폭 상승하였음
- 이에 2007년 이후 근로소득자 전체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변화는 공제 신청자의 공제대상금액보다는 주로 근로소득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 또한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보다는 공제 신청자의 비율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관찰됨

- 2007~2015년 종합소득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367만~447만원 사이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임
 - 해당 기간 중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7년이며, 가장 낮았던 해는 2011년임

-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그림 IV-7]에서 관찰된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 전체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냄
 - 2008~2011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이 25%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임
 - 하지만 2012년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28.89%로 증가하였음
 - 이후 2013년과 2014년의 의료비 공제 신청자 비중은 각각 25.94%와 20.64%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2015년의 의료비 공제 신청자 비중은 17.15%로 2014년과 유사한 수준임

- 의료비 공제로 인한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2014년도에 구조적으로 하락한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는 교육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주로 공제 신청 비율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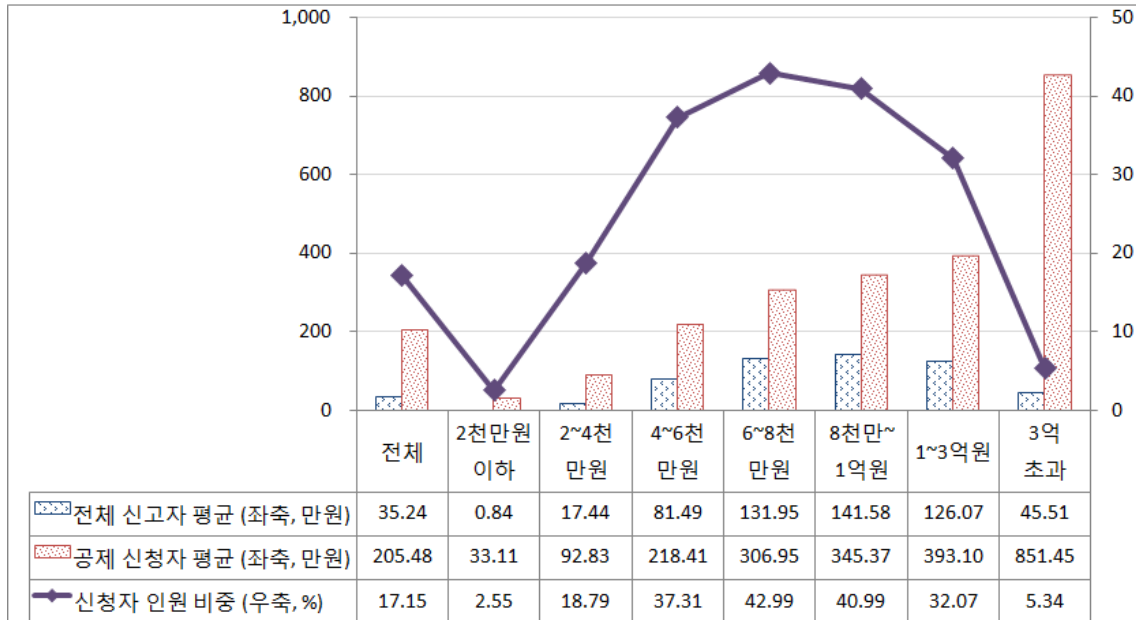
나. 소득수준별 의료비 공제 규모

- 다음에서는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토대로 소득구간별 의료비 공제 실적을 비교해 봄

-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을 살펴보면, 소득 8천만~1억원 구간까지는 동 대상금액이 소득과 함께 증가하다가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소득과 함께 감소함
 - 소득이 8천만~1억원인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142만원으로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높음
 - 반면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8천원으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46만원임

[그림 IV-7] 소득수준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근로소득자)



주: 소득구간은 근로소득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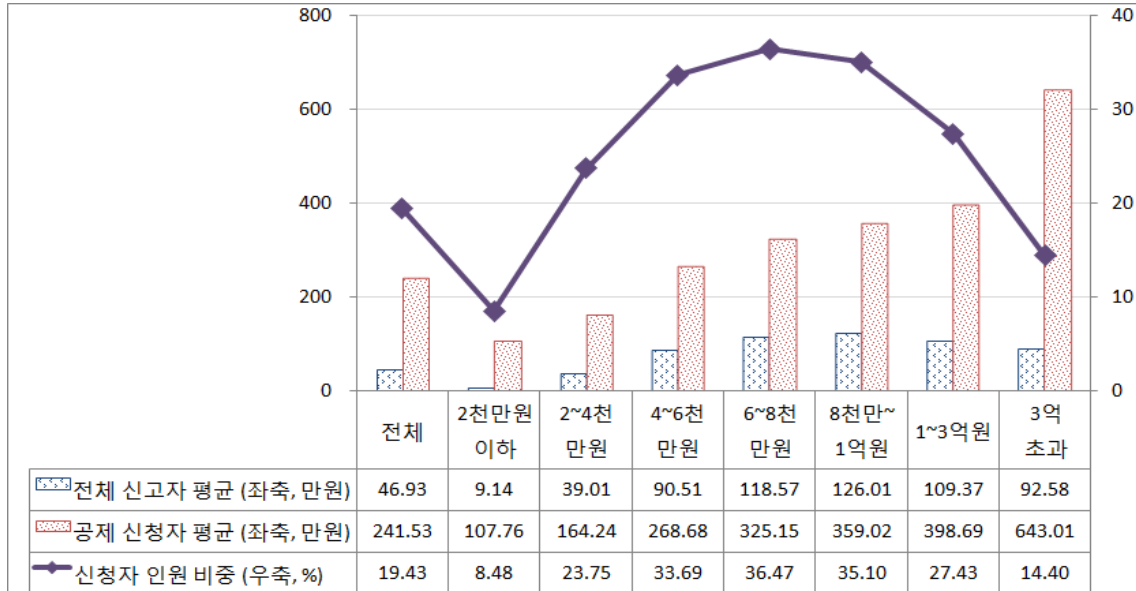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의 『2016 국세통계연보』 이용 저자 작성

-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소득구간별 차이는 신청인원의 비중에 의한 차이와 신청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차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근로소득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인원의 비중 또한 소득과 역-U자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6~8천만원인 근로소득자 중 약 42.99%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해 전체 소득구간에서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함
 - 또한 소득 4~6천만원과 8천만~1억원 구간에 위치한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신청 비율 또한 각각 37.31%와 40.99%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반면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2.55%만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여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낮은 신청률을 기록함

-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5.34%만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비 공제와 비교해 고소득층의 의료비 공제 신청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이는 의료비 공제제도의 제도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확률이 낮아짐
 - 반면 교육비 공제제도에는 지출액 하한 규정과 같은 소득에 따른 차별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음
-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소득수준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약 33만원이며, 이는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낮은 금액임
 -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851만원으로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높은 공제규모를 나타냄
- 이처럼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소득과 역-U자형의 관계에 있는데, 이는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소득계층별 차이보다는 공제 신청자 비율의 소득계층별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을 소득구간별로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특징이 관찰됨
-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소득과 역-U자형의 관계에 있음
 - 전체 소득구간 중 8천만~1억원 구간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126만원으로 가장 높음
 - 소득 6~8천만원 구간과 1~3억원 구간의 평균 공제대상금액 또한 각각 119만원과 109만원으로 높은 수준임

- 반면 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9만원으로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8] 소득수준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종합소득자)



주: 소득구간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자료: 국세청의 『2016 국세통계연보』 이용 저자 작성

-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을 공제 신청자의 비율과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신청 비율 역시 소득과 역-U자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6~8천만원인 종합소득자 중 36.47%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높은 비율임
 - 소득 6~8천만원 구간과 소득 8천만~1억원 구간의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 또한 각각 33.69%와 35.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반면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신청 비율은 8.48%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종합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소득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약 108만원이며, 이는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반면, 의료비 공제 신청자 중 소득 3억원 초과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643만원으로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이처럼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소득과 역-U형의 관계에 있는 것은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보다는 소득계층별 공제 신청자의 비율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3. 요약

- 본 장에서는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교육비와 의료비의 공제대상금액에 대하여 과거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계층별로 비교하였음
- 분석 결과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최근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2009년 67만원에서 2015년 44만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또한 2012년 109만원에서 2015년 6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의 변화는 전체 납세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 비율의 변화와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의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근로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의 하락에는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2008년 20.46%에서 2015년 14.72%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 또한 2010년 339만원에서 2015년 296만원으로 매년 하락하였음

- 한편 종합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의 변화에는 주로 종합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락한 뒤 2012년 반등하였으나, 이후 다시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같은 기간 종합소득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율은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 반면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2009~2011년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12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하락한 이후,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함

-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2007년 28만원에서 2013년 44만원으로 증가한 뒤, 2014년 한차례 34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다시 35만원으로 증가함
 -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2012년 71만원에서 2015년 47만원으로 하락하였음

-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변화는 주로 납세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자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함
 - 반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중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율은 앞에서 설명한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의 변화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을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소득 1~3억원 구간에서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다른 소득구간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소득구간에 위치한 근로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282만원임
 - 해당 소득구간에 위치한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220만원임

- 한편 소득구간별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또한 해당 소득구간의 납세자 중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과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그 결과 소득구간별 공제 신청자의 비율은 평균 공제신청금액과 유사하게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1~3억원 구간이, 그리고 종합소득자의 경우 소득 8천만~1억원 구간이 정점인 역-U자형의 모습을 나타냄
 - 반면 공제 신청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소득과 함께 확대되는 것으로 관찰됨

-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소득 8천만~1억원 구간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142만원임
 - 해당 구간의 종합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126만원임

- 교육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또한 공제 신청자의 비중과 신청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소득 6~8천만원 구간의 공제 신청 인원의 비중이 다른 소득구간과 비교해 가장 높음
 - 한편 공제 신청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모두 소득과 함께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V.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효과성 분석



V.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효과성 분석

- 제Ⅳ장에서는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실적을 분석하였음
 -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실적에 대한 분석임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대상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성실사업자도 포함됨
 -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인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에 본 장에서는 성실사업자를 포함하여 교육비와 의료비의 공제 실적을 분석함
 - 이를 위해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과세신고 표본자료를 활용함
 - 『국세통계연보』는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적에 대한 소득수준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제Ⅳ장의 분석에서는 성실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 하였음

- 이와 더불어 본 장에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를 살펴봄
 - 세부담 감소효과는 과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미시모의실험모형을 이용해 분석함
 - 동 모형에서 활용하는 과세 신고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실적 분석을 위한 자료와 동일함

1. 분석 자료

- 본 장에서 활용하는 과세신고 표본자료는 999,638명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와 548,492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 동 표본자료는 오종현 외(2017)에서 소득세제 관련 미시모의실험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과세당국으로부터 협조받은 자료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서 무작위로 추출되었음

□ 동 표본자료의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자 중 약 60%의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며, 상위 소득구간일수록 전체 근로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 <표 V-1>에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집단을 구분하였음

<표 V-1> 표본의 크기 및 소득분포

(단위: 명, %)

구분	근로 소득자	종합소득자					
		합계	성실사업자		일반사업자		
			근로소득 있는 자	근로소득 없는 자	근로소득 있는 자	근로소득 없는 자	
표 본 수 (명)	전체	999,638	548,492	2,163	11,270	133,138	401,921
	2천만원 이하	600,771	375,075	171	686	59,643	314,575
	4천만원 이하	212,286	83,736	160	500	32,091	50,985
	6천만원 이하	98,522	32,502	185	833	14,219	17,265
	8천만원 이하	46,544	18,374	183	1,065	9,086	8,040
	1억원 이하	20,582	11,287	178	1,099	5,811	4,199
	3억원 이하	19,680	22,754	730	5,052	10,386	6,586
	3억원 초과	1,253	4,764	556	2,035	1,902	271
비 중 (%)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천만원 이하	60.10	68.38	7.91	6.09	44.80	78.27
	4천만원 이하	21.24	15.27	7.40	4.44	24.10	12.69
	6천만원 이하	9.86	5.93	8.55	7.39	10.68	4.30
	8천만원 이하	4.66	3.35	8.46	9.45	6.82	2.00
	1억원 이하	2.06	2.06	8.23	9.75	4.36	1.04
	3억원 이하	1.97	4.15	33.75	44.83	7.80	1.64
	3억원 초과	0.13	0.87	25.71	18.06	1.43	0.07

출처: 과세신고 표본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전체 종합소득자의 소득분포 또한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특징을 보임
 - 전체 종합소득자 중 약 68.38%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임
 - 상위 소득구간일수록 전체 종합소득자 중에서 차지하는 인원의 비중이 감소함

-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 성실사업자의 여부와 근로소득 존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 기준에 의해 종합소득자를 구분해 볼 수 있음
 - 전체 종합소득자 중 성실사업자는 13,433명으로 비중은 약 2.45%임
 - 또한 성실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자는 표본에 2,163명 존재하여 전체 종합소득자의 약 0.39%를 차지함
 - 일반사업자이면서 「소득세법」에 의해 교육비 및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33,138명으로 전체 종합소득자의 약 24.27%를 차지함
 - 이에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의 대상자는 146,571명으로 전체 종합소득자 표본에서 약 26.72%를 차지함

〈표 V-2〉 종합소득자의 구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실사업자			일반사업자		
		소계	근로소득 있음	근로소득 없음	소계	근로소득 있음	근로소득 없음
표본 수	548,492	13,433	2,163	11,270	535,059	133,138	401,921
비중	100.00	2.45	0.39	2.05	97.55	24.27	73.28

출처: 과세신고 표본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종합소득자의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사업자가 성실사업자에 비해 저소득층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사업자 중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비중이 약 78.27%임
 - 반면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일반사업자 중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비중은 44.8%로 근로소득이 없는 일반사업자의 해당 비중보다 상당히 낮음

- 한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일반사업자와 달리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중 약 59.46%가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함
 - 근로소득이 없는 성실사업자 중에서는 약 62.89%가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함

- 성실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최소 매출액 기준은 5억원으로 표본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비중은 약 65.75%임
 -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업종은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표 V-3> 성실사업자의 매출액 분포

(단위: 명, %)

매출액구간	성실사업자 인원	비중
전체	13,433	100.00
5억원 미만	4,870	36.25
5~10억원	2,544	18.94
10~20억원	3,096	23.05
20억원 이상	2,923	21.76

출처: 과세신고 표본자료 이용 저자 작성

2. 교육비 및 의료비의 공제 실적 분석

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다음에서는 납세자를 아래와 같이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을 비교함
 - 근로소득자
 - 성실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은 종합소득자
 -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로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은 자

- 종합소득자를 근로소득 유무와 성실사업자 여부를 기준으로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도 있으나, 성실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아 종합소득자는 위와 같이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함
 -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의 표본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관측치가 작아 종합소득자를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해당 소득계층에 대한 분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종합소득자를 성실사업자와 그 외 일반사업자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제도적 차이로 인한 공제세액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은 사람들로 집단을 구성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중 교육비 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총 599명인데, 이 중 70.95%인 425명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의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기준에 의하여 특정 집단으로 분류할 수 없음

- 해당 사업자는 잠재적으로 양 제도를 모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양쪽 집단에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
 - 가령, 이하의 분석에서 성실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은 인원의 비중은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성실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성실사업자 대비 인원의 비중임
 -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공제제도를 적용받은 인원의 비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제도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모든 종합소득자 대비 인원의 비중임

〈표 V-4〉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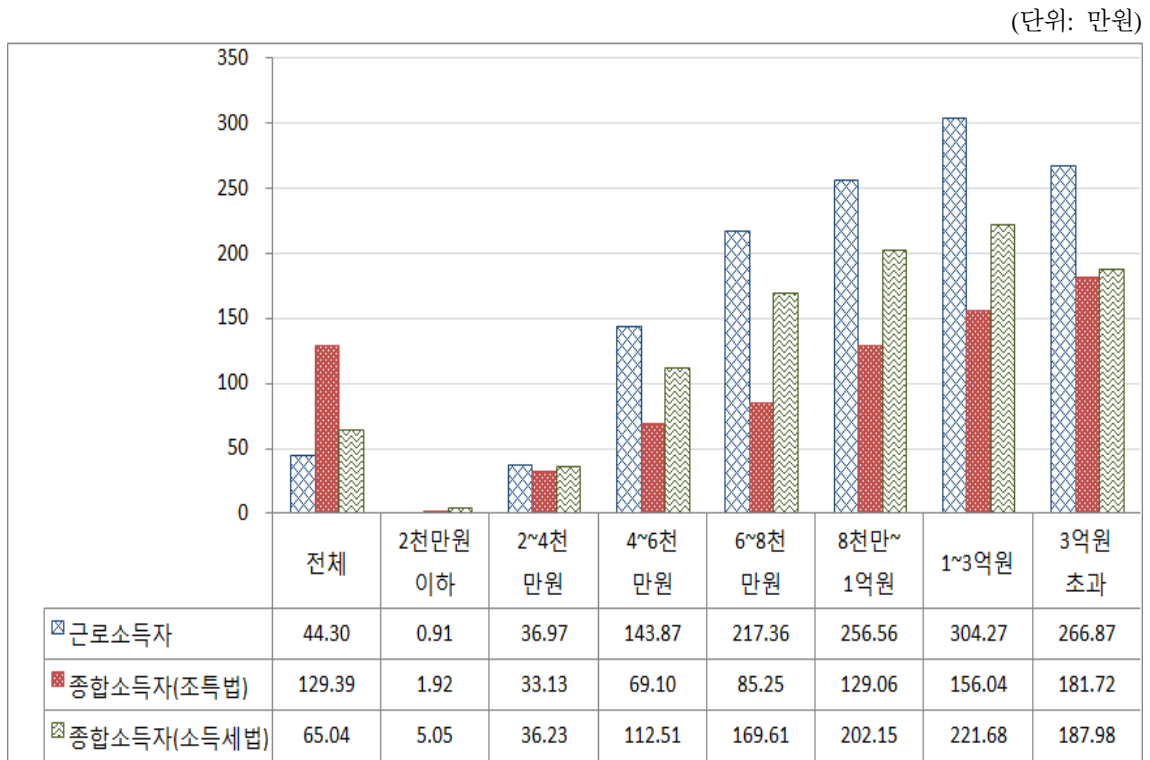
구분	근로 소득자	종합소득자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사업자	성실사업자		근로소득이 없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세법	소득세법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표본수 (A)	전체	999,638	146,571	133,138	2,163		11,270
	2천만원 이하	600,771	60,500	59,643	171		686
	2~4천만원	212,286	32,751	32,091	160		500
	4~6천만원	98,522	15,237	14,219	185		833
	6~8천만원	46,544	10,334	9,086	183		1,065
	8천만~1억원	20,582	7,088	5,811	178		1,099
	1~3억원	19,680	16,168	10,386	730		5,052
	3억원 초과	1,253	4,493	1,902	556		2,035
교육비 공제 신청 인원 (B)	전체	148,711	27,632	23,998	425	174	3,035
	2천만원 이하	7,426	1,852	1,844	2	0	6
	2~4천만원	40,856	5,381	5,310	19	4	48
	4~6천만원	48,302	5,090	4,890	45	9	146
	6~8천만원	26,487	4,243	3,936	44	22	241
	8천만~1억원	12,917	3,072	2,759	18	17	278
	1~3억원	12,167	6,438	4,602	169	76	1,591
	3억원 초과	556	1,556	657	128	46	725
비중 (C= B/A *100)	전체	14.88	18.58	18.02	19.65	8.04	26.93
	2천만원 이하	1.24	3.05	3.09	1.17	0.00	0.87
	2~4천만원	19.25	16.35	16.55	11.88	2.50	9.60
	4~6천만원	49.03	33.00	34.39	24.32	4.86	17.53
	6~8천만원	56.91	40.34	43.32	24.04	12.02	22.63
	8천만~1억원	62.76	42.28	47.48	10.11	9.55	25.30
	1~3억원	61.82	38.10	44.31	23.15	10.41	31.49
	3억원 초과	44.37	30.82	34.54	23.02	8.27	35.63

출처: 과세신고 표본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전체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을 비교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약 129만원으로 근로소득자와 「소득세법」을 적용한 종합소득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약 44만원임
 - 「소득세법」을 적용한 종합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약 65만원임

- 전체 평균을 비교하면 성실사업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높지만 소득구간별로 비교하면 모든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가장 높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가령 소득 1~3억원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304만원인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156만원으로 근로소득자의 절반 수준임
 - 해당 구간에서 「소득세법」을 적용한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222만원으로 앞에서 언급한 두 집단 사이에 위치함

[그림 V-1] 소득수준별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대상자 전체 평균)



출처: 과세신고 표본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소득구간별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더 높은 이유는 성실사업자의 소득이 대체로 공제대상금액이 높은 고소득 구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성실사업자 중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비중은 60%를 상회함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소득과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다른 소득집단과 다른 특징이 나타남
 - 근로소득자와 「소득세법」을 적용한 종합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인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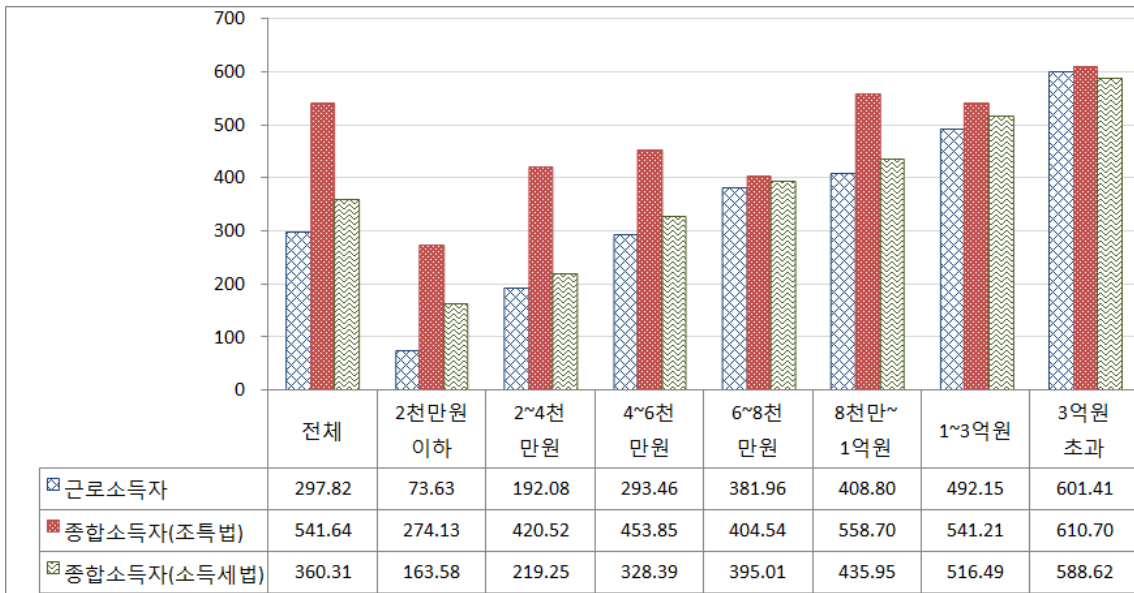
- 전체 납세자가 아닌 교육비 공제 신청자를 기준으로 평균 공제대상금액을 비교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근로소득자나 「소득세법」을 적용한 종합소득자보다 높음([그림 V-2]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542만원임
 - 「소득세법」을 적용한 종합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360만원임
 - 근로소득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298만원임

- 소득집단별 평균 공제대상금액의 차이는 고소득 계층보다는 저소득 계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274만원으로 근로소득자의 74만원에 비해 약 3.7배 수준임
 - 한편 소득 3억원 초과 구간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은 소득집단별로 589만원과 611만원 사이에 위치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모든 소득집단에서 소득수준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2] 소득수준별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공제 신청자 평균)

(단위: 만원)



출처: 과세신고 표본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전체 신고자 중 교육비 공제제도 신청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소득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평균을 볼 때,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공제제도 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V-3] 참조)

- 성실사업자 중 약 23.89%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 중에서는 약 18.05%가 「소득세법」을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약 14.88%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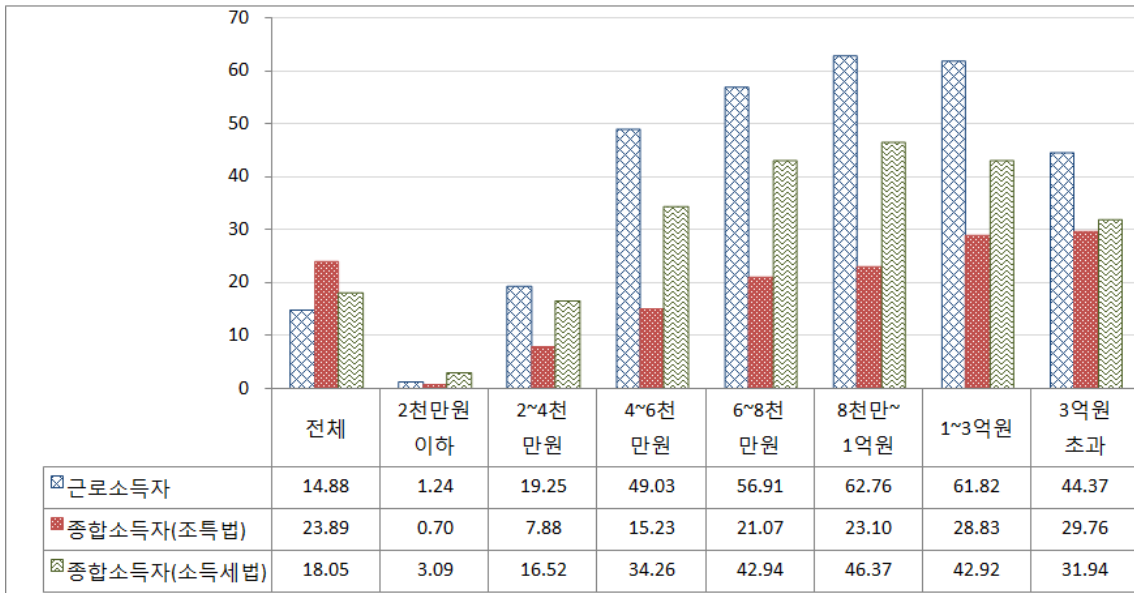
□ 한편,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소득구간과는 달리 모든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공제신청자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 성실사업자의 순임

- 특히, 소득 6~8천만원, 8천만~1억원, 1~3억원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공제 신청자는 각각 56.91, 62.76, 61.82%로 절반 이상임
- 한편, 해당 구간에서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공제 신청자는 각각 21.07%, 23.10%, 28.83%로 근로소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침

- 한편, 동일 구간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교육비 공제 신청자는 각각 42.94%, 46.37%, 42.92%로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의 중간 정도임

[그림 V-3] 소득수준별 교육비 공제 신청자 비율

(단위: %)



출처: 과세신고 표본자료 이용 저자 작성

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과세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분석 또한 종합소득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집단
 - 성실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집단
-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중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총 455명인데, 이 중 72.2%인 374명이 「소득세법」을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 교육비 공제와 달리 의료비 공제는 기준소득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 즉, 제도적으로 기준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할 경우 기준소득은 총급여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할 경우의 기준소득은 사업소득임

<표 V-5>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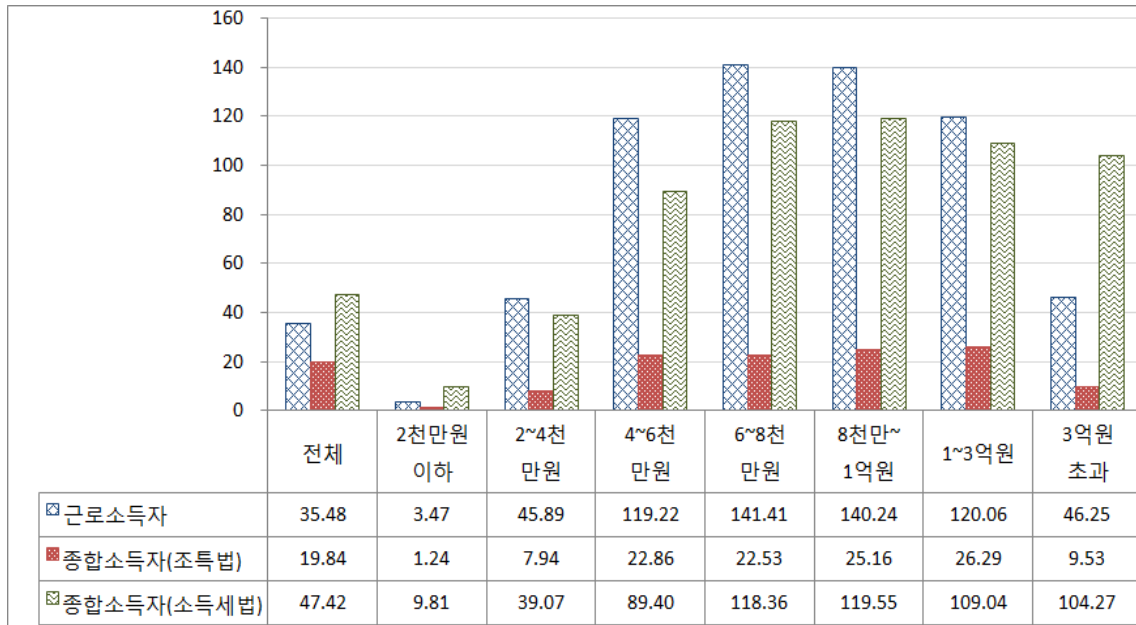
구분	근로 소득자	종합소득자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사업자	정실사업자		근로소득이 없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이 없는 자		
적용세법	소득세법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표본수 (A)	전체	999,638	146,571	133,138	2,163		11,270
	2천만원 이하	600,771	60,500	59,643	171		686
	2~4천만원	212,286	32,751	32,091	160		500
	4~6천만원	98,522	15,237	14,219	185		833
	6~8천만원	46,544	10,334	9,086	183		1,065
	8천만~1억원	20,582	7,088	5,811	178		1,099
	1~3억원	19,680	16,168	10,386	730		5,052
	3억원 초과	1,253	4,493	1,902	556		2,035
의료비 공제 신청 인원 (B)	전체	172,755	27,454	26,419	374	81	580
	2천만원 이하	38,007	5,341	5,329	5	1	6
	2~4천만원	60,095	7,833	7,780	31	3	19
	4~6천만원	41,520	4,811	4,705	41	3	62
	6~8천만원	19,475	3,502	3,372	32	16	82
	8천만~1억원	7,881	2,135	2,024	23	12	76
	1~3억원	5,697	3,410	2,942	136	35	297
	3억원 초과	80	422	267	106	11	38
비중 (C= B/A *100)	전체	17.28	18.73	19.84	17.29	3.74	5.15
	2천만원 이하	6.33	8.83	8.93	2.92	0.58	0.87
	2~4천만원	28.31	23.92	24.24	19.38	1.88	3.80
	4~6천만원	42.14	31.57	33.09	22.16	1.62	7.44
	6~8천만원	41.84	33.89	37.11	17.49	8.74	7.70
	8천만~1억원	38.29	30.12	34.83	12.92	6.74	6.92
	1~3억원	28.95	21.09	28.33	18.63	4.79	5.88
	3억원 초과	6.38	9.39	14.04	19.06	1.98	1.87

출처: 과세신고 표본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전체 납세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가장 낮고, 「소득세법」을 적용한 종합소득자의 공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V-4]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20만원임
- 「소득세법」을 적용한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47만원임
-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35만원으로 두 집단 사이에 있음

[그림 V-4] 소득수준별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대상자 전체 평균)

(단위: 만원)



출처: 과세신고 표본자료 이용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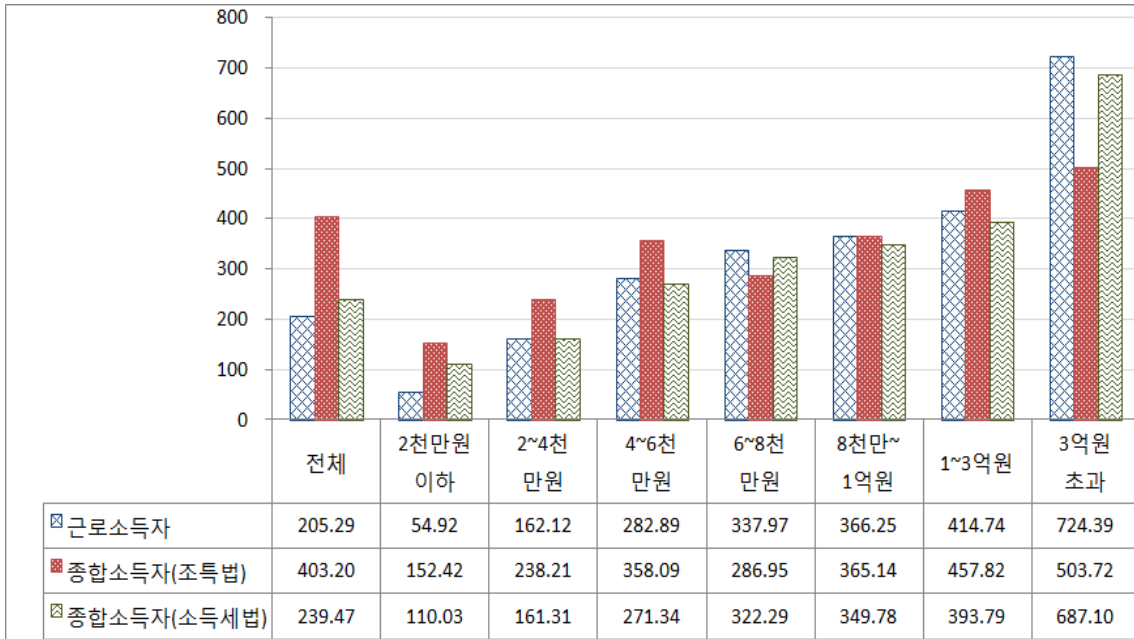
- 소득구간별로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을 살펴보더라도, 모든 소득구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가장 낮으며, 대체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보다 공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가령, 근로소득자 기준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소득 6~8천만원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약 141만원임
- 해당 구간의 「소득세법」을 적용한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118만원으로 근로소득자보다는 낮지만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임

- 반면 동일 구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은 23만원으로 근로소득자의 16% 수준에 불과함
- 성실사업자는 대부분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소득을 통제된 평균 의료비 공제세액이 다른 종류의 소득자보다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평균 공제세액에서는 그 격차가 상당히 좁아짐
 - 전체 평균을 비교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자의 56% 수준임
- 제Ⅳ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소득수준과 역-U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징은 모든 소득집단에서 동일하게 관찰됨
- 의료비 공제 신청자들만 비교해 보면, 다른 소득집단과 비교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전체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임([그림 V-5]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약 403만원임
 - 근로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205만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절반 수준임
 - 「소득세법」을 적용한 종합소득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약 239만원임
-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을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 3억원 초과 구간을 제외한 다른 소득구간에서는 대체로 성실사업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다른 종류의 소득자보다 높거나 유사함
 - 다만 소득 6~8천만원 구간에서 성실사업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약 287만원으로 근로소득자의 338만원과 성실사업자 외 종합소득자의 322만원보다 낮음
- 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504만원으로 다른 소득자보다 상당히 낮음

- 해당 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724만원임
- 동일 소득 구간에서 「소득세법」을 적용한 종합소득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687만원임

[그림 V-5] 소득수준별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공제 신청자 평균)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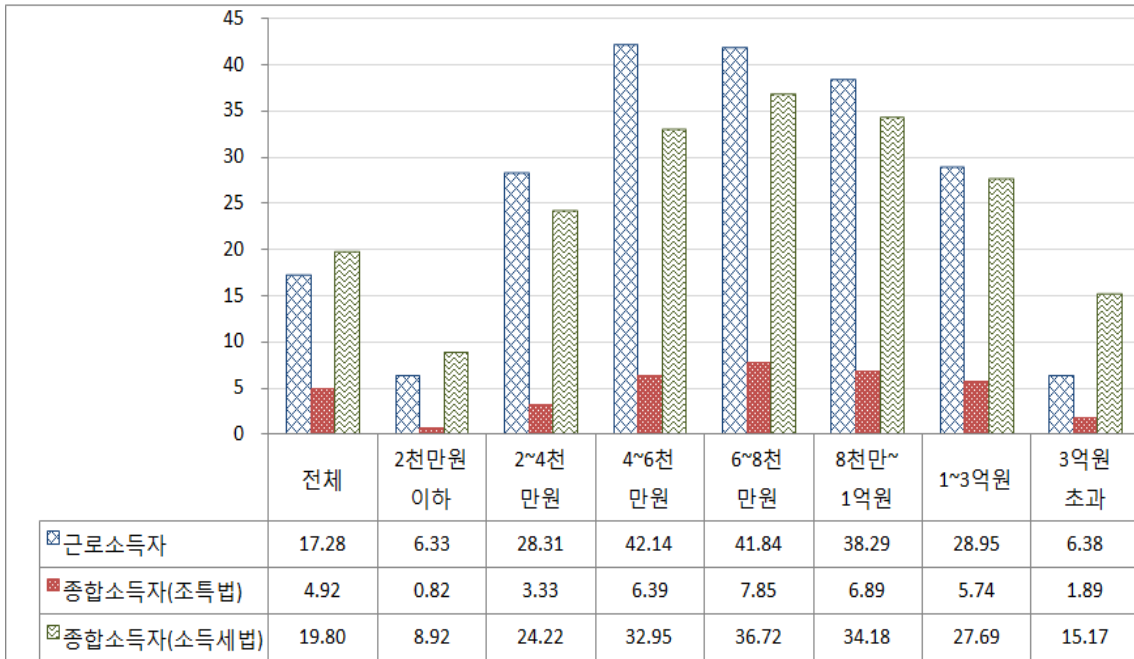


출처: 과세신고 표본자료 이용 저자 작성

- 공제대상자 전체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소득과 역-U자형의 관계에 있는 것과 달리, 공제 신청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은 대체로 소득과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경우 소득 6~8천만원 구간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287만원으로 소득 4~6천만원 구간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인 358만원보다 낮음
- 성실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의 비중은 약 4.92%로 근로소득자나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와 비교해 의료비 공제 신청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자료에서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약 17.28%임
 -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중은 약 19.8%임

[그림 V-6] 소득수준별 의료비 공제 신청자 비율

(단위: %)



출처: 과세신고 표본자료 이용 저자 작성

- 의료비 공제 신청자의 비율은 모든 소득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소득에 따라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소득과 역-U자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비 공제와는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다른 소득집단과 비교해 낮은데, 이는 전체 성실사업자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의 비중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 분석

- 앞에서는 과세신고 표본자료를 활용해 교육비 및 의료비의 공제대상금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에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가 소득계층별 세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가.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로 인한 소득계층별 세부담 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미시모의실험모형을 활용함
 - 오종현 외(2016)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활용한 미시모의실험모형을 구축하였음
 - 오종현 외(2017)는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오종현 외(2016)의 모형을 확장하였으며, 소득자료를 2015년 귀속자료로 최신화하였음

- 『국세통계연보』와 과세신고 표본자료에 나타난 공제세액 정보를 통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정확한 세부담 감소효과 분석이라 할 수 없음
 - 가령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교육비 공제제도가 존재하는 현재의 실제 세부담과 교육비 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세부담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음
 - 교육비 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다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자료에 나타난 교육비 공제세액이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음
 - 가령, 특정 납세자가 다른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고 오직 교육비 공제만 신청한 경우, 만약 교육비 공제제도가 사라진다면 해당 납세자는 표준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 증가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음

- 본원의 미시모의실험모형은 특정 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부담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 해당 제도와 다른 소득세제와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 및 의료비의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함
 - 시나리오 1: 현행 제도
 -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에서 교육비 공제제도를 제거함
 -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에서 의료비 공제제도를 제거함

- 위 모의실험에서 세부담 감소효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됨
 -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시나리오 2를 통해 계산된 세부담에서 시나리오 1을 통해 계산된 세부담을 차감하여 측정함
 - 마찬가지로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시나리오 3에 의해 계산된 세부담에서 시나리오 1에서 계산된 세부담을 차감하여 측정함

- 한편, 본원의 미시모의실험모형은 소득세제의 변화가 야기하는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세부담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소득세율의 인상은 근로자의 세후임금을 하락시키며 이는 해당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 노동공급의 변화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또한 변화시키며, 이는 소득세에 영향을 미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한 분석을 시행하지 않음
 - 본원의 미시모의실험모형에서는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과 각종 지출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추정 결과를 활용함
 - 위 탄력성들에 대한 추정치가 크지 않아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하더라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음
 - 가령 본원의 미시모의실험모형에서 가정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0.252임

나. 분석결과

- 아래의 <표 V-6>과 <표 V-7>은 각각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표본을 활용하여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 변화 효과를 분석한 모의실험결과를 보여줌
 - 해당 표의 총결정세액에 가산세 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반영된 결과임

- 모의실험결과 현행 제도하에서는 근로소득자의 평균 세부담은 188만원인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가 사라질 경우의 평균 총결정세액은 각각 195만원과 193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표 V-6> 참조)

- 이는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약 7만원가량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평균 세부담 감소 효과는 약 5만 6천원임
-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저소득 계층 보다는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소득 6천만원 이상인 모든 구간에서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30만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소득이 1~3억원인 근로소득자의 평균 세부담은 약 48만원가량 감소하여 전체 소득구간 중 세부담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소득계층의 세부담 감소폭은 5천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한 실효세율의 감소효과는 주로 소득 4천만~3억원 구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구간의 실효세율 감소폭은 0.259~0.438%포인트임
 - 특히, 소득 6~8천만원 구간의 실효세율 감소폭이 0.438%포인트로 가장 높음
- 소득분포의 양 꼬리에서 실효세율의 감소폭이 낮는데 이는 소득세제에서 세액공제의 특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세부담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공제한도가 있어 교육비 공제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 데 비해 최상위 소득계층의 세부담은 상당히 많으므로 최상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 감소폭도 작은 것으로 판단됨

<표 V-6>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효과(근로소득자)

(단위: 만원, %)

	평균 소득	총결정세액			세부담 변화		실효세율 변화	
		현행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전체	3,300	188	195	193	7.32	5.58	0.222	0.169
1천만원 이하	467	0	0	0	0.00	0.00	0.000	0.000
1~2천만원	1,513	2	2	2	0.02	0.15	0.002	0.010
2~3천만원	2,462	15	15	16	0.42	1.44	0.017	0.058
3~4천만원	3,471	50	52	54	2.63	3.96	0.076	0.114
4~6천만원	4,898	161	174	173	12.70	12.39	0.259	0.253
6~8천만원	6,910	404	434	425	30.24	21.38	0.438	0.309
8천만~1억원	8,872	806	843	830	36.53	23.33	0.412	0.263
1~3억원	13,194	2,068	2,116	2,089	47.87	21.08	0.363	0.160
3~5억원	37,448	11,532	11,576	11,542	44.35	9.82	0.118	0.026
5~10억원	66,575	23,056	23,099	23,058	43.03	1.81	0.065	0.003
10억원 초과	190,294	72,200	72,239	72,203	39.36	2.89	0.021	0.002

출처: 미시모의실험모형 이용 저자 도출

- 의료비 공제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소득 6천만~3억원 구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구간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약 21~23만원가량임
- 한편 교육비 공제제도와는 달리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의료비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빠르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구간에서는 의료비 공제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2천원 미만임
-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실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비 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6~8천만원 구간의 실효세율 감소폭이 0.309%포인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소득분포의 양 꼬리로 갈수록 실효세율의 감소폭은 점차 낮아지며, 특히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 감소폭은 0.002%포인트로 매우 낮음

□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종합소득자의 평균적인 세부담 감소폭은 각각 2만 5천원과 1만 8천원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모든 종합소득자에 대한 평균임

○ 제Ⅳ장의 분석에서는 종합소득자 중 근로소득 있는 종합소득자이거나 성실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미시모의실험모형에서는 모든 종합소득자가 포함되어 분석됨

□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한 종합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소득 6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소득 구간의 세부담의 13~20만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소득 3천만원 이하 구간의 세부담은 2천원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임

<표 V-7>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효과(종합소득자)

(단위: 만원, %)

	평균 소득	총결정세액			세부담 변화		실효세율 변화	
		현행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전체	3,146	539	542	541	2.53	1.75	0.080	0.055
1천만원 이하	401	6	6	6	0.00	0.00	0.000	0.000
1~2천만원	1,434	40	40	40	0.01	0.03	0.001	0.002
2~3천만원	2,385	107	107	107	0.19	0.48	0.008	0.020
3~4천만원	3,371	203	204	204	1.23	1.82	0.036	0.054
4~6천만원	4,766	381	387	386	5.70	4.79	0.120	0.101
6~8천만원	6,767	720	733	730	12.91	9.92	0.191	0.147
8천만~1억원	8,743	1,171	1,188	1,182	17.35	11.47	0.198	0.131
1~3억원	14,955	3,377	3,398	3,388	20.41	10.50	0.136	0.070
3~5억원	37,107	12,516	12,532	12,525	15.95	8.50	0.043	0.023
5~10억원	66,859	24,677	24,693	24,687	16.38	9.96	0.024	0.015
10억원 초과	262,323	104,882	104,901	104,894	18.88	11.88	0.007	0.005

출처: 미시모의실험모형 이용 저자 도출

-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한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소득 6천만~1억원 구간에서 0.19%포인트 이상 감소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실효세율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 세부담 감소효과와는 달리 실효세율의 감소효과는 소득분포의 양 꼬리로 갈수록 축소됨

-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종합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 또한 교육비 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6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이 소득구간의 세부담은 8만 5천원에서 11만 9천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소득 3천만원 이하 구간의 세부담 감소폭은 5천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됨

- 의료비 공제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인 계층에서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과 달리 종합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
 -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오히려 의료비 공제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해당 소득 구간의 세부담 감소폭이 근로소득자보다 종합소득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 계층에서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종합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근로소득자보다 큰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근로소득자보다 더 큰 것은 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자라 하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이 있으면 의료비 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이때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는 의료비 지출액 중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됨
 - 만약 높은 수준의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과 함께 적은 금액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전체 소득으로는 최고소득계층에 포함되지만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작아 의료비 공제가 세부담을 크게 낮추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료비 공제제도의 설계가 소득계층 간, 그리고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의료비 공제로 인한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소득 4천만~1억원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됨
 - 해당 구간의 실효세율은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하여 0.101~0.14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소득분포의 양 꼬리로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본인에 대한 지출액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함
 - 교육비와 의료비 모두 본인에 대한 지출액에는 공제대상금액에 대한 상한이 존재하지 않음
 - 반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대상금액에 한도가 존재함
 - 교육비 공제의 경우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1인당 300만원, 그리고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됨
 - 의료비 지출의 경우 부양가족 전체 의료비 중 700만원까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며,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이로 인해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납세자의 부양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에서는 납세자가 단독가구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와 부양가족이 3명인 가구(본인까지 총 4명)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를 비교해 봄
 - 특히 교육비 및 의료비로 인한 세부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소득 6천만~5억원 구간에 대해 비교함
 - 부양가족 수를 통제할 경우 소득 5억원 이상 구간의 관측치가 감소해 이상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분석대상 소득구간을 제한함

□ 먼저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한 소득 6천만~5억원 구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 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자가 단독가구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구간의 세부담은 약 9~16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한 소득구간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이 3명일 경우의 세부담은 약 41~63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8〉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효과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수 통제)

(단위: 만원, %)

	평균 소득	총결정세액			세부담 변화		실효세율 변화	
		현행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소득세를 단독으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458	0	0	0	0.00	0.00	0.000	0.000
1~2천만원	1,502	2	2	3	0.03	0.16	0.002	0.011
2~3천만원	2,444	19	20	21	0.46	1.49	0.019	0.061
3~4천만원	3,441	75	77	79	1.92	3.33	0.056	0.097
4~6천만원	4,817	236	240	241	4.59	5.17	0.095	0.107
6~8천만원	6,869	550	559	556	9.16	5.79	0.133	0.084
8천만~1억원	8,815	1,012	1,026	1,019	13.90	6.74	0.158	0.076
1~3억원	13,863	2,607	2,623	2,613	15.67	5.31	0.113	0.038
3~5억원	37,975	12,020	12,031	12,026	11.43	5.84	0.030	0.015
5~10억원	66,388	23,145	23,161	23,145	15.52	0.00	0.023	0.000
10억원 초과	207,768	78,693	78,708	78,700	14.71	7.05	0.007	0.003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1천만원 이하	593	0	0	0	0.00	0.00	0.000	0.000
1~2천만원	1,548	0	0	0	0.00	0.00	0.000	0.000
2~3천만원	2,528	1	1	1	0.06	0.10	0.002	0.004
3~4천만원	3,521	6	8	7	2.21	1.33	0.063	0.038
4~6천만원	4,955	93	116	109	22.27	16.19	0.449	0.327
6~8천만원	6,910	340	381	365	40.79	25.06	0.590	0.363
8천만~1억원	8,894	752	798	778	45.83	25.61	0.515	0.288
1~3억원	13,081	1,967	2,025	1,989	58.08	21.22	0.444	0.162
3~5억원	37,634	11,442	11,505	11,453	63.01	10.69	0.167	0.028
5~10억원	65,660	22,504	22,559	22,514	55.07	9.30	0.084	0.014
10억원 초과	139,563	52,132	52,195	52,132	63.07	0.00	0.045	0.000

출처: 미시모의실험모형 이용 저자 도출

<표 V-9>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효과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수 통제)

(단위: 만원, %)

	평균 소득	총결정세액			세부담 변화		실효세율 변화	
		현행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소득세를 단독으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355	7	7	7	0.00	0.00	0.000	0.000
1~2천만원	1,423	52	52	52	0.01	0.05	0.001	0.003
2~3천만원	2,334	126	126	127	0.26	0.71	0.011	0.030
3~4천만원	3,308	238	239	240	1.01	1.93	0.031	0.058
4~6천만원	4,668	453	456	456	2.32	2.58	0.050	0.055
6~8천만원	6,619	848	852	852	3.91	3.71	0.059	0.056
8천만~1억원	8,580	1,344	1,350	1,348	5.46	3.70	0.064	0.043
1~3억원	14,996	3,693	3,699	3,698	5.54	4.70	0.037	0.031
3~5억원	36,915	12,657	12,663	12,663	6.46	6.37	0.017	0.017
5~10억원	67,014	24,991	24,996	25,002	5.28	11.52	0.008	0.017
10억원 초과	322,633	129,709	129,715	129,724	6.27	14.98	0.002	0.005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1천만원 이하	573	0	0	0	0.00	0.00	0.000	0.000
1~2천만원	1,463	10	10	10	0.00	0.00	0.000	0.000
2~3천만원	2,439	67	67	67	0.03	0.03	0.001	0.001
3~4천만원	3,438	151	152	152	1.18	0.80	0.034	0.023
4~6천만원	4,860	305	315	312	9.64	6.19	0.198	0.127
6~8천만원	6,858	609	629	622	20.79	13.48	0.303	0.197
8천만~1억원	8,817	1,041	1,068	1,056	26.92	14.75	0.305	0.167
1~3억원	14,965	3,189	3,221	3,201	31.96	12.25	0.214	0.082
3~5억원	37,421	12,429	12,454	12,438	24.72	8.44	0.066	0.023
5~10억원	65,574	23,913	23,938	23,923	25.10	10.34	0.038	0.016
10억원 초과	252,161	101,282	101,325	101,287	42.82	5.13	0.017	0.002

출처: 미시모의실험모형 이용 저자 도출

-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 또한 부양가족 수에 영향을 받음
- 소득 6천만~5억원 구간에 위치한 단독가구의 경우 의료비 공제로 인하여 세부담이 5~7만원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부양가족이 3명인 가구는 세부담이 11~26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동일한 분석을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도 수행한 결과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남
 - 소득 6천만~3억원 구간의 종합소득자가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하여 세부담이 4~6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21~32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동일한 소득구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를 비교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4~6만원 감소하는 데 비해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8~1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 요약

- 본 장에서는 과세신고 표본자료를 활용해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적에 대해 살펴보았음
-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유리한 제도를 통해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을 통한 신청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중 599명이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였는데, 이 중 70.95%가 「소득세법」을 적용함
 -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중 455명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였는데, 이 중 72.2%가 「소득세법」을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과 공제 신청자의 비율이 근로소득자 등의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성실사업자 중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등 평균 소득수준이 다른 소득집단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대체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교육비 공제대상금액과 공제 신청 비율이 더 높음
- 의료비 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공제를 신청한 성실사업자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은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제 신청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성실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의 비중은 약 4.92%로 근로소득자(17.28%)나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19.8%)보다 의료비 공제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본 장에서는 본원의 미시모의실험모형을 이용하여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소득계층별 세부담 감소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음

□ 근로소득자를 위주로 세부담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하여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각각 7만원과 5만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평균적인 실효세율 감소폭은 0.222%포인트와 0.169%포인트임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폭이 가장 큰 소득구간은 8천만~1억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비 공제제도로 인한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약 37만원 감소하였음
- 해당 소득구간에서 의료비 공제제도로 인한 세부담은 약 23만원 감소하였음

□ 한편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로 인하여 실효세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구간은 소득 6~8천만원 구간임

- 교육비 공제로 인하여 해당 구간의 실효세율은 약 0.438%포인트 감소하였음
- 의료비 공제는 해당 구간의 실효세율을 약 0.309%포인트 감소시켰음

□ 한편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로 인한 세부담 감소폭은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임
- 소득 6~8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단독가구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를 통해 낮아지는 세부담은 각각 9~14만원과 5~7만원 수준임
- 동일한 소득구간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 3명과 함께 소득세를 신고하면 교육비와 의료비로 인한 세부담 감소폭은 각각 41~63만원과 11~26만원으로 확대됨

VI.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타당성 분석



Ⅵ.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가. 정부 개입의 근거

-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관점으로 파악하여 볼 수 있음

- 첫째,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임
 - 개인의 소비가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는데, 개별 소비자가 이러한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효용만을 고려하여 소비를 하는 경우 개인의 결정에 따른 소비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작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가치재로 분류됨
 -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증대를 위하여 노력함

- 둘째, 필요경비적 성격의 공제로 봐야 한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음
 -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함
 - 한편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을 모두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의 창출 즉, 근로의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의 필요경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소득과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근로에 필요한 경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특정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그 경비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셋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치의 성격도 있음

- 개인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인데, 정부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사업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
 - 여기서 실효세율은 노출된 소득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을 의미함
 - 이는 근로소득의 경우 과세소득이 거의 모두 노출되는 데 비해 사업소득은 과세소득이 부분적으로 은폐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사업소득의 은폐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제도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실효세율을 차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1977년에 이 공제제도들이 도입될 때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점차 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2008년 이후 사업자 중에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허용함
-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저소득층 가계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점도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

나. 정부 개입 근거의 타당성 분석

- 다음에서는 앞서 제시한 정부 개입의 근거를 우리나라의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함

1) 가치제 지원의 타당성

-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가치제이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액공제가 없을 때의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수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달할 때 타당한 논리임
- 교육의 경우, 이미 취학률과 진학률이 최고의 수준으로 교육서비스 수요가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낮다고 할 수 없음

- 초·중·고등학교의 취학률은 각각 97.3%, 94.2%, 93.7%이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68.9%임(2017년)²³⁾
- 이와 같이 높은 교육서비스 수요가 모두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실현된 사적인 수요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정부가 기본적인 교육비를 모두 부담하며, 고등학교 수업료도 연 200만원 이하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대학의 경우에는 2012년 이후 반값등록금을 목표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여,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함
 - 이와 같은 정부 지원이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 수요 증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교육비 세액공제가 이와 같이 높은 교육수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교육비를 지불하는 당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정산을 할 때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교육수요자가 그러한 가격인하 효과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교육비를 지불하는 단계에서의 자금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없음
 - 정부의 교육비 지원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조사해 본 결과, 교육비 세액공제가 교육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찾지 못하였음²⁴⁾
 - 이는 연구자들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교육서비스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함
 - 자력으로, 또는 용자 등을 통해 교육비를 지불한 가계의 입장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후적 소득(windfall income, 13월의 보너스)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2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pp. 11~12.

24) 안종석·김문정(2017), 제IV장 제1절 참조

- 의료비의 경우에도 가치재의 관점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건강보험 급여서비스를 통해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서 연간 본인부담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가치재로서 의료서비스 수요 진작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급여서비스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17년의 경우 소득 1분위는 122만원, 10분위는 514만원임²⁵⁾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도는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항목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그러므로 의료비 공제는 주로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의료서비스 비용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비급여서비스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의료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지급시기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기와 달라 수요자가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여 수요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함
 - 그러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도 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제공되는 사후적 소득(windfall income, 13월의 보너스)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안이 시급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비급여항목의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고려하여 서비스 구매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필요경비 공제의 타당성

- 소득세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나 적절한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p. 5

- 근로자 본인의 직업관련 교육훈련비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거나 비과세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우리나라도 본인 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정하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며, 부양가족과 달리 대학원 교육에 따른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이는 본인 교육비를 필요경비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부양가족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부양가족의 교육 여부가 본인의 근로 능력 및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음
- 의료비의 경우에도 본인의 질병 치료비용을 필요경비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급여서비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음
 - 부양가족 의료비도 근로자의 근로 능력 및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

3)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타당성

- 과세당국이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소득자의 과세소득 중에서 상당부분이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종석·강성훈·오종현(2017)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자 중에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2011년 귀속소득의 31.4%가 과소신고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은폐할 수단이 없어 소득이 거의 노출되는 것으로 판단됨
- 과표양성화율에 차이가 있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교정하는 수단으로 소득세 공제를 통해 노출된 소득에 대한 실효 세율 격차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공제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노출된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에 격차를 두면, 성실하게 신고하여 모든 소득을 노출시킨 사업자가 높은 실효세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
 -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자의 요건을 세법에 규정하고, 2007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자에게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 공제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업자의 노출된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에 격차를 둘 때, 그 수단으로서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각종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모두 이 같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소득세에서 허용되는 공제는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성격의 개산공제와 필요경비 성격의 항목별 공제, 인적공제, 특정 지출 장려를 위한 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 중에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공제제도는 필요경비 성격의 개산공제라고 할 수 있음
 - 인적공제나 필요경비 성격의 항목별 공제, 특정 지출 장려를 위한 공제는 지출의 구성이나 인적 구성에 따라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데 비해, 개산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줌
 - 그러므로 필요경비 개산공제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도 할 수 있음

4) 가계의 교육비·의료비 부담 완화

-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교육비를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필수적 경비로 인식됨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필수적 경비이고, 그 경비

- 의 규모가 저소득계층의 가계 재정을 상당히 압박하는 수준이라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가계 재정을 상당히 압박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수업료와 교과서대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바 학부모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임
- 학부모부담은 방과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중학교) 정도이며,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급식비가 포함됨
 -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는 공제한도가 각각 50만원과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방과후활동비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한도가 60만원임
 - 201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경상북도(초등학교와 중학교), 대구(중학교)뿐인데, 경상북도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읍면지역의 학교, 대구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무상급식을 실시함
 -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경우에 대체로 연 100만원 이내의 교육비(교복비 제외)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은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제도를 통해서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을 받음²⁶⁾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정부가 보육·교육비를 지원함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연간 평균 63만원, 26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함²⁷⁾
 -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하여 비자발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유치원 학령인구의 유치원 취학률이 50.7%이며, 그 중 75.2%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함²⁸⁾

26) 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중복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함

27)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28)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p. 11, p. 22

- 이는 학령인구 중 38% 정도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함을 의미함

-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학부모가 수업료와 교과서대금을 납부함
 -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급식비 부담이 있으며, 그 외에 방과후 활동비,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부담이 발생함
 - 등록금은 연 200만원 이내로 책정됨
 -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각 지방교육청별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대체로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지원이 됨

- 대학의 경우 국공립은 등록금이 전문대학 평균 241만원, 대학 386만원이고, 사립은 전문대학 590만원, 대학 713만원 수준임(2016년 평균)²⁹⁾
 - 대체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음
 - 2016년 국공립 전문대 76.8%, 대학 65.5%, 사립 전문대 55.1%, 대학 47.7%³⁰⁾
 - 대학 재학생에서 국가장학금 I 유형의 혜택을 받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46%, 2015년 42%임³¹⁾
 -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 10분위 가운데 2분위 이하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장학금이 지원됨
 - 4분위까지는 대체로 등록금의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지원됨
 - 소득분위 9분위와 10분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지원을 받지 못함

-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음³²⁾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음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공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임

29) 안종석·김문정(2017), <표 III-2>

30) 안종석·김문정(2017), <표 III-2>

31) 안종석·김문정(2017), <표 III-6>

32) 실제 교육비의 분포에 대해서는 뒤에서 교육비 공제한도의 적절성 평가에서 자세하게 검토함

-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수업료와 교과서대가 없으며, 대체로 무상급식이 제공되므로 교복구입비(중학교), 방과후수업비, 현장체험학습비 정도만 납부하면 됨
 - 대학의 경우 재학생 중 소득 하위 20% 이하인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20~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절반 정도를 지원받음
- 학교 급에 따라서는 중간소득계층에서도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유아의 경우, 대다수는 국가 지원으로 교육비를 충당하지만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연 260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함
 - 학령아동의 38% 정도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함(2017년)
 - 고등학교는 등록금과 교과서대, 급식비, 교복구입비, 방과후수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납부하여야 함
 - 대학의 경우 재학생 중 소득 하위 42%(2015년)~45%(2014년) 정도만 국가장학금 I 유형의 혜택을 받으며, 그 외 학생들은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대학등록금은 사립대학 평균 연 713만원임
- 의료비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됨
- <표 VI-1>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하는 소득분위와 소득분위에 따른 1인당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리하였음
- 소득분위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 12월 27일에 고시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10분위 구분 자료를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율로 나눠서 각 분위의 상한 소득과 하한 소득을 산출하였음³³⁾
 -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액 상한액으로 2018년부터 적용되는 금액임³⁴⁾

3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8,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2. 27

3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의 이해」, <http://www.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B2260>, 2018. 1. 17 접속

- 본인부담 상한액은 진료일수가 120일 이하인 경우와 120일 초과인 경우로 구분되어 있는데, 120일 초과인 경우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2017년에 적용되던 상한액에 물가인상분 반영 수준의 조정을 한 것임
-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120일 초과에 비해 1분위는 44만원, 2분위와 3분위는 55만원, 4분위와 5분위는 58만원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였고, 6분위 이상은 120일 초과인 경우와 차이가 없음

<표 VI-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분위별 보수와 본인부담 상한(2018)

(단위: 만원)

소득분위 ¹⁾	연간 보험료 ²⁾		연간 보수 ³⁾		본인부담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분위		44		1,440	80	124
2, 3분위	44	62	1,440	2,040	100	155
4, 5분위	62	89	2,040	2,904	150	208
6, 7분위	89	134	2,904	4,368	260	260
8분위	134	172	4,368	5,637	313	313
9분위	172	236	5,637	7,715	418	418
10분위	236		7,715		523	523

주: 1)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10분위로 구분하여 발표한 월간 보험료 상한 및 하한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분위를 구분하였음

2)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보험료에 12를 곱하여 연단위로 환산하였음

3) 연간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율로 나누어 연간 보수를 산정함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8,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2. 27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의 이해」, <http://www.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B2260>. 2018. 1. 17 접속

- <표 VI-2>에서는 <표 VI-1>의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해당되는 소득구간의 하한 및 상한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정리하였음
 - 120일 이하의 경우를 보면, 본인부담 상한액이 각 소득구간 상한액의 5~6%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간별 소득 하한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 비중을 보면 대체로 7~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비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한편 120일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간소득 상한 대비 비율을 보면 1분위가 8.61%이고, 소득분위가 높아지면서 이 비율이 낮아져 6~7분위에서는 5.95%, 9분위에서는 5.42%가 됨
- 구간소득 하한 대비 비율은 2~3분위가 10.76%이고, 소득분위가 높아지면서 낮아져 8분위에서는 7.17%, 10분위에서는 6.78%가 됨

<표 VI-2>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의 비율(2018)

(단위: %)

소득분위	본인부담 상한/소득			
	120일 이하		120일 초과	
	소득 하한	소득 상한	소득 하한	소득 상한
1분위		5.56		8.61
2, 3분위	6.94	4.90	10.76	7.60
4, 5분위	7.35	5.17	10.20	7.16
6, 7분위	8.95	5.95	8.95	5.95
8분위	7.17	5.55	7.17	5.55
9분위	7.42	5.42	7.42	5.42
10분위	6.78		6.78	

자료: <표 VI-1>을 사용하여 저자 계산

- 그러므로 소득 3%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적용된다면, 본인부담 상한액만큼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체로 지출액의 1/2~2/3가 공제대상 의료비가 됨
 - 120일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중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의 비율이 소득분위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아짐
 - 120일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본인부담 상한액 중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고, 같은 구간 내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음
 - 이는 대체로 의료비가 소득구간별 일정액으로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제도를 보완하여 소득재분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함
- 그 외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 1인당 부담에 상한을 두는 것으로, 한 가정 내에 2명 이상의 환자가 상한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가계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음

- 의료비 공제대상에는 급여서비스 외에 비급여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한 비용도 포함됨
 - 비급여서비스가 질병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정부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서비스를 급여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³⁵⁾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비급여서비스에 대해서도 가계의 부담을 살펴보고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다. 정부 개입 근거의 타당성 분석 요약

- 본절에서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정부 개입의 근거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VI-3>과 같음
- 교육비 공제의 경우 대체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됨
 - 세액공제가 없더라도 교육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많아서 가치재로서 지원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부양가족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수단으로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절하지 않음
 -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개산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은 지원의 효과가 약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의 교육비 지원, 교육기관별 교육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로 중간소득계층 이상에서 혜택을 받고,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교육비 중에서도 본인 교육비의 경우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공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35) 보건복지부(2017)

〈표 VI-3〉 교육비·의료비 공제의 정부 개입 근거와 타당성

정부 개입의 근거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1) 가치재	- 세액공제가 없어도 수요가 충분히 많아 개입 불필요	-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급여항목)의 경우 수요 진작을 위한 지원 불필요 -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요 증대 효과 기대
(2) 필요경비	- 납세자 본인 교육비의 경우 필요경비 - 부양가족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3) 과세형평성	- 특정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보다는 개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특정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보다는 개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4) 가계소득지원	-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이 있어 세액공제 필요하지 않음 - 중·고소득층의 경우 학교 급별로 차이 · 유아, 고등학교, 대학은 중간소득계층 이상에서 어느 정도 부담 발생	- 예기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지원 필요 · 급여항목이라도 2인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 비급여 서비스 비용 등

자료: 저자 작성

□ 의료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의 경우 세액공제가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급여항목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있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세액공제 필요성이 약함
- 예기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함
 - 급여항목의 경우 환자 1인당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나 가족 내에서 여러 명에 대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음
 - 비급여항목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지원대상의 적절성

- 지원대상의 적절성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검토함
 - 근로자와 세법상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 국한하여 공제를 허용하는데, 그것이 적절한지?
 -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 및 의료비를 모두 공제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적절한지?

가. 교육비·의료비 공제대상 사업자 현황과 정책이슈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됨
 - 1977년에 처음 도입될 때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경우에 모든 소득이 노출되므로 같은 공제제도를 적용하면 사업자에 비해 실제소득 대비 실효세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이후 2007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중에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음
-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과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8에 규정된 성실사업자로서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제도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함
 -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성실신고확인자’라고 칭하고, 그 외에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소규모 성실사업자’로 칭함
 - 그리고 이들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성실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 성실신고확인자는 수입금액 합계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규정된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이들 대상자 중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성실신고확인자가 됨
 -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2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10억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 사업체의 규모가 작아 성실신고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갖추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³⁶⁾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과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요건, 기장신고 요건, 사업용계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규정된 수입금액 요건과 계속경영 요건, 세법 준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가 적용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3만원,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12만원의 표준공제가 적용됨
- 근로자의 경우에는 교육비·의료비 외에도 다른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소규모 성실사업자 외의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7만원의 표준공제가 적용되는데, 성실신고확인자도 이 범주에 속함
 - 성실신고확인자는 표준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 적용대상 사업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자 중에서 성실사업자에게만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둘째,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나. 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게만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의 타당성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였는데, 2007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성실사업자에게도 공제를 허용하게 되었음

36) 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제Ⅱ장에서 교육비 공제제도를 소개하는 부분 참조

-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및 발전 과정은 소득세 특별공제제도가 기본적으로는 각 항목별로 고유의 목적이 있지만,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음을 시사함
 - 1977년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소득 은폐가 사업자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 이후 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진전되고, 사업자 중에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됨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에게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게 되었음
-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문제는 개산공제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자 전체와 사업자 전체의 세부담 격차 문제이므로 특정 항목의 지출에 연계된 특별공제 방식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직도 사업자들 사이에는 소득의 은폐가 만연해 있으며, 소득의 상당부분이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득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지출은 정확하게 집계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뒤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 시점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면 향후 제도 개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³⁷⁾
 - 현재 성실사업자라는 명백하고 쉽게 수궁할 수 있는 개념을 적용하여 적용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사업자에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제6장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 분류함

37)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Ⅶ장 참조

다. 성실사업자 범위의 타당성

- 성실사업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비교적 큰 사업자는 정부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허용되는 성실사업자에 포함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들인데, 이들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과 관련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성실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과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성실사업자 요건은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장신고를 할 것, 신용카드 가맹점을 가입할 것,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함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요건은 신고의 성실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임
 - 수입금액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년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는데, 성실하게 신고하여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음
 - 2017년까지는 90%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2017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50%로 낮아짐
 - 계속 경영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을 요구하는데, 신설 사업자에게 불리한 요건임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 처벌사실 등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닐 것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 처벌사실 등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대체로 과거 3년간의 성실성을 요구함
-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신고한 수입금액의 변화나 과거의 행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신고에 대한 성실성 의심 여부를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과거의 행태나 신고한 수입규모를 근거로 형성한 ‘성실성 의심’이 그대로 현재의 성실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즉, 과거 3년간 허위신고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허위신고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금액이 갑자기 축소되어도 그것이 ‘불성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017년 12월에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아직도 단순히 성실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상의 근거만 가지고 성실성을 부인한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표 VI-4>에서는 2016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자로 구분하여 각각 신고인원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신고한 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였음
 -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신고자 중 14.63%가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였으며, 18.44%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였음

- 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 중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는 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자라고 보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없는 자를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 보았음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비사업자 포함)가 587만명인데, 그 중 근로소득금액을 신고한 자가 157만명으로 26.7%를 차지하였음³⁸⁾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자는 151만명으로 근로소득금액 신고자의 96.4%를 차지하였음³⁹⁾
 - 「소득세법」에 의한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5.55%와 18.67%로 근로자보다 약간 크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8)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표 3-2-3

3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표 3-1-4

〈표 VI-4〉 근로자와 사업자 신고인원과 교육비·의료비 공제신고자(2016년)

(단위: 천명, %)

신고유형별 구분	신고인원 계		교육비 공제 ⁶⁾		의료비 공제 ⁶⁾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근로자 ¹⁾	17,740		2,595	14.63	3,271	18.44
사업자 계	5,296	100.00	191	3.61	198	3.73
근로소득 있는 자 ²⁾	1,019	19.24	158	15.55	190	18.67
기장신고	510	9.62	84	16.44	95	18.64
성실확인	22	0.41	7	29.87	5	25.08
복식부기 ⁴⁾	212	4.00	36	17.10	42	19.66
간편장부	276	5.21	41	14.87	48	17.34
추계신고자 ⁵⁾	509	9.62	75	14.66	95	18.70
근로소득 없는 자 ³⁾	4,277	80.76	33	0.76	8	0.18
기장신고	2,555	48.24	33	1.28	8	0.30
성실확인	123	2.32				
복식부기 ⁴⁾	1,174	22.17				
간편장부	1,258	23.75				
추계신고자 ⁵⁾	1,722	32.52	0	-	0	-

- 주: 1)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신고자
 2) 사업자 중 근로소득공제 신고자
 3) 사업자 중 근로소득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자
 4) 외부조정신고자와 자기조정신고자 합계
 5) 기준경비율 신고자와 단순경비율 신고자 합계
 6) 근로자와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공제는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공제

자료: 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국세통계연보』, 2017, 표4-2-1, 표3-2-8, 표3-1-3

-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는 각각 32,701명과 7,551명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0.76%와 0.18%를 차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성실신고자에서 제외되는 추계과세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중 기장신고자에서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의 비중을 계산하면 각각 1.28%와 0.30%임
 - 이는 각각 근로자의 경우에 비해 8.7%와 1.6%에 해당하는 수준임
 - 이 비율은 앞서 제 V 장에서 살펴본 성실사업자 중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 비율(각각 23.89%와 4.92%)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임(앞의 [그림 V-3] 과 [그림 V-4] 참조)

- 이 자료는 종합소득자 중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낮음을 시사함
 - 앞서 제 V 장에서 검토한 국세청 표본자료는 무작위로 추출한 것인데, 종합소득자 전체 표본에서 성실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임

3. 지원방법의 적절성

- 다음에서는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구분하여 지원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함
 - 각각의 공제에 대해 공제대상 교육비와 의료비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
 - 그리고 이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공제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의함

가. 교육비 공제방법의 적절성

1) 교육비 공제방법 개요와 정책이슈

- 교육비 공제는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며, 부양가족 교육비의 경우 학교급별로 정해진 한도 내의 교육비 지출액이 공제대상이 됨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 공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교육비가 됨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및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됨
 - 본인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직업훈련학원시설 수강료 등도 포함되며, 특정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 공제대상 교육비의 15%가 세액에서 공제되며,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음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한도는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임
- 이와 같은 공제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이슈가 있음
 - 본인의 교육비와 부양가족 교육비를 모두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 학교급별 공제대상 교육비 한도액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2)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의 적절성

- 본장의 제1절에서 검토한 정부 개입의 근거와 근거별 공제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의 교육비는 필요경비 관점에서 공제의 타당성이 인정됨(앞의 <표 VI-3> 참조)
- 부양가족 교육비는 가치재 관점이나, 필요경비 관점, 근로자와 사업자의 과세형평성 관점에서 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다만 학교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바, 세액공제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유아교육,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에서 중간소득 계층 이상의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비 부담이 발생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은 정부의 지원이 교육비의 대부분을 커버하므로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관점에서조차 부양가족 교육비의 세액공제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표 VI-5>와 [그림 VI-1] 및 [그림 VI-2]에서는 소득수준별 납세자에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교육비 공제 신청자의 1인당 공제세액 규모를 정리하였음
 -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16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납세자 집단의 동질성, 자료의 정확성, 자료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검토함

- 종합소득세 신고자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자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보고 소득수준별 교육비 공제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일부 구간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신청한 자의 수가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소득구간별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공제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됨

〈표 VI-5〉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교육비 공제 현황(2016년)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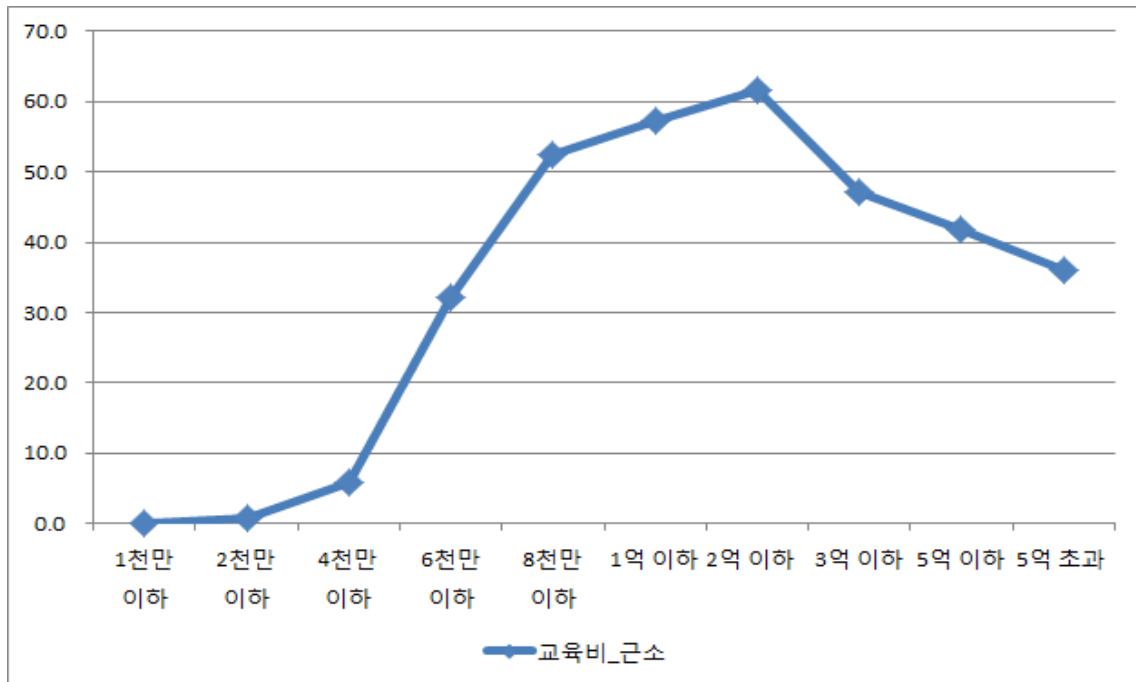
	공제신청자/납세자	1인당 공제세액
전체	14.6	44.1
1천만 이하	0.1	1.7
2천만 이하	0.6	6.7
4천만 이하	5.9	18.7
6천만 이하	32.1	33.6
8천만 이하	52.3	48.2
1억 이하	57.2	56.6
2억 이하	61.5	67.4
3억 이하	47.1	79.6
5억 이하	41.9	87.2
5억 초과	36.0	94.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표 4-2-4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에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한 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1인당 공제규모를 보면 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교육비 공제를 신청한 자의 비중이 30%를 초과함
 - 특히 총급여 6천만원~2억원 구간에서는 교육비 공제를 신청한 자가 납세자의 50~60% 정도를 차지하였음
 -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공제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래도 36~47%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그림 VI-1] 소득구간별 교육비 공제신청자 비율(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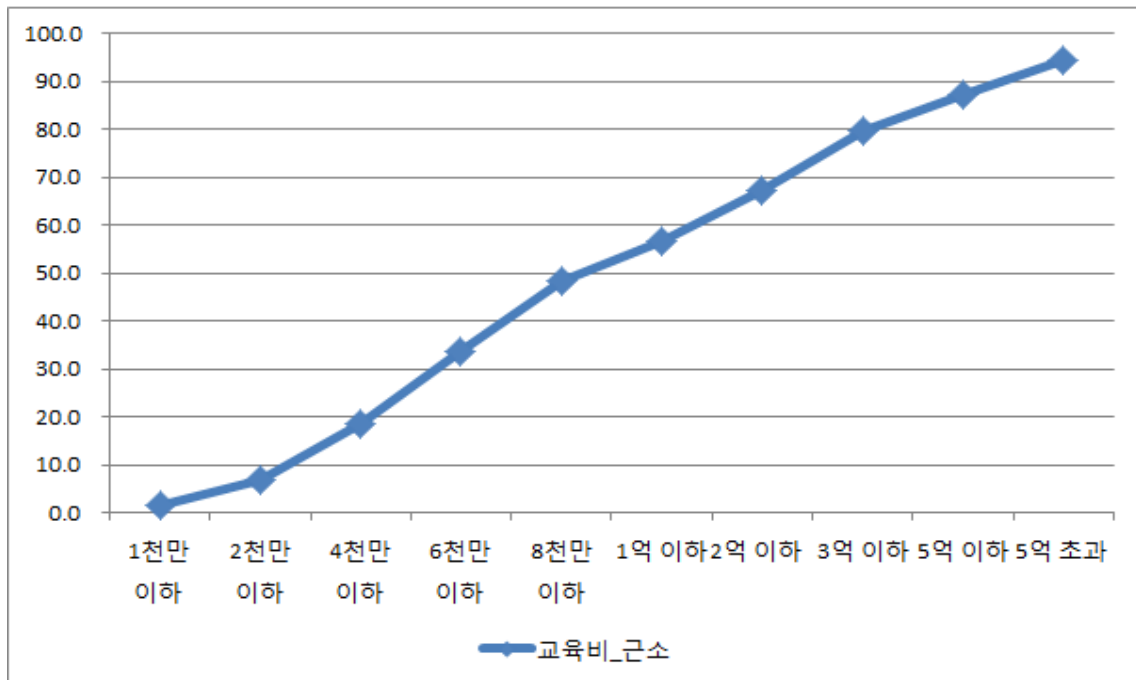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표 4-2-4

[그림 VI-2] 소득구간별 교육비 공제신청자 1인당 공제액(2016년)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표 4-2-4, 표 3-1-4

- 공제 신청자의 1인당 공제세액 규모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인당 공제규모가 10만원 미만인데, 4천~6천만원 구간에서는 33만 6천원, 8천만~1억원 구간에서는 56만 6천원, 2억~3억원 구간에서는 79만 6천원, 5억원 초과구간에서는 94만 5천원으로 증가함

- <표 VI-6>에서는 등록금이 가장 많은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교육비의 학부모 부담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소득요건과 성적요건을 확인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 성적요건은 직전학기 B학점 이상을 요구함
 -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학교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므로 모든 학생이 각 소득구간별 평균 지급액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였음
 - 세액공제규모는 4년제 사립대학교 등록금 평균(717만원)에서 두 가지 유형의 국가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의 15%임
 - 학생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돈돈학자금)이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표에 나타난 세액공제는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이 표를 보면, 세액공제 혜택은 명백하게 역진적인 모습을 보여줌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납입한 등록금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저소득층은 장학금 혜택을 받아 직접 부담한 교육비가 적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이 적은 반면, 고소득층은 등록금 중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이 커서 세액공제 규모도 더 크게 됨
 - 소득 9~10분위의 경우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아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반면 이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은 가장 많이 받음
 - 국가장학금이 없던 시기에 교육비 공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교육비 지원의 대부분을 형성하도록 하면서도 이전의 교육비 공제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표 VI-6> 소득분위별 세액공제 규모와 본인부담률 추정¹⁾

(단위: 천원, %)

소득 분위	사립대 등록금 ⁴⁾	장학금 I 유형만 받는 경우			I 유형과 II 유형을 받는 경우		
		I 유형	세액 공제	본인 부담률 ³⁾	II 유형 ²⁾	세액 공제	본인 부담률 ³⁾
기초	7,127	5,200	289	23.0	1,266	99	7.9
1분위	7,127	5,200	289	23.0	1,138	118	9.4
2분위	7,127	5,200	289	23.0	1,144	118	9.3
3분위	7,127	3,900	484	38.5	1,407	273	21.7
4분위	7,127	2,860	640	50.9	1,373	434	34.5
5분위	7,127	1,680	817	65.0	1,290	624	49.6
6분위	7,127	1,200	889	70.7	1,319	691	55.0
7분위	7,127	675	968	76.9	1,284	775	61.6
8분위	7,127	675	968	76.9	1,281	776	61.7
9분위	7,127	-	1,069	85.0	1,804	798	63.5
10분위	7,127	-	1,069	85.0	1,840	793	63.1

주: 1) 장학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학비는 모두 본인(학부모)이 부담한다고 가정

2) 2015년 소득구간별 II 유형 수혜자 1인당 평균 수혜액

3) 본인부담액(= 등록금 - 장학금 - 세액공제)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4) 2016년 4년제 사립대학교 등록금 평균

자료: 안중석·김문정(2017) <표 II-13>

- 이상의 자료는 교육비 공제가 역진적인 성향이 있어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공제의 정당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중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4천만~8천만원 구간에서도 상당한 수의 납세자가 공제혜택을 받으며, 1인당 공제규모도 적지 않으나, 그보다 소득이 더 많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 이는 교육비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그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게 되면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아도, 본인 교육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를 허용하지만, 부양가족 교육비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띈(<표 III-3> 참조)
 -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은 본인 교육비 공제만 허용하고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는 허용하지 않음
 - 한편 미국과 프랑스, 아일랜드는 본인 교육비와 부양가족 교육비를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함

3) 학교급별 공제규모의 적절성

- 다음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학교급별로 설정된 공제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수업료와 교과서대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학부모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임
 - 학부모부담은 방과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중학교) 정도이며,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식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됨
 -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는 공제한도가 각각 50만원과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방과후활동비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한도가 60만원임
 - 201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경상북도(초등학교와 중학교), 대구(중학교)뿐임
 - 경상북도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읍면지역의 학교, 대구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무상급식을 실시함
 -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경우에 대체로 연 100만원 이내의 교육비(교복비 제외)가 소요됨
 - 저소득층은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제도를 통해서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을 받음⁴⁰⁾

- <표 VI-7>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있는 가정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분포를 정리하였음
 - 누적비중을 보면, 연간 교육비 지출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초등학교 92.8%, 중학교 84.5%임
 - 연간 2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1.2%, 중학교 2.1%임
 - 이 자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비 공제 한도가 비교적 높게 설정되었음을 시사함

40) 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중복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함

<표 IV-7>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비 지출액 분포(2015년)

(단위: 명, %)

공교육비 지출	초등학교			중학교		
	인원	비중	누적비중	인원	비중	누적비중
50만원 미만	759	75.7	75.7	298	57.0	57.0
50~100만원	172	17.1	92.8	144	27.5	84.5
100~150만원	46	4.6	97.4	57	10.9	95.4
150~200만원	14	1.4	98.8	13	2.5	97.9
200~250만원	4	0.4	99.2	5	1.0	98.9
250~300만원	1	0.1	99.3	6	1.1	100.0
300만원 이상	7	0.7	100.0	0	0.0	100.0
합계	1,003	100.0		523	100.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9차 자료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정부가 보육·교육비를 지원함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연간 평균 63만원, 26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함⁴¹⁾
 - 그런데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하여 비자발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유치원 학령인구의 유치원 취학률이 50.7%이며, 그 중 75.2%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함⁴²⁾
 - 이는 학령인구 중 38% 정도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 <표 VI-8>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1인당 교육비 분포를 살펴보았음
 - 어린이집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62.2%이며, 200만원 이상이 15.9%를 차지하였음
 - 300만원 이상도 6.3%를 차지하였음
 - 유치원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44.4%에 그쳤고, 200만원 이상이 약 39.6%를 차지하였음
 - 300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였음

41)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2016년 기준

4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p. 11, p. 22

<표 IV-8>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지출액 분포(2015년)

(단위: 명, %)

공교육비 지출	보육기관(어린이집 등)			유치원			전체 누적비중
	인원	비중	누적비중	인원	비중	누적비중	
50만원 미만	137	41.1	41.1	95	38.0	38.0	39.8
50~100만원	70	21.0	62.2	16	6.4	44.4	54.5
100~150만원	46	13.8	76.0	22	8.8	53.2	66.2
150~200만원	27	8.1	84.1	18	7.2	60.4	73.9
200~250만원	25	7.5	91.6	26	10.4	70.8	82.7
250~300만원	7	2.1	93.7	13	5.2	76.0	86.1
300만원 이상	21	6.3	100.0	60	24.0	100.0	100.0
합계	333	100.0		250	100.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9차 자료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한도 300만원의 정당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몇 퍼센트 정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임
 - 90% 정도 또는 그 이상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80% 정도의 아동만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면 공제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50% 정도만 혜택을 받게 됨

-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학부모가 수업료와 교과서대금을 납부함
 -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급식비 부담이 있으며, 그 외에 방과후 활동비,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부담이 발생함
 - 등록금은 지역마다 다르나 최대 200만원 이내로 책정되고 있음
 -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각 지방교육청별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대체로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지원이 됨

- <표 VI-9>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분포를 정리하였음
 - 100만원 미만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15.3%에 불과하며, 72.3%가 200만원 이상을 지출함
 - 3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가 전체의 45.8%를 차지하였음
 - 이는 고등학교 학생의 절반 정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300만원의 공제상한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공제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면 약 30%만 공제혜택을 받으며, 100만원으로 낮추면 혜택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15% 수준으로 낮아짐

-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에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음⁴³⁾
 -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면 수업료와 교재비가 무료가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육비 공제액의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IV-9> 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출액 분포(2015년)

(단위: 명, %)

공교육비 지출	고등학교		
	인원	비중	누적비중
50만원 미만	54	9.0	9.0
50~100만원	38	6.3	15.3
100~150만원	32	5.3	20.6
150~200만원	43	7.1	27.7
200~250만원	62	10.3	38.0
250~300만원	98	16.3	54.2
300만원 이상	276	45.8	100.0
합계	603	100.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9차 자료

43) MBN 뉴스센터(2017)

- 대학의 경우 국공립은 등록금이 전문대학 평균 241만원, 대학 386만원이고, 사립은 전문대학 590만원, 대학 713만원 수준임(2016년 평균)⁴⁴⁾
 - 대학교의 경우 대체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음
 - 2016년 국공립 전문대 76.8%, 대학 65.5%, 사립 전문대 55.1%, 대학 47.7%⁴⁵⁾
 - 대학 재학생에서 국가장학금 I 유형의 혜택을 받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46%, 2015년 42%임⁴⁶⁾
 -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 10분위 가운데 2분위 이하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장학금이 지원됨
 - 4분위까지는 대체로 등록금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지원됨
 - 소득분위 9분위와 10분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지원을 받지 못함

- <표 VI-10>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가 전문대와 대학 재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수준에 따라 정리하였음
 - 전체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I 유형의 혜택을 받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에 46%, 2015년에 42%였음
 - 2015년에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이 시기에 학생 수가 줄어들었는데, 고소득층보다는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대상에서 더 많이 줄어들었음
 -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의 대부분을 보장받는 최저소득계층보다는 중간소득계층(5~8분위)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 절반 이상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I 유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1인당 평균 100만원 내외로 규모가 크지 않아서 등록금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음

44) 안종석·김문정(2017), <표 III-2>

45) 안종석·김문정(2017), <표 III-2>

46) 안종석·김문정(2017), <표 III-6>

-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지원을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등록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여야 함
 - 앞서 검토한 <표 VI-6>에 따르면, 소득 5분위 이상에서는 학부모 부담이 50% 이상이 되며, 7분위 이상에서는 60%를 상회함

<표 VI-10>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의 재학생 대비 비율

(단위: %, %p)

	재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중의 변화 ¹⁾	
	2012	2013	2014	2015	2014~2015	2013~2015
합계	26.27	45.24	45.99	42.04	3.95	3.20
기초	2.35	2.27	2.27	2.20	0.06	0.07
1분위	7.88	9.33	10.43	9.81	0.62	-0.48
2분위	8.71	8.82	8.84	9.12	-0.28	-0.30
3분위	7.32	6.19	5.73	5.50	0.23	0.69
4분위	-	4.13	4.14	4.18	-0.05	-0.06
5분위	-	3.56	3.58	2.67	0.91	0.90
6분위	-	3.58	3.45	2.62	0.83	0.96
7분위	-	3.50	3.52	2.70	0.82	0.80
8분위	-	3.85	4.04	3.23	0.81	0.61
9, 10분위	-	-	-	-	-	-
1~4분위	23.9	28.5	29.1	28.6	0.52	-0.14
5~8분위	-	14.5	14.6	11.2	3.37	3.27

주: 1) 각각 2014년 비중과 2013년 비중에서 2015년 비중을 뺀 것으로, 양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을, 음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의미함

자료: 안종석·김문정(2017), <표 III-6>

- 학부모 부담은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부담하거나 자력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중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대상이 됨
 - 그러므로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졸업 후 자신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납세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가 됨
 - 따라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활성화되어 본인부담금의 대부분을 학자금대출로 조달하게 되면, 대학 교육비 공제는 자연스럽게 본인 교육비 공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그러나 현재 학자금대출 이용 수준을 보면, 아직도 많은 학생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됨
 - <표 VI-11>에 따르면, 재학생 대비 학자금대출 이용자 비율이 가장 큰 경우가 사립 전문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15.7%이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1% 수준임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용률은 4% 수준 또는 그 이하임
 - 학자금대출 이용자와 국가장학금 수혜자 간에 중복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학부모의 상당부분은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대학교육에 대한 교육비 공제 상한액은 당분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추이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VI-11>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2016년)¹⁾

(단위: %, 천원)

학제 구분	설립별	이용자비율 ⁴⁾				1인당 용자액 ⁵⁾			
		일반대출		취업후상환		일반용자		취업후상환	
		전체 ⁶⁾	등록금	전체 ⁶⁾	등록금	전체 ⁶⁾	등록금	전체 ⁶⁾	등록금
전문 대학 ¹⁾	국공립 ³⁾	0.6	0.3	6.7	2.1	1,514	1,169	1,676	1,146
	사립	2.0	1.7	15.7	11.6	3,018	2,905	2,539	2,052
대학 ²⁾	국공립 ³⁾	3.1	2.7	7.0	2.3	3,164	2,887	1,823	1,693
	사립	4.2	3.9	11.0	7.9	4,573	4,385	2,732	2,417

주: 1) 전문대학(2/3년제)을 포함하여 사이버전문대학, 기능대학, 각종 전문대학은 제외
 2)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을 포함하며,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대학, 기술대학은 제외
 3) 국립대학, 특별법에 의한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 포함
 4) 대학 재학생에서 학자금 용자를 받은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
 5) 용자를 받은 학생 1인당 용자액
 6) 등록금 용자와 생활비 용자
 7) 2015년 2학기과 2016년 1학기 합계
 자료: 안종석·김문정(2017), <표 III-10>

나. 의료비 공제방법의 적절성

1) 의료비 공제방법 개요와 정책이슈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성실신고사업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 지급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총급여(근로소득이 있는 자)나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한도임
 - 단, 본인 및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연 7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난임시술비의 경우 20% 공제율이 적용됨
- 공제대상 의료비는 질병 치료, 요양, 의약품 구입,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시력 보정, 보청, 노인장기요양 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이며,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도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여부와 공제규모가 정책이슈가 될 수 있는바, 다음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로 구분하여 현행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함

2)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의 적절성

- 앞에서 검토한 정부 개입의 근거와 그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표 VI-3>에 따르면, 의료비 공제는 가치재 관점과 가계소득지원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치재란 정부가 지원하여 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함
 - 의료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본인 부담이 적으며, 연간 총부담에도 상한이 있어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수요 진작 필요성이 낮음

- 한편, 비급여항목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의료 서비스가 있으며, 이런 항목의 경우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가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의료서비스가 가치재라는 점에서 보면,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중·저소득층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보면, 급여항목의 경우에도 가계에 중요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급여항목의 경우 연간 1인당 자기부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서 2018년의 경우 1분위는 연간 최대 124만원, 4~5분위는 최대 208만원, 10분위는 523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금액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표 VI-2>에 정리된 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의 비율을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5.42~10.76%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족 내 환자가 1인이 급여항목의 의료서비스만 받는 경우의 최대 부담액이고, 급여항목의 의료서비스만 받더라도 가족 내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비급여항목의 서비스가 포함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가 중·저소득층 가계에 중요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표 VI-12>와 [그림 VI-3], [그림 VI-4]에서는 2016년 근로소득세 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수준별 공제현황을 살펴보았음
- 앞서 교육비 공제의 경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소득구간별 의료비 공제 신청자가 해당 소득구간의 근로소득세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형적인 종모양의 분포를 보여 총급여 6천만~1억원 구간에서 43~45%로 가장 높음
- 그다음으로 총급여 4천만~6천만원 구간과 1억원~2억원 구간이 35~38%로 높음
 -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구간과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공제자 비율이 10%대 또는 그 이하로, 다른 구간에 비해 상당히 낮음

- 공제 신청자 1인당 공제규모를 보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1인당 공제액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공제신청자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총급여 4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총급여 4천만원~6천만원 구간의 평균 공제액이 총급여 2천만~4천만원 구간에 비해 20만원 정도 많음
 - 또한 총급여 2억~3억원 구간에서 평균 공제액이 앞 구간에 비해 21만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VI-12〉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의료비 공제 현황(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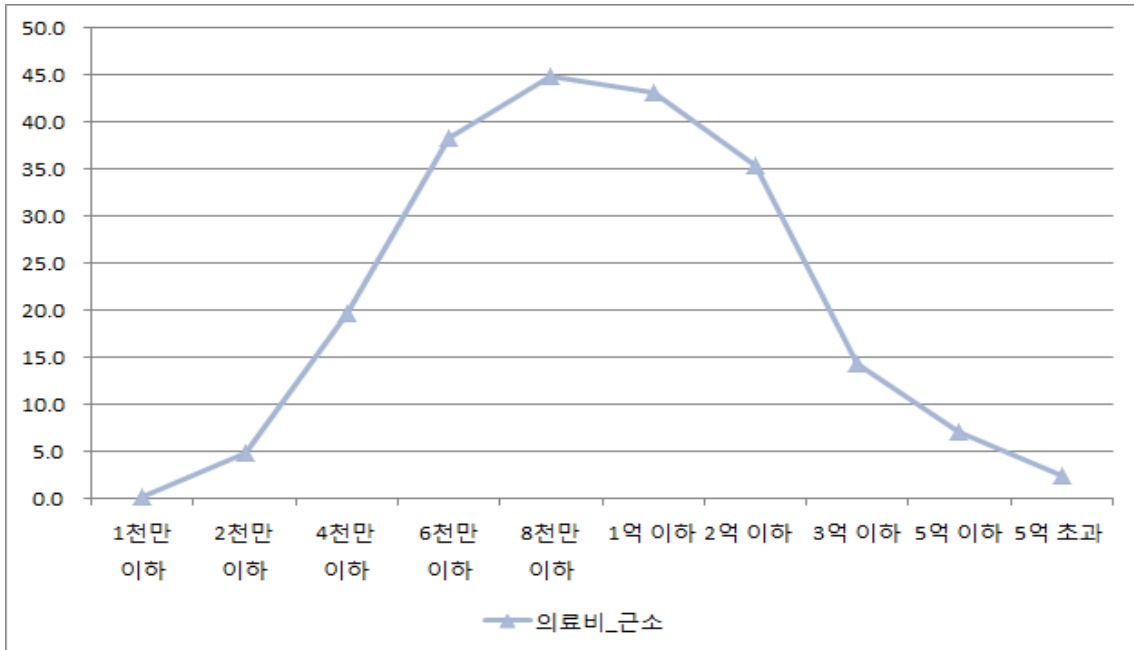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총급여	공제신청자/납세자	1인당 공제세액
전체	18.5	31.8
1천만 이하	0.1	1.7
2천만 이하	4.9	4.9
4천만 이하	19.7	13.9
6천만 이하	38.3	33.5
8천만 이하	44.9	47.8
1억 이하	43.1	54.0
2억 이하	35.4	60.6
3억 이하	14.4	81.8
5억 이하	7.1	107.3
5억 초과	2.4	248.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표 4-2-4

[그림 VI-3]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의료비 공제신청자 비율(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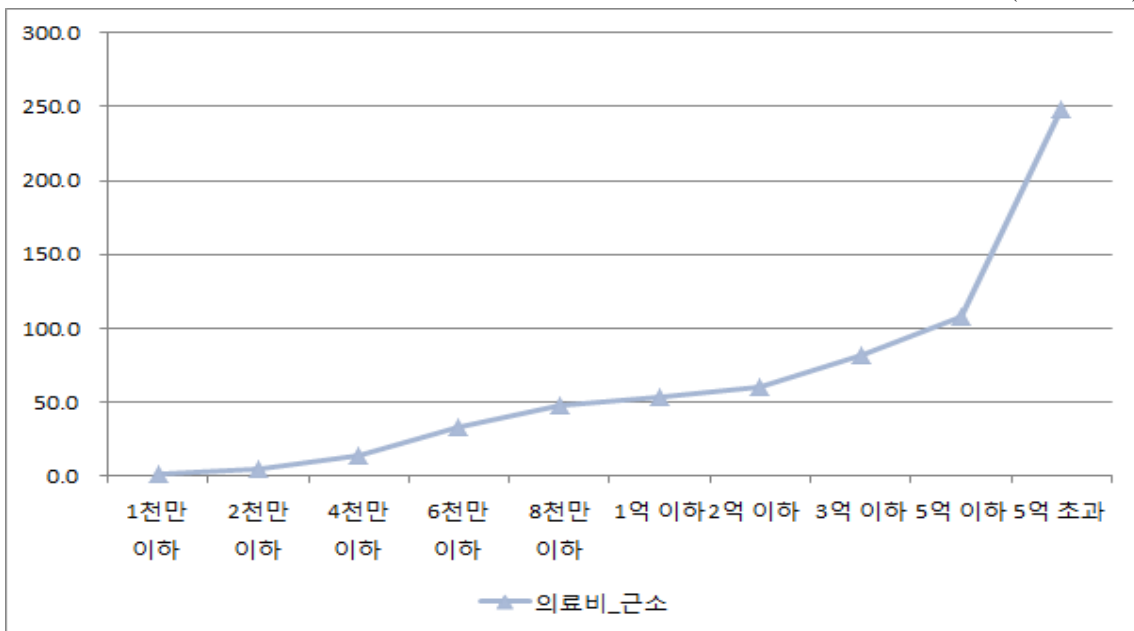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표 4-2-4

[그림 VI-4] 소득구간별 의료비 공제신청자 1인당 공제세액(2016년)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표 4-2-4

-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 매우 낮은 구간에서는 주로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의존하는 데 비해, 소득이 증가하면서 비급여항목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총급여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거의 급여항목에 의존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총급여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항목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에 소득이 높아지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납세자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음
 - 한편 총급여가 2억원을 초과하면, 일반적인 치료의 경우에 비급여항목 서비스를 많이 받더라도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의 3%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세액공제 신청자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고소득자 중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며 의료비 지출이 많아서 공제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에 [그림 VI-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고소득계층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수혜자 1인당 공제세액이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는 주로 급여항목만을 수요하는 최저소득계층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으나 비급여항목 수요가 적지 않은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앞서 검토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아도, 프랑스와 홍콩 외에는 모든 국가에서 의료비 공제제도가 있으며, 본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의료비도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함⁴⁷⁾

3) 소득 3% 초과분 공제의 적절성

- 공제규모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47) 앞의 <표 III-3> 참조

-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의 3%,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3% 초과분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 700만원 공제한도는 적절한지?
 -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공제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다양하여 적절한 근거를 찾기 곤란함
- 미국은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하고, 캐나다는 3%, 일본은 5%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대상으로 함
 - 호주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며,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최소지출 요건이 없음
- 의료비 공제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 그 정도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미이므로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임
- 이와 유사한 제도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음
-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경우 서비스별로 일정비율로 보험공단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데, 본인부담액이 과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임
 - 그러므로 본인부담 상한은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인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소득수준별로 상한액 이내의 의료비는 가계에서 부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인부담 상한액 이내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중복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하한을 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세액공제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보완적인 제도로 볼 수도 있음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분위를 7개 분위로 나눠서 각 분위별로 일정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음(앞의 <표 VI-1> 및 <표 VI-2> 참조)
- 한편 세액공제는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각각의 소득구간 내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됨
- 또한 치료기간이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의 소득 대비 비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나, 치료기간이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 비율이 높음
 - 그러므로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비중이 높음
- 그러므로 세액공제제도는 부분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보완 기능을 고려하면, 본인부담 상한액의 2분의 1 정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2분의 1 정도는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3% 초과분 결정방법의 적절성

- 최소지출 요건인 소득의 3%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공제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공제가 적용됨
-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모두 총소득의 3% 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됨
-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의 일부분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됨
 - 성실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⁴⁸⁾

48) 국세청 질의상담 2014. 2. 11, 2014. 6. 20,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2018. 1. 25. 접속

- 즉, ①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한 공제액을 근로소득분 종합소득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든지, ② 사업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한 공제액을 사업소득분 종합소득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근로소득분 종합소득세액은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함⁴⁹⁾
-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무시되고, 근로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근로소득분 소득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음⁵⁰⁾

<국세청 질의상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14.6.20.

1. 사실관계

>>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만 해도 2013귀속 소득세를 초과하여 의료비 공제만 하였음

2. 질의사항

>> 국세청 콜센타에 전화 질의한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질문)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등을 사업소득에서 추가로 공제 가능한지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만 공제받았는데 이 경우 공제받지 않는 교육비는 사업소득에서 공제 가능한지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것을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3. 답변

>>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2013년 귀속)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2에 해당하는 성실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신고시에 근로소득금액

49)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1항

50) 「소득세법」 제61조의 제1항

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와 의료비공제를 적용할 경우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교육비, 의료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중복 적용 또는 안분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교육비만 공제받았거나 또는 교육비와 의료비공제를 적용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신고시에 교육비, 의료비를 재계산하여 사업소득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2018. 1. 25)

<국세청 질의상담>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제, 2014.2.11

1. 사실관계

>> 2013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대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입니다.

2. 질의사항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시 총급여의 3%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받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제금액은 총급여의 3% 초과인가요? 총급여+사업소득의 3% 초과인가요? 사업소득의 3%인가요?

3. 답변

>>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이미 소득공제 적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다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다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2018. 1. 25)

- 이와 같이 소득의 구성에 따라 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가 달라지는 방식은 수평적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수준이 같을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의 최저한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하나만 있는 경우에 비해 낮아짐
 - 한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 근로소득분 또는 사업소득분 중 합소득세액은 한 종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 더 큼

-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1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성실사업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방안
 - 이 경우 근로소득분 종합소득세액과 사업소득분 종합소득세액의 합계를 한도로 세액공제함
 - (2안)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만 위 1안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고, 근로소득분 종합소득세액과 사업소득분 종합소득세액의 합계를 한도로 공제함
 -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사업소득을 무시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함
 - (3안) 1안과 같이 성실사업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되, 근로소득과 성실사업자의 사업소득 합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한도로 공제함
 -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근로소득분 종합소득세액이 공제한도가 됨

- 위 1안의 경우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성실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공제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임
 - 의료비 공제제도는 부분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실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에게 동등한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2안의 경우에는 성실사업자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므로 성실사업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임
- 3안의 경우에는 2안의 문제점은 해결하지만,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세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 최소지출액을 산정할 때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공제 상한을 결정할 때는 근로소득만 고려함
- 이와 같이 현행 제도가 수평적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들도 각각 수평적 형평성, 일관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

5) 공제한도 700만원의 적절성

-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공제 상한에 대해서도 누구나 공감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보면, 일본에서는 200만엔을 한도로 공제를 제한하며, 싱가포르에서는 연간 급여의 1% 이내로 공제를 제한하는 것 외에 다른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에서는 공제 상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그다지 엄격한 제한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 그 외에도 건강보험의 재정지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증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들이 있음

-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 공제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다. 표준공제의 적절성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서는 표준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유형별로 특별공제와 표준공제 적용 여부와 공제규모를 정리하면 <표 VI-13>과 같음
 -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공제가 모두 없는 경우에 표준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표준공제액은 13만원임
 -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중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공제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12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7만원의 표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그 외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7만원의 표준공제만 적용됨

<표 VI-13> 납세자 유형별 특별공제, 표준공제 적용 여부

	특별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또는	13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자			
소규모 성실사업자	교육비, 의료비 공제	또는	12만원
성실신고확인자	교육비, 의료비 공제	그리고	7만원
그 외 사업자	없음		7만원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근로소득이 없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특별공제 중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며, 표준공제에서도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의 표준공제 규모가 13만원인 데 비해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12만원으로 다소 적지만, 이는 표준공제에 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공제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가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만원의 표준공제 규모 차이는 상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성실사업자에게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공제를 허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표준공제에서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게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7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 표준공제와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우대하는 결과가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다면, 성실신고확인자에게도 소규모 성실사업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2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자의 표준공제액을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표준공제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되는 데 비해,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센티브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됨
 -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확인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함

-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자의 표준공제를 소규모 성실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12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성실신고확인자의 성실신고확인은 의무사항이므로 소규모 사업자와 달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목적으로 표준공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없음
 - 한편 성실신고확인자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자의 세액공제가 소규모 성실사업자보다 더 많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에도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외에도 다른 지원이 있음
 -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고, 의료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통상적인 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 상한제 외에도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음
 - 이러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가치재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요를 진작시키고, 과도한 비용 지출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세액공제는 재정지원이나 건강보험 부담금 및 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지출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그러므로 정부의 교육비 재정지원이나 건강보험 부담이 세액공제와 중복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그보다는 정부 및 건강보험의 지원을 세액공제가 보완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편, 동일한 대상 즉,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의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재정지원이나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제도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가. 교육비 재정지원

- <표 VI-14>에는 만 3~5세 아동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내용을 정리하였음
 -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록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이 지원됨
 - 국·공립은 국가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므로, 국·공립과 사립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지원금이 6만원이고,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5만원임
 -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과정 지원금이 22만원이고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7만원임
 - 국·공립은 정부의 지원으로 교육비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나 사립의 경우 평균적으로 어린이집은 연 63만원, 유치원은 26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함⁵¹⁾

<표 VI-14> 누리과정 지원액(2017년)

(단위: 원)

구분	월 지원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교육과정	60,000	220,000	220,000
방과후 과정	50,000	70,000	70,000

자료: 교육부(2017), p.1

- 초·중등교육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교육비를 부담함

51)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방과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정도임
- 한편 고등학교는 학부모 납입금이 있는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함
 - 그 규모는 학교의 특성과 지역에 따라 다른데, 2016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182만원이고, 서울 외의 평준화지역(1급지)의 경우 ‘가’ 지역에서는 175만원이고 ‘나’ 지역에서는 115만원임
 -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100만원 수준임
 - 한편,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에서는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합한 금액의 최고액은 750만원임⁵²⁾
- 초·중등교육의 경우 고등학교 납입금과 그 외 부수적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비가 지원됨
 - 모든 계층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짐
- 지원 기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고등학교 학비(납입금) 지원의 경우 2016년 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도에서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음
 - 한편 대구에서는 56%, 세종시에서는 64%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음
 -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는 소득이 월 264만원, 54%는 246만원, 64%는 282만원임⁵³⁾
 - 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함
 - 지원액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임
 - 입학금과 수업료는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함

5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6』, 2016, ‘표 2-22 FY2016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 현황 (1인당 연액)’

53)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6

-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외에 초·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이 제공됨
 - 이 세 가지 지원과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을 합하여 4대 교육비 지원이라고 함

- 급식비 지원은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초·중·고등학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을 지원함
 - 시도 교육청별 급식비 지원 기준을 보면, 대체로 중위소득의 52~80% 수준인데, 일부지역(대구, 울산)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급식비 지원대상이 됨⁵⁴⁾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재비를 포함하여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가 지원됨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개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만 지원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50~60% 수준으로 지방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음⁵⁵⁾

- 교육정보화 지원은 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인터넷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함
 - 유해차단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함
 - 지원이 되는 소득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가정 등이 해당됨⁵⁶⁾

-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내용을 요약해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수업료 부담은 없으며, 급식은 대부분 무상급식이고, 그 외에 중위소득의 50~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이 됨

54)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6

55)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6

56)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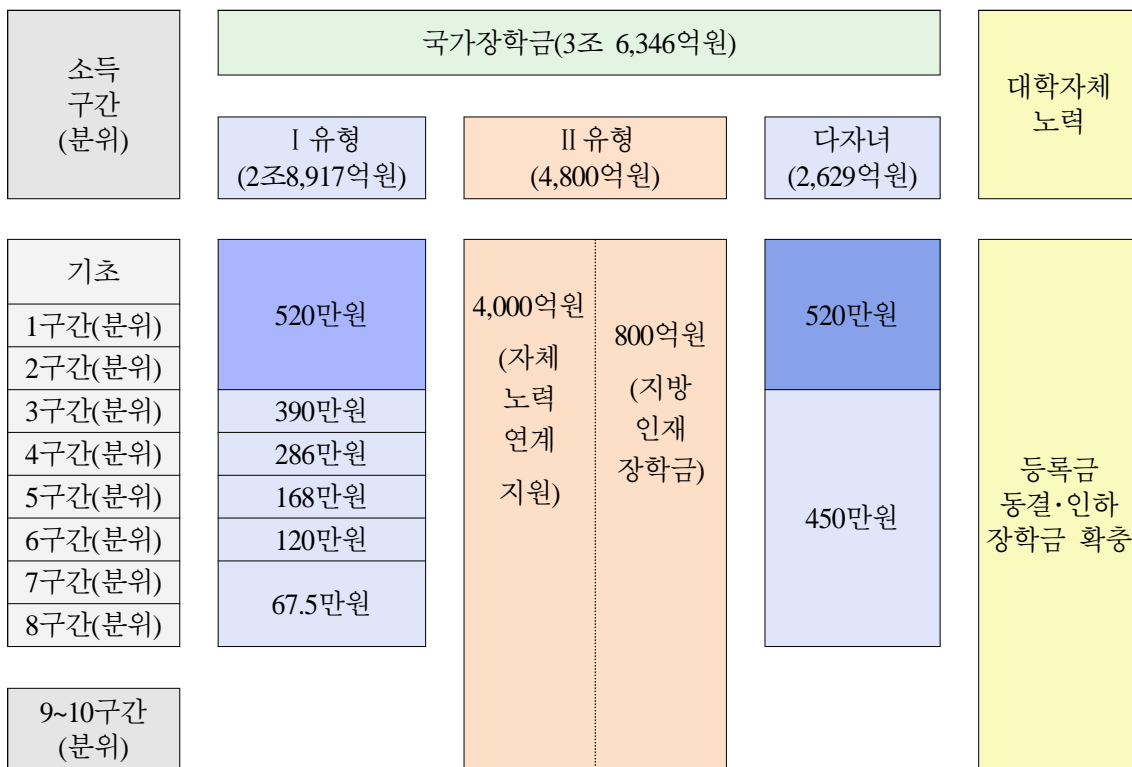
-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50~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학교에 납입하는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며, 그 외에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이 제공됨
-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I, II 유형, 지방인재장학금, 다자녀 가구 지원, 근로장학금 등을 통해서 학비 지원을 하고 있음
 -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소득연계 지원으로 국내대학에 재학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으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2분위 이하의 경우에는 C학점을 받은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경고를 받고 장학금은 계속 수혜할 수 있음⁵⁷⁾
 - 소득기준은 가구원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분위 기준으로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분위별로 지급액에 차이가 있음
 -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⁵⁸⁾
- <표 VI-15>에서 2017년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제도 구조를 정리하였음
 - 2017년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보면, I 유형에 2조 8,917억원, II 유형에 4,800억원, 다자녀 장학금으로 2,629억원을 지원하여 총 3조 6,346억원이 배정됨
- I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은 소득분위 8분위까지 지원되고, 분위별로 장학금 규모에 차이가 있음
 - 2분위까지는 연간 5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립대 기준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임
 - 즉, 5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대학등록금을 지원받는데, 국립대의 경우 대부분 연간 등록금이 520만원 이내이므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57) 한국장학재단,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안)」, 2016. 1, p. 6

58)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15.9.1 확정)

-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 국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싸므로 I 유형이나 다자녀 장학금만으로는 등록금 전액을 충당할 수 없는데, 이 경우 II 유형이나 교내장학금으로 보완이 되어야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게 됨
- 소득이 3분위 이상이면, 다자녀 장학금은 4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I 유형은 3분위 390만원에서 시작하여 소득분위가 상승하면 장학금 규모가 줄어들어 8분위는 67만 5천원의 장학금을 받게 됨
- 국립대 등록금을 520만원이라고 할 때, 2분위까지는 I 유형 장학금이 등록금 전액이 되며, 3분위는 75%, 4분위는 55%이고, 67만 5천원을 받는 7분위와 8분위는 국립대 등록금의 13%를 지원받게 됨

<표 VI-15> 2017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2017), p. 4

-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정부가 대학에 장학금 재원을 지원하고, 대학이 그 재원을 사용하여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됨

-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대학별 지원이 결정되고, 자체노력 이행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있음
 - 2015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D, 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⁵⁹⁾
 - 지원규모는 자체노력 이행 대학에 대한 지원액 3,500억원과 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500억원을 더해 총 4,000억원 규모로 대학별로 지급함
- 그 외에도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등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양성을 위하여 지방인재장학금을 8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데, 등록금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급할 수 있음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셋째 이상 대학생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으로 I 유형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2016년 지원규모는 총 2,545억원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45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기초~2분위는 520만원을 지원함
- 요약해보면, 대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정부가 장학금을 통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부분적으로 경감하고 있음
- 소득이 2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금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등록금 중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소득이 많을수록 학부모가 학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과 부담액의 규모가 커지도록 장학금 구조가 설계되어 있음

59)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15.9.1 확정)

-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학금이 납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용자를 통해서 부족한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음
 - 소득 8분위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음
 - 2016년에 47만명의 학생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용자를 받았으며, 용자금은 1조 1,983억원임⁶⁰⁾

- 각종 장학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용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아 대학 교육비를 학부모가 거의 모두 부담해야 하는 계층은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도 이 계층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음

나. 건강보험 및 재정의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급여항목은 항목별로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직접부담하며,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항목의 비용이 대상이 됨

-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항목 본인부담분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및 정부 재정지원이 될 것임
 -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상한제인데,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앞의 정부지원 근거와 타당성 분석에서 자세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른 지원에 대해서 살펴봄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⁶¹⁾

60)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17. 1, p. 2

61) 이은경(2012), p. 48

-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 14%, 담배부담금 6%(건강증진기금 총수입의 65%)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 특정 집단이나 암, 만성질환, 희귀병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 등 특정 질병을 타깃으로 하는 지원은 주로 건강보험 재원으로 제공되며, 국고지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함
- 건강보험 또는 국고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외에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암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임신·출산 지원, 노년층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 제도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함
-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봄

1)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으로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제도와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가 있음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 이 제도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임⁶²⁾
 -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임
-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임
 - 기준세대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로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기준세대에 포함됨

62) 보건복지부, 「2017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17, pp. 3~5

- 지원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함

〈표 VI-1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내용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65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심·뇌혈관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p. 5

-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을 2분의 1로 경감하여 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로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음⁶³⁾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가 지원대상임
- 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 만성질환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63) 복지포,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2017. 12.18. 접속)

2) 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함⁶⁴⁾
 - 2002년 만 15세 이하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소아와 성인 암환자, 성인 폐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짐

- 소아암환자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임
 - 이때 소득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의미하며,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대상임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기준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이며, 재산기준은 1인 가구 209,566,332원, 2인가구 242,991,336원, 3인가구 266,774,532원, 4인가구 290,557,698원 수준임

- 소아가 최대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금액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해당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그 외 암종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함
 -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이후 지원기간 중에는 조혈모세포이식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

-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암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함
 - 차상위 계층은 소아암환자 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며,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해당자가 지원대상임
 - 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짐

64) 보건복지부, 「2017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2017.5.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에 대해 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함
 - 지원기간은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으로 함
 - 국가암검진 대상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종임

〈표 VI-17〉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 - 소득·재산 조사 의료급여수급자 : - 당연 선정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 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건강보험가입자 : - 평균 건강보험료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C34)
지원 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최대 연속 3년	최대 연속 3년	최대 연속 3년
지원 금액	백혈병 - 3,000만원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ncc.re.kr/main.ncc?uri=manage01_5, 2017.12.18. 접속)

- 성인 폐암 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기준에 충족하는 자에 대해 해당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함
 - 2017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0,000원 이하 일 것을 요건으로 함

- 암환자 지원은 아래와 같이 유사한 국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 구제급여(요양급여)

3)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함⁶⁵⁾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 환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최고재산액 300%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 최고재산액 500% 미만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는 지원에서 제외됨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10%)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 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34종”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에 따른 진료비
 -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대상 질환: 근육병(G12,G71), 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포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6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20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함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근육병(G12,G71), 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 류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포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 간병비(월 30만원 이내)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대상 질환: 근육병(G12,G71), 다발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G11), 류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포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리피드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특이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만 18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E72.1), 요소회로대사장애(E72.2)

4)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화상 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가구임⁶⁶⁾

-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시군구에서 선정된 차상위계층 포함)은 당연 선정되며, 그 외의 경우 지원대상 질환인지 여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 의료비 발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됨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가구(의료급여·차상위 계층 당연선정)를 지원대상으로 함
 - 다만,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인 가구로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스스로 부담하기가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합산액이 2억 7천만원(재산과표액 기준)을 초과한 가구와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금액은 상한액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가능함
 - 1회 입원(항암 최종치료일로부터 1년 전까지 합산) 진료비의 확정본인부담액이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확정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되, 확정본인부담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확정본인부담 의료비 발생구간별로 지원비율을 50~70%까지 차등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1회 입원(항암 최종치료일로부터 1년 전까지 합산) 진료비의 확정본인부담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지원함
 - 확정본인부담 의료비 발생구간별로 지원비율을 50~70%까지 차등 적용함

<표 VI-18> 확정본인부담의료비 발생구간별 재난적 의료비 지원수준

확정 본인부담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지원비율	50% (의료급여·차상위해당)	50%	60%	70%

자료: 국민건강보험, 「2017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안내」, p. 20

66) 국민건강보험, 「2017년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 2017년에 종료하는 한시적인 지원사업이었으나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⁶⁷⁾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를 포함하여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임

5) 임신 및 출산 지원

- 임신 및 출산 지원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⁶⁸⁾
-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임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 횟수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난임부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산정함
- 지원내용은 <표 VI-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기준과 시술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함
 - 시술 내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체외수정(동결배아), 인공수정으로 구분되며,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지원함

6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9.)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index.html>, 2017. 12.18. 접속

68) 복지포,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WellInfoBoxList.do>, 2017.12.18. 접속

- 소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자, 130% 초과 200% 이하인자, 200% 초과인 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함

<표 VI-1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소득기준	인공수정 지원금액	체외수정 지원금액	
		신선배아	동결배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50만원	240만원*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130~200%	50만원	190만원	60만원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주: 1회당 지원액으로 시술은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신선배아 체외수정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표시)에 대해 4회까지 지원함

자료: 복지포(<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017.12.18. 접속)

-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⁶⁹⁾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함
 -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임
- 지원내용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의 90%를 지원함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함

6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9.)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index.html>, 2017.12.18. 접속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임신·출산 의료비로서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대상으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함(마우처 방식)

6) 노년층 의료비 지원사업

- 노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있음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임⁷⁰⁾
 - 신청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임
 - 만 60세 이상인 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이고,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
- 지원범위는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지원함

70) G-health 공공보건포털, http://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U00_245&cNttId=223&menuNo=200600, 2017.12.18. 접속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⁷¹⁾
 - 중증 치매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 수준에서 10%로 인하할 계획임
 - 치매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저귀 등 복지용구와 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표 VI-20>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2017년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가입자	61,029 (65,026)	104,130 (110,951)	143,052 (152,422)	165,762 (176,619)	197,177 (210,092)	226,065 (240,872)	258,317 (275,237)	295,815 (315,191)	337,035 (359,111)
지역가입자	43,944 (46,822)	113,972 (121,437)	161,510 (172,089)	185,403 (197,547)	218,155 (232,444)	247,971 (264,213)	278,115 (296,332)	312,864 (333,357)	349,667 (372,570)

주: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 p. 521

- (틀니·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함⁷²⁾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지상) 및 부분 틀니 급여에 적용됨(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률은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이며, 부분 틀니와 중복하여 급여를 적용함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부분무치악 환자의 경우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 부담률은 50%로 함

7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9.)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index.html>, 2017. 12.18. 접속

72) 복지포,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WellInfoBoxList.do>, 2017.12.18. 접속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노인층의 틀니,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⁷³⁾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1종은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2종은 현행 30%에서 15%로 인하할 예정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예정임

7)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⁷⁴⁾

-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에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문재인케어를 추진할 계획인데, 다음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함
- (비급여 항목을 축소)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고(2017~2022년),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서비스만 비급여로 유지함
 -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함
 -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도입함(본인부담률 30% 신설)
 -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선택진료 폐지)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1~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2018년까지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등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보상함

7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9.)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index.html>, 2017.12.18. 접속

7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7.8.11.(<http://www.happy700.or.kr/synap/tempfile/150302382243854.htm>, 2017.12.18. 접속)

- 일반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고가의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실태에 맞춰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특실 등은 제외)은 필요한 경우(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함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함
- (비급여 총량관리)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함
- 기관별 비급여 총량관리에 효과적인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감축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자율 참여를 유도함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하고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여 시행하도록 함
 - 민간의료보험과 관례를 재정립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관계를 재정립함
 -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 반사이익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함
-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 관리) 개인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관리함
- 노인 치매, 틀니·임플란트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
 -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을 완화함
 - 현행 6세 미만 10% 부담수준을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30~60% → 10%로 완화하고('17),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 여성특화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비급여 난임시술에 대해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예: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2018년)

-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
 -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예: 육창예방방석: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추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 기준금액을 인상(2018~2020)
 - 본인부담상한을 소득수준에 비례하게 설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춤
 - 소득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2018)
- (긴급 위기 지원 강화)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대상을 확대함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 포함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 긴급복지 지원 및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마다 대상자 기준이 상이하고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의료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별 지원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함

다. 요약 및 시사점

- 교육비와 의료비 모두 세액공제 외에 다양한 공공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은 대체로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가치재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예산제약으로 인해 이들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교육비의 경우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중학교 이하까지는 정부가 기본적인 교육비를 제공하는 보편적 지원을 목표로 지원이 이루어짐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기본적인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학부모는 방과후활동비,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 일부에 대해 수요에 따라 부담함
 - 대부분의 경우 연 100만원 이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방과후활동비, 교재비 등도 정부에서 지원함
 - 한편, 취학전 아동의 누리과정을 보면, 모든 아동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 부담이 적지 않음

-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하여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같은 수준의 보편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고등학교는 수요자가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등록금은 200만원 이내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책정됨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등 교육비가 지원됨
-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교육비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학비가 지원됨

-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가 되도록 한다는 반값등록금을 목표로 지원이 확대되었음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이 중심이 되는데, 소득분위 2분위 이하까지는 등록금 전액(국립대 기준)을 지원하고, 4분위까지는 50% 수준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장학금이 책정됨
- 소득분위 8분위까지 지원되는데, 2015년의 경우 재학생 중 42%가 국가장학금 I 유형의 혜택을 받음
- 그 외에 재학 당시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목적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는데, 소득 8분위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소득분위 9~10분위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
 -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수혜자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10년 거치후 10년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여야 함

□ 의료비의 경우 정부 지원과 건강보험 지원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도임

-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의료비의 연간부담액 상한을 설정하고, 그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불액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임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의 5~10% 정도가 본인부담액 상한으로 설정됨
- 그 외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노년층 치매치료관리비 및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음
 - 대체로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계층이 특정 질병으로 인하여 과도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됨
-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여 치료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함
 -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1~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함
 - 개인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상한액을 관리함
 -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비와 의료비 재정지원제도를 종합해 보면,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중복성과 관련하여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정부의 지원이나 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재정지원 및 건강보험 부담과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그러나 동일한 대상에 대해 재정지출 및 건강보험 지출이 있고, 동시에 세액공제라는 조세지원이 제공되므로 이들 제도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 점검하고 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교육비, 의료비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가치제에 대한 지원인데, 대체로 재정지원 및 건강보험 지원이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수요도 많아지므로, 가치재 관점에서 수요가 적정수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주로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음
 - 재정지원 및 건강보험 지원은 대체로 소득이 낮아서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맞춤
- 소득세 공제는 소득수준에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적용되며 소득이 수요의 제약요인이 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됨
- 부분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세액공제가 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재인케어가 예정대로 실시되어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항목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고, 선택진료를 폐지하며, 상급병실(1~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의 가치재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의미는 더 약화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볼 때 소득세 공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으며, 그보다는 중간소득계층 또는 그 이상의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교육비의 경우 학교급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대체로 하위 40% 정도는 재정지원으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이 교육비를 모두 커버하는 수준까지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크게 완화함
 - 의료비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정부나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가계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킴
 - 본인부담 상한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노년층 치매치료관리비 및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
 - 한편,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 이하에 속하

는 최저소득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본인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보아도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는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약하며, 그보다는 중간이나 그 이상 소득계층의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큰데, 이러한 지원의 정당성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최저소득계층의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세액공제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교육비 및 의료비 지출이 필수적인 지출에 해당하며, 그 부담이 상당히 크다면 중간소득계층에 대해서도 소득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 측면에서 지금까지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가 유지되어온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인하여 최근에 중간소득계층의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이 계속 축소되어 왔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음

Ⅶ.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개편방향



VII.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개편방향

- 다음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와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로 구분하여 각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
 - 현행 제도가 이 제도들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함
 - 그리고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함
 -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및 표준공제제도 개편방향은 따로 구분하여 각각 제3절과 제4절에서 논의함

1.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가. 장기발전방향

-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본인의 교육비 공제임
 -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어 공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비과세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식으로 공제를 허용함

- 한편 부양가족 교육비의 경우, 중·저소득층 소득지원의 성격이 강한데 정부의 타당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역진적이라는 문제도 있음
 -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재정사업을 통해서 대부분의 교육비를 지원받으므로 세액공제가 큰 의미가 없음
 - 그러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주로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중간소득계층의 경우에도 점차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학부모 부담이 축소되고 있음
 -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역진적인 성격이 있음
 - 유아 단계에서 사립유치원 및 영어학원, 사립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교육기관임
 - 대학의 경우 아직도 중간소득계층에서 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등을 통해서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본인의 교육비 부담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는 장기적으로 본인의 교육비 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를 폐지하여야 할 것임
 - 본인의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 형식을 띠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점진적 개편방안

- 부양가족 교육비 세액공제제도는 1980년대 초에 도입되어 거의 4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유지되어온 것이어서 일거에 이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납세자의 저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학교급별로 보면 중간소득계층의 부담이 비교적 큰 부분이 있음
- 유아단계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지 않은 부담이 필요하며, 국공립 유치원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 고등학교는 아직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교육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대학의 경우 소득에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I 유형의 혜택을 받는 학생이 재학생의 42%(2015년)에 불과하며,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0% 수준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도 사립전문대는 재학생의 15.7%(2016년), 사립대학은 재학생의 11%로 그다지 높지 않음
-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 변화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공제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진하는 것과 보조를 맞춰 공제한도를 축소하거나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 연간 100만원 이내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도 공제 상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도의 단순화 등 관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분리하여 공제 상한을 축소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
 - 제도의 단순화가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되면, 앞서 언급한 고등학교의 공제한도 조정에 보조를 맞춰서 초·중등교육과정의 교육비 공제 상한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국공립 교육기관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추진경과를 보아 가면 세액공제 한도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도입으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본인 교육비 공제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갖추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장학금 수혜 실태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용 실태를 보면, 아직도 중간소득계층의 가정에서는 대체로 학부모가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록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일지라도, 정치적으로 중간소득계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대학교육비 공제제도를 본인 공제제도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국가장학금 지원 추이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추이를 보아가면서 자녀 교육비 공제규모를 조정하는 점진적인 접근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 의료비 공제제도의 경우, 현 시점에서 현행 제도의 골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가치재의 관점,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부양가족 의료비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를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함
 - 소득 3% 초과분을 공제하는 최소지출 요건에 대한 정당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음
 - 현행 제도하에서 소득의 5~10%로 설정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재분배 및 가계 부담 완화 측면에서 보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본인부담 상한제 및 각종 저소득층 지원,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00만원의 공제상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납세자 본인 의료비와 경로우대자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등은 7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책의 추진과 함께 의료비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1~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가치재 관점에서 의료비 공제 필요성은 거의 사라진다고 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고,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철저히 관리하며,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면 소득지원 관점에서 의료비 공제 필요성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의료비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세수입 증대분을 의료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여 중·저소득층의 개인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철저히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3. 성실사업자의 범위 개편방향

- 성실사업자의 범위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체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자로 인정하여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는 몇 가지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실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과 관련 시행령(제118조의 8)에서는 ① 가장신고를 할 것,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 ③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적극적으로(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 사용할 것을 요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서는 이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요구함
 - ④ 수입금액이 직전 3개연도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 ⑤ 과세기간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 ⑥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 처벌사실 등이 없을 것

- 위 요건 중 「소득세법」에 규정된 ①, ②, ③의 요건은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것으로 판단됨
 - 추계신고자의 경우 항목별 공제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매출액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임
 - 사업용계좌 역시 수입과 사업용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함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④, ⑤, ⑥의 요건은 신고의 성실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서 성실성을 부인하는 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수입금액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연도 연평균수입금액의

- 50%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는데, 성실하게 신고하여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음
 - 계속 경영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을 요구하는데, 신설 사업자에게 불리한 요건임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 처벌사실 등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대체로 과거 3년간의 성실성을 요구함
-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과거의 행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신고에 대한 성실성 의심 여부를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과거의 행태를 바탕으로 형성한 ‘성실성 의심’이 그대로 현재의 성실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예를 들면, 과거 3년간 허위신고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허위신고를 입증하는 것은 아님
- 정부는 2017년 12월에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 그러나 아직도 단순히 성실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상의 근거만 가지고 성실성을 부인한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자로 구분하여 각각 신고인원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신고한 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신고자 중 14.63%가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였으며, 18.44%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였음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는 각각 32,701명과 7,551명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0.76%와 0.18%를 차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성실신고자에 포함되지 않는 추계과세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중 가장신고자 가운데서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자의 비중을 계산하면 각각 1.28%와 0.30%임

- 이는 각각 근로자의 경우에 비해 8.7%와 1.6%에 해당하는 수준임
 - 본 보고서의 제 V 장에서 검토한 종합소득자 무작위 표본에서 성실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임
- 이와 같이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중에서 교육비·의료비 공제 신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신고자의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시사함
- 그러므로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도하게 확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④, ⑤, ⑥의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보다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은 사업자의 신고 성실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성실성이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표준공제제도 개편방향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서는 표준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 유형별로 특별공제와 표준공제 적용 여부와 공제규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공제가 모두 없는 경우에 연 13만원의 표준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중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공제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12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7만원의 표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그 외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7만원의 표준공제만 적용됨

- 본고에서는 성실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소규모 성실사업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근로소득이 없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특별공제 중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며, 표준공제에서도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의 표준공제 규모가 13만원인 데 비해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12만원으로 다소 적지만, 이는 표준공제에 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공제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가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만원의 표준공제 규모 차이는 상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한편, 성실사업자에게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공제를 허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게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7만원으로 표준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와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비해 성실신고확인사업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나타남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를 소규모 성실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12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은 의무사항으로 소규모 사업자와 달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목적으로 표준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표준공제를 12만원으로 확대하면, 근로자 및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에 비해 규모가 큰 성실신고확인사업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 대해서만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을 허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도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교육부,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2015.
- _____, 「2016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요약 보고」, 2016.
- _____, 「2017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017. 1.
- _____,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2014. 1.
- _____,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6.
- _____, 학술장학지원관,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17. 1.
- _____,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6』, 2016.
- _____, 『2017 간추린 교육통계』, 2017.
-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국가장학금사업 기본계획 수정(안)」, 2013. 1.
- _____,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안)」, 2011. 11.
- 국민건강보험, 「2017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2017.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2008년 연말정산 관련 최근 변경사항」, 2008. 12. 18.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10.
-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2017.
- _____,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7. 8. 9.
- _____, 「2017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17.
- _____, 「2017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2017. 5.
- _____, 보도자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2017. 8. 11.
- _____,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7. 8. 11, (<http://www.happy700.or.kr/synap/tempfile/150302382243854.htm>, 2017.12.18. 접속)
- _____, 질병관리본부, 「2017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2017.
- 안종석·강문정, 『대학 학자금 지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2.

안종석·강성훈·오종현,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조세재정 Brief』, 통권 제4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2. 17.

오종현·강성훈·신상화,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재정 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오종현·신상화·김문정,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재정 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2.

이준봉,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1.

이은경,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재정포럼』, 187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 pp. 29~49.

조명환, 『주요국의 조세제도: 홍콩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04.

한국장학재단,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안)」, 2016. 1.

_____ 국가장학부,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2017.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9차 데이터.

MBN 뉴스센터, “100대 국정과제, 고교 무상교육 전환·수능 절대평가 추진”,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288562&page=1,
 2017. 7. 20.

IRS(미국 국세청), *Medical and Dental Expenses*, Publication 502, 2016a.

IRS(미국 국세청), *Tax Benefits for Education*, Publication 970, 2016b.

웹사이트

(국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 8. 9)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index.html>, 2017. 12. 18 접속.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ncc.re.kr/main.ncc?uri=manage01_5), 2017. 12. 18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B2160>), 2017. 12. 4 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의 이해」 (<http://www.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B2260>), 2018. 1. 17 접속.

국세청 질의상담 2014. 2. 11, 2014. 6. 20(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2018. 1. 25 접속.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2017. 12. 18 접속.

G-health 공공보건포털, http://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U00_245&cNttId=223&menuNo=200600, 2017. 12. 18 접속.

(해외)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irs.gov>), 2017. 12. 4 접속 .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2017. 12. 4 접속.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 장애 세액공제(<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segments/tax-credits-deductions-persons-disabilities/disability-tax-credit.html#gblt>), 2017. 12. 4 접속.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교육비 공제(<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In-detail/Education-and-study/>), 2017. 12. 5 접속.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의료비 공제(<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7/Supplementary-tax-return/Tax-offset-questions-T3-T11/T5-Total-net-medical-expenses-for-disability-aids,-attendant-care-or-aged-care-2017/?=redirected>), 2017. 12. 5 접속.

아일랜드 국세청 홈페이지, 교육비 공제(<https://www.revenue.ie/en/personal-tax-credits-reliefs-and-exemptions/education/tuition-fees-paid-for-third-level-education/index.aspx>), 2017. 12. 5 접속.

아일랜드 국세청 홈페이지, 의료비 공제(<https://www.revenue.ie/en/personal-tax-credits-reliefs-and-exemptions/health-and-age/health-expenses/index.aspx>), 2017. 12. 5 접속.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index.html), 2017. 12. 5 접속.

싱가포르 국세청(<https://www.iras.gov.sg/irasHome/>), 2017. 12. 5 접속.

홍콩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alaries/allowances/deductions/selfeducation.htm>) 2017. 12. 5 접속.

